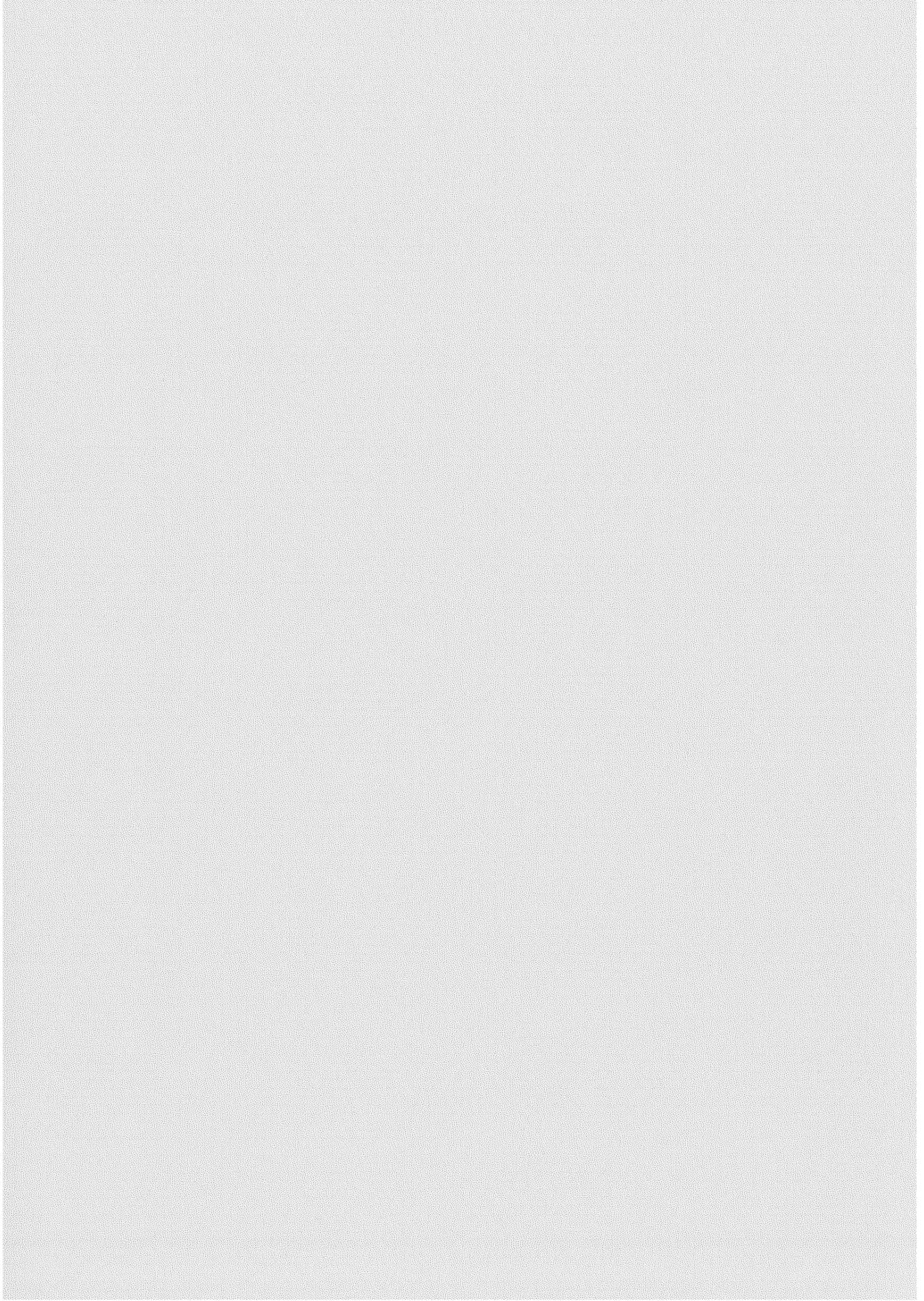


第11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0.9.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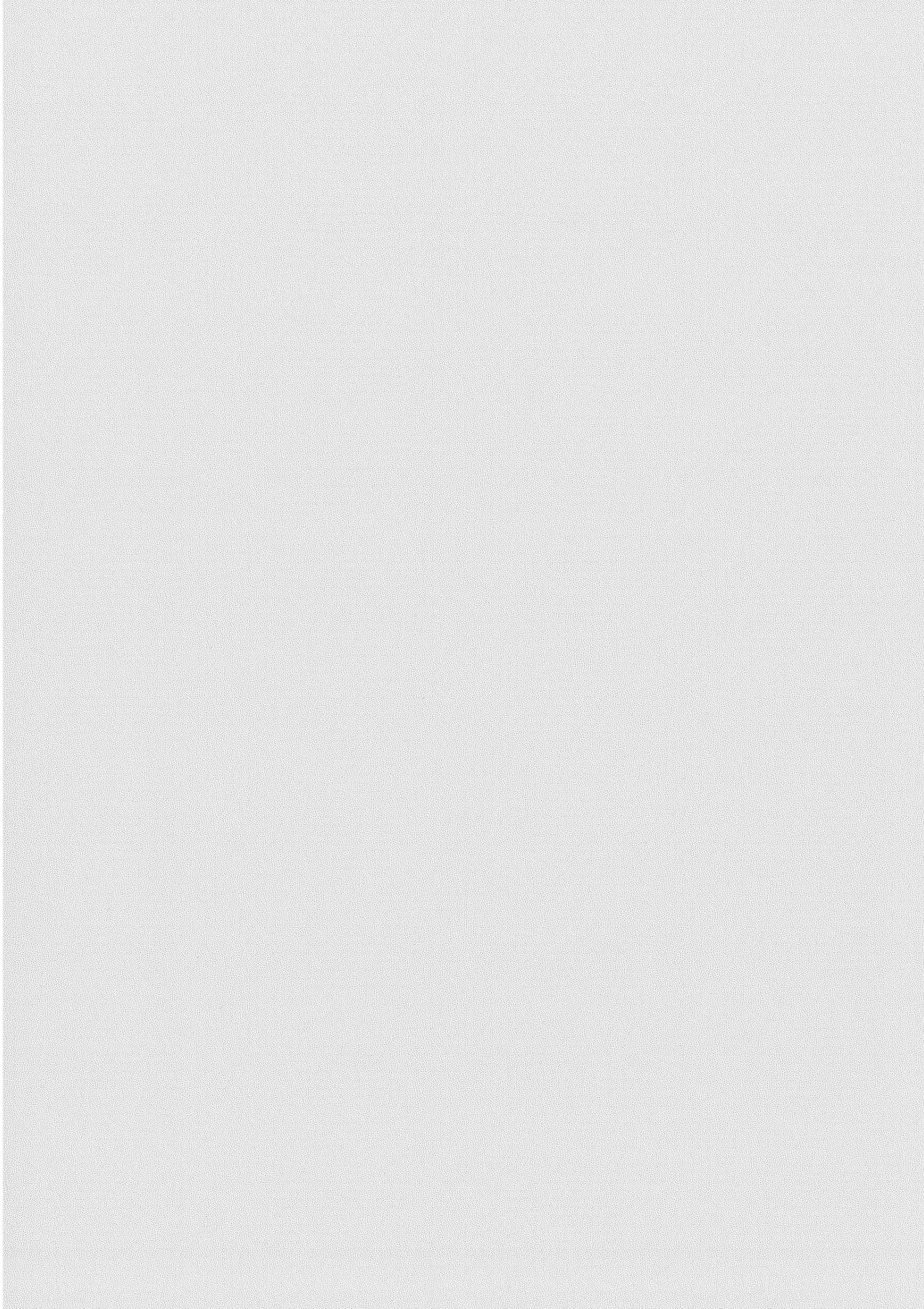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1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2000 · 9 · 통권 제71호

- I. 개회식3
- II.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5
- III.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7
- IV. 부 록
 - 1. 의사일정 33
 -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35
 - 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39
 -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1
 - 5.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53
 - 6.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57

V. 별책부록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별책1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9월 5일(화요일) 10시 05분

開會式順(第11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회사
4. 폐식

(사회:의사담당 유근영)

(10시 05분 개식)

개 회 사

● 의사담당 유근영

지금부터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김영세 교육감님,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제3대 교육위원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으며, 오늘은 후반기의 원구성이 이루어진 후 첫 임시회를 가지는

[제119회-개회식]

뜻 깊은 날입니다.

저는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조일환 위원님의 기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어제의 다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데 바입니다.

저는 전반기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우리 교육위원회가 더욱 성숙된 모습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위원회 상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교육가족의 다양한 기대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합리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한계로 인하여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 실정을 안타까움을 극복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교육 현장과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적 정착을 위하여 집행청과의 협의창구를 항상 열어놓는 한편, 교육위원회 활동의 본질적 역할인 견제와 비판 기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교육계의 진정한 여망을 잘 살피주셔서 우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청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등 교육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의안들이 상정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기가 넉넉지 못하여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상당히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리며, 모조록 진지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부족한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유근영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 10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9월 5일(화요일) 10시 10분

議事日程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개의를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손만재

예, 하시죠.

(이충원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충원 위원

[제119회-제1차 본회의]

이충원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처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기 결정 일정에 앞서 본회의의 소집 자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기에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즉, 119회 집회공고 요건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제10조2항, “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의장이 긴급한 사유로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119회 임시회 소집공고는 9월 1일이며 본인이 의안을 받은 것은 당일 오후 4시경입니다. 따라서 당일을 빼면 4일이고 당일 까지 합하면 5일만에 임시회를 여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안중 일부는 수정본이라 하여 다소 그 후에 수정한 일이 있습니다.

집회일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우선 위배가 됩니다.

의장의 긴급한 사유로 개최공고를 하였다면 그 긴급의 사유란 무엇이며, 과연 긴급의 사유가 의안의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보다 우위적 위치에 과연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즉, 의안을 소홀히 다루어 문제가 야기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안건을 취급해야 하는지 제가 문의합니다.

3일전, 그것이 아니고 의장님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긴급사유라고 보시고 소집하였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청에 집회요구된 공문에는 전혀 긴급의 문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문의하는 것입니다.

만일 본 도의회가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도의회에 통과를 목표로 하여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집회가 요구되었다고 하면 이는 10조2항의 의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거나 그 외에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긴급이란 일의 중대하고도 급함을 말합니다.

과연 중요한 안건인 추경을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소홀히 다루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지금 3대째입니다.

이제까지 긴급이라는 이유로 몇 건이나 이 조항을 적용하여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이 요구에 의하여 회의가 공고된 적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느 회의나 위원회에도 추경을 도의회의 개최기간 때문에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집회요구를 한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세

입·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왜 진작 집회요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집행청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혹 그 이유를 서면으로 문의하셨거나 그 답변을 받으신 적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있다면 옹당 우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위원회 전 회의개최를 위한 사전 협의회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 조의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의장께 줌.....

오늘 안나오십니까?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담당 “지금 나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따가 다시 이것은 조의장께 제가 직접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조의장께 묻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제가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즉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긴급한 안전인데 왜 임기만료 전에, 30일 이전에 이 안전을 처리하기 위한 소집공고를 내지 않으셨는지요? 혹시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있을 때 어떻게 답하실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또 아니면 전혀 그때는 모르셨는지,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회에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법과 규칙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의사일정은 공고 요건의 하자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요건을 구비하여 재공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양청합니다.

법과 규정을 떠나서도 이번 규정은 자그만치 8,000억원을 다루어야 하고 230억원을 재분배해야 하는 엄청난 작업량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실 때 과연 5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충원위원 자리로 돌아감)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좌석에서 또 한말씀 추가해도 괜찮습니까, 의장님?”)

● 의장 손만재

말씀하십시오.

(이충원위원 의석에서 발언함)

● 이충원 위원

네, 조일환 의장님의.....

죄송합니다. 조일환 위원님의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결석은 안하시죠?

(의사담당 “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가능하시다고 하면 정회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일환 위원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장 손만재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시간 동안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의장 손만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결식아동 성금 전달식 관계로 참석치 못하겠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의 진행이 모든 것이 매끄럽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회공고서부터 제가 법조문을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한 것인지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는 긴급이라고 하는 안전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고를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충원 위원님께서 법적 하자가 있으니 이것은 공고를 다시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긴급의 판단을 제가 잘못된 것인지 또 이것을 지금 공고한 대로 회기내에 처리 안해도 될 것인지 또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들 각자 의사에 맡기도록 하고 이 법적 하자가 있어서 다시 공고를 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 하는 이 안과 공고를.....

(이기수 위원 “저 의장님” 하고 거수하여 발언신청)

● 의장 손만재

예, 말씀하시죠.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지금 저 의장님 그 저 먼저 제가 설명하다가 조일환 위원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안오셨기 때문에 정회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답변부터 들어야 됩니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예. 제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3대 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단의 첫 회의에 이와 같이 두 번씩 정회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충원 위원님께서 제의한 그 말씀이 규정이나 법에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정회까지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전 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법적인 하자 문제나 또 책임 소재 이런 문제, 이것은 우리가 차후로도 얼마든지 따져가지

고서 그것을 처벌을 한다든지 책임을 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남아있고 지금 명퇴금이나 또한 서해수련원 건립 문제, 긴박한 문제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시기에 맞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교육위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기를 우리가 심의하기에 벅차다든지 이렇다든지 하면 우리가 5,6,7 된 것을 8,9일까지라도 연장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처리해 드리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되게끔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차후에 우리가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개최된, 공고된 이 회기를 하루 연장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이를 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회기내에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안을 저는 제시합니다.

(이기수위원 자리로 들어감)

● 의장 손만재

지금 말씀은 회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되 회기를 3일간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했던 것을 4일로 하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이게 정식으로, 가만 있어 보세요. 정식발의로 이것 받아 들인 겁니까?”)

● 의장 손만재

심의를 하자, 이런 거죠?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아니, 이것 정식 발의로 받아들여신 거예요? 이런 회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이번 회의가 늦게 와서 그 답변을 못들어서 정회를 했는데 어떻게 발언 무성의입니까? 똑바로 진행 하셔야지.”)

● 의장 손만재

말씀좀 삼가하세요.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아까 의사진행 발언 중에 대답을 들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을 지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들으시고.”)

● 의장 손만재

일단 이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끝난 것으로 보고 그리고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을 할 거냐.....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아니 끝난 게 아니죠 질의”)

● 의장 손만재

재공고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아까 그 질의 한 것에 대한 것”)

● 의장 손만재

그럼 이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공고를 해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왔고.....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그것은 독단이십니다. 그것은 그걸 수가 없는 거예요.”)

● 의장 손만재

회의를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후자의 이기수 위원님께서는 회의 날짜만 더 해서 그대로 회의를 하자,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일어서면서 “이 봐요, 의장님! 지금 회의진행이 엉망입니다.”)

● 의장 손만재

앉으세요, 앉으세요.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손만재

앉으세요.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이게 회의가 뭐예요, 이게.”)

● 의장 손만재

앉으세요.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못 앉아요. 세상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 의장 손만재

여기가 난장판입니까?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회의규칙을 지켜야지 규칙을, 의장이. 답변을 듣고자 정회를 했는데”)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제가 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본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못 여쭙잖아요. 저부터 재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발언권을 주셔야 합니다, 의사진행을 주셔야 합니다.”)

● 의장 손만재

신경이 모두 날카로우시니까 이충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그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세요.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아니 양해라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의장 손만재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정식 회의입니다.”)

● 의장 손만재

어떻겠습니까?

이 후자에 얘기한.....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정회를 했을 때는, 가만히 계세요. 정회를 했을 때는 정회한 그 의제부터 우선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예? 지금 무엇을 발의하고 무엇을 표결 하실려고 그래요.”)

● 의장 손만재

그것은 충분히 지금 간담회에서 얘기 됐잖아요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나는 말을 못 했잖아요. 왜 제 답변을 안들으려고 그래요?”)

● 의장 손만재

언제 조일환 위원님께 질의를 했습니까? 한다고 그랬지.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그것 때문에 정회를 했다면요”)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아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 의장 손만재

질의를 한다고 그랬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앉은 좌석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죠?”)

● 의장 손만재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삼가라는 게”)

● 의장 손만재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회의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아니 이게 무슨 개인의 무슨 집회입니까? 아, 의장님.”)

● 의장 손만재

어쨌든 간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회의가 진행이 안되겠습니다.

(조일환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저 의장님이 발언권 안주시니까 제가 임의로 나왔습니다.”)

● 의장 손만재

발언권 안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마이크 끌려면 꺼요, 끌려면 끄십시오. 이런 불행한 교육위원회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가 뭐니까? 사회의 규범, 교육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의회 규칙이 무시되고.”)

● 의장 손만재

왜 마이크 안꺼요?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질서없게 진

행되는 이런 의회 모습이 이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듣기로 조일환 위원에게 이충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시다. 그럼 응당 이 회의의 속개는 조일환 위원 지금 도착하였으니까 이충원 위원이 질의하시려면 하시고 해서 충분히 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여기서 토의되고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교육위원회 참 모습입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바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도출하면은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상식있고 덕망있고 교양있고 학식있는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위원들의 질의를 충분히 발언 기회를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손만재

예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이게 이렇게 저기하실 게 아니라 이게 질문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할테니까”)

● 의장 손만재

아까 조일환 위원한테 질의를 하셨었죠? 안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했죠. 그런데 본인이 못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를 기회를 주셔서.”)

(이기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 의장 손만재

예, 말씀하시죠.

(이기수위원 의석에서 발언함)

● 이기수 위원

지금 조일환 위원님께서 답변하시면 답변을 들으시고.....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그래 그러시는게,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려야죠.”)

그리고 아까 두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그것은 뭐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조위원회에 따지고 싶습니다.”)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아까 조일환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해서 가지고 이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충원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조일환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충원 위원

조일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1기에 전반기에 의장으로서 대단히 참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저는 공적 입장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즉,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긴급한 안건이라는데 왜 임기 만료 전에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공고

를 내시지 않으셨는지, 혹시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지, 또, 아니면 전혀 그 때는 이런 사항을 모르셨는지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단 말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충원위원 자리로 돌아감)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손만재

네, 답변해 주시죠.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제가 불의의 교통관계로 제가 좀 회의 개의 시간을 늦게 참여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청도 번거롭게 해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저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의장님께 제가 사전에 “자동차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죄송하지마는 혹시 가능하시다면 회의를 좀 연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택시라도 바꿔 타고 가겠습니다.” 의장님께서서는 저에게 “첫 회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저는 그 당시에 과연 의장님께서 위원의 발언할 수 있는 의사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앞으로 충분히 주실 것인가 의심해 봅니다.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이러한 동료 위원의 책임 추궁을 받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

다. 그러나 어차피 이 사항은 우리가 백일 하에 공개가 돼야 되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됩니다. 제가 추후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제가 잡을 못 이루는 그러한 언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진술한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분명히 8월 28일 저녁 10시쯤 저희 의사국 직원 두사람이 긴급한 일이 있다고 제가 학교에 나가는 충주대학 정문 앞으로 왔습니다. 거기는 노상입니다. 어느 기관장이 얼마나 급하면은 노상에서 결재하는 예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득부득 결재를 해 달라고, 내가 내일 출근하니 내일 출근하면 되지 오늘 이 밤중에 꼭 해야 되겠는가, 좀 언성을 높였길래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8월 28일자 집행청으로부터 이첩됐다는 이 공문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공문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급하냐, 전쟁이라도 났느냐, 내일 하겠다, 알고 보니까 이 공문입니다.

그 다음날 제가 출근했을 때에 집행청에 저희들 이 이첩된 내용을 저희 위원회 간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기 이전에 제가 8월 20일경 의사국의 국·과장, 계장을 제가 같이 앞으로 위원회 잔여 임기동안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9일날 의장단 선거만 하고 마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오시기도 그렇잖아. 그러니 이 때에 집행청에 알아봐라, 의안이 넘어 올 게 있는가 없는가 알아봐라 해서 의안도 심의하고 마지막날 우리가 의장단 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확인을 시켜본 결과 9월 상반기 중에는 없습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것만 공고를 하지. 그런 3일쯤 후에 바로 저한테 유선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의장님, 이 회기를 공고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공고를 하면 하반기 의장님이 주재를 해야 되고 그 급하지 않으면 그것을 왜 지금 공고를 할려고 그러느냐, 누가 임기 말기에 조심해야 되는 거다, 인사를 함부로 발령을 하고 가도 안 되고, 하반기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관례다, 못하겠다. 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 추경이라는 게 어제 오늘 날벼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미 내가 집행청에 의안이 올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했고, 이게 공고 이후에 좀 나쁘게 말하면 현재 의장이 당시 조일환 의장이 의장 아닐 때 이것을 개최하려는 그런 의도로 뿐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불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법을 위반했다든가 하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종합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의안을 접수하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충분한 기간을 확보, 검토, 조사, 확인, 검증해서 충실한 의안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최하예요. 두 번째, 의안과 관련있는 기관단체, 개인 등의 의견 개진으로 위원에게 의안심의에 참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위원은 노력해야 됩니다.

셋째, 위원은 의안과 관련한 자료요구, 현장확인, 증언, 질의 등을 통하여 의안의 심의에 반영, 충실한 심의를 하도록 우리 회의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불행하게도 지방재정법 77조1항을 위반하고 의안에 올라온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안이 정당한가, 또 이 100억대가 넘는 사업이 과연 이 계획이 적합한가, 2,3일 해 가지고 이렇게 졸속 통과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안 제출기관은 충분한 심의기간을 예상하고 의안을 최소 일주일의 공고기간을 확보하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의 최소한의 심의할 수 있는 권리요, 또한 위원의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북교육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는 총원이 7명입니다. 약 100개의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포함하면.

교원이 약 한사람 앞에 2,000명, 학생이 약 4만명을 담당하는, 우리는 기초자치가 없습니다, 광역입니다. 또 회의일수가 정기회 포함해서 50일, 10일, 총 60일로써 방대한 9,000억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교육위원에게 충분한 심의기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또한 우리는 전문위원이나 개인적으로 보좌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긴급히 이것을 공고했다고 그래서 긴급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사전, 그리고 회의규칙을 찾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은, 일이 아주 중대하여 대책 따위의 지급을 요하는 상태. 긴급동의란 회의에 있어서의 예정 의제 이외의, 예정 의제 이외의 의제를 동의하는 의제. 긴급사태, 절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태. 긴급질문,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로써 할 것을 인정받은 일정 이외에 질문. 긴급권, 한 나라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 제가 상정을 받은 이 의안이 과연 이 긴급에 해당되는 안건이나, 제가 '99년도 2회 추경의 설명자료도 참고했고, 3회 거의가 급식, 적성교육, 기타 대단히 그 예산내용이 평범한 정상적인, 오히려 급하다면 작년에 2회 추경에 명퇴수당으로서 3백 몇십억 기재할 때 그때는 긴급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긴급 이런 것이 의결이 소집도 안됐습니

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의 긴급과 관련되는 정의에 비추어 이 안이 과연 긴급한 의안인가, 긴급이라는 부당한 사유로 회의규칙을 오남용,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고 교육위원회 의안에 관하여 제반 활동을 과연 제한할 수 있는가, 위원이 위원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충북교육을 위하여 집행청과의 유기적인 관계 개선인가, 이상에서의 관점에 금번 제출한 의안을 제가 또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평시 의안과 비교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8월 20일경 위원회 간부 3명과 의사일정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9월 중순 이전에 제출할 의안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9일 의장단 선거일을 공고한 이후 8월 26일경에 사무국 간부가 유선으로 집행청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될 것인가 9월 4일 회의집회공고 권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긴급의안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반기 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수일 후 마치는 기간의 회의공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수일 전에 의안 유무 확인후 집회공고 이후에 의안을 제출하였다면 집행청의 저의로 교육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고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건에 대해서 제가 말

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부담의 확정시점이 언제냐, 확정시점이 언제냐, 전부가 3월달이 9건, 4월달이 9건, 5월달이 6건, 6월달이 7건, 7월달이 6건, 8월달이 단 한건입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 이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확보 시점은 기록에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확보 시점으로 감안, 긴급의안으로 부실한 심의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전에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77조1항, 예를 들면 지금 서해수련원 이게 어떻게 상정을 합니까? 77조 1항이 됩니까, 공유재산을 변경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승인도 안받고 추가로 두 번, 세 번 의안을, 의안이.

햇바지입니까, 위원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괄세를 받아도 됩니까?

어째서 변경승인도 안받은 예산이 심의해달라고 올라옵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번에 이 집회공고는 원천 무효로 하고 우리가 규칙, 법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선출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제119회-제1차 본회의]

진실로 위원의 양심으로 호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제가 119회 임시회 소집 근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10조에 보시면 “교육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집회가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일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집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을 제가 봤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긴급 사유로 집회를 공고한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대 때 '98년 11월 97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3일 전에 긴급공고한 일이 있습니다.

또, '99년 11월 107회 임시회에서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 관계로 2일 전에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4월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5학급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직 폐지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집회 3일 전에 공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7월달에 지난 7월달에 116회 임시회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집회 2일 전에 공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저 의장님! 의

장님!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손만재

이번에 이런 것을 사안을 판단해서, 판단해서 추석 연휴 또 도의회 관계, 9월달에 감사원 감사관계,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듣고서 긴급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긴급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안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이나 이 의결에 지장을 주는 발언을 하시려면 발언대에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서 발언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의결 종결되기 전까지는 의장석을 부의장님에게 이것을 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의사진행,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알고.”)

● 의장 손만재

저, 사과드립니다.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장내소란)

(이상일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상일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오늘 회기 문제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한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우리 의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사일정이 상정이 안됐습니다.

의사일정이 상정이 안되고 의장의 개회사만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안거쳤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 순서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의장이 의사일정을 상정한 다음에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는 그때가서 따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의사일정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까? 상정도 안됐습니다. 개회식 끝나고 바로, 개회사 끝나고 바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아, 좋습니다. 일단은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대로 이 의안을 상정한 다음에 토론을 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이상일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여러 가지로 제가 자꾸 됩니다마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상정을 해서 모든 의안처리를 할 것이냐, 재 공고를 할 거냐, 두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 긴급회의이고 해서 회기를 3일간으로 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공고를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3일간은 너무 적으니까 4일로 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을 4일로 해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냐.....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손만재

또 하나는 지금 이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에 하자가 있으니까 재공고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후자의 이충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가 해서 안되니까 이 회의를 재공고해서 하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아니 회의 자체가,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저에게 발언권 주세요.”)

(이상일 위원 좌석에서 “아니 의장님 우선 상정을 하세요”)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님은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재공고를 해서.....

(이상일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일단은.”)

(이기수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 의장 손만재

뭐 한정이 없으니까요.....

(이기수 위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 의장 손만재

예.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제119회-제1차 본회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아까 그 이상일 위원님의 말씀에 그 절차상의 문제는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회의진행이 조금하게 의장님의 의사일정에 대한 상정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충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고, 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두 번 정회 끝에 어느 결론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또 이제 두 안에 대해서 제안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벌써 그 순서에 맞지 않게끔 의견은 다 나온 얘기니까 두 안을 놓고서 여기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이충원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권 주셔야 합니다.”)

● 의장 손만재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장내소란)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제119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9월 7일까지 심사한 후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본회의장에서 나감)

(조일환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아니 누구의 의사진행을, 왜 그러세요 의장님? 아니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도 발언권을 좀 주세요.”)

● 의장 손만재

아니, 발언권 못 주겠습니다.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끄실려면 끄세요.”)

● 의장 손만재

못 주겠습니다.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저는 이상일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 의장 손만재

정지시키세요.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그런데 정지를 몰라요.”)

● 의장 손만재

정지시키세요.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경찰관 불러요, 나를 퇴장시키려면. 누가 나를 퇴장을 시켜”)

● 의장 손만재

정지시키세요, 빨리.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정지를 누가 시켜.”)

● 의장 손만재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적으

로 회의를 방해하는 거예요?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그런데 제가 와서도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벌써 이미 상정이 된 것 같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서류로다가 이래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면 논의한 것을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진행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이 긴급회의 소집에 대한 불가론도 다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생산적인 회의 운영을 봐서 우리 위원님이 만약에 양보를 하신다면은 지금까지의 회기를 늘려서 한다든가 수정안도 있었고, 또 이충원 위원이나 저같은 사람은 규정에 없는 것을 법에 없는 것을 이러한 것은 원천 무효다. 다시 재공고를 하자, 제 생각에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산적인 운영방법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 의장 손만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사일정 4일간으로 하는 것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조일환위원 자리로 들어가면서 거수)

예, 한분.

지금 말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으니까 이의가 한분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참 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12시 05분)

● 의장 손만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환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아니 저 김광수 위원님도 위원발의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보세요. 무슨 권리로 그래요, 무슨 권리로. 날 방해한다고 날 내 쫓아요?”)

● 의장 손만재

지금 방해 아닙니까, 회의?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예, 방해 아닙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위원으로서.”)

● 의장 손만재

들어주세요.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못들어 갑니다”)

● 의장 손만재

들어주세요.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못해요, 저는. 여보시오 이런 회의가 있습니까? 이게 교육위원회 역사상 있습니까?”)

(장내소란)

● 의장 손만재

관계관계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세요.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못나와요, 저는.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우리 위원님들 정말 우리 이래도 됩니까? 왜 질서있게.”)

● 의장 손만재

제지 못합니까?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경찰 불러요! 안됩니다. 이런 독선과 말이야, 이런 무지의 이런 의사진행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의장 손만재

들어가요, 빨리.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못 들어갑니다.”)

● 의장 손만재

자리로 들어가세요.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못 들어갑니다. 얘기하세요.”)

● 의장 손만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조일환 위원 한사람의 의회입니까?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바로 손만재 위원님 혼자 위원회예요, 이게?”)

● 의장 손만재

들어가요.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의장이면 의장답게.”)

● 의장 손만재

들어가요.

(조일환 위원 발언대에서 “부당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본지입

니다. 그래 긴급의안이 못되는 의안을 놓고 긴급의안이라고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려요? 어물어물하고.”)

● 의장 손만재

들어가요, 빨리.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분위기로 봐서 이대로 회의진행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나 정회하기 전에 의사일정이 상정이 돼서 의사일정이 돼야지만이 회기일수도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의사일정이 상정도 안됐는데 회의결정을 하는 것은 이게 순서로 봐서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일 위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정회.”)

● 의장 손만재

다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의장 손만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부덕하여 회의진행 과정에서 언행이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중

충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만재 의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 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둘째,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05분)

● 의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전반기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내륙에 위치한 우리 도 학생 및 교직원들의 수련활동의 장으로 서해수련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 확보한 부지에 건물 8,020㎡ 및 옹벽·포장 2,700㎡ 등 공작물 13종을 취득하고자 하며,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금천고등학교에 특별교실과 부속시설 1,065㎡와 중앙여고에 특별교실 720㎡, 충주여고에 특별교실 및 부속시설 1,170㎡를 취득하고, 과학교육 내실을 위하여 괴산 증평중학교에 과학관 825㎡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 참 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 '99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 학교부지 도로편입 보상금 등 증액된 세입 재원으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고, 실업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수련활동 시설 등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8,115억4,100만원 대비 세입·세출 각각 231억6,700만원이 증액된 8,347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금 수입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170억3,600만원과 '99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 및 비법정 전입금으로 17억1,100만원, 학교부지 도로편입 보상금 등 4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교육행정부 등으로 394억2,40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으로 10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여장학금 부담금 21억4,300만원과 예비비 151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180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수용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과학관 신축, 다목적 강당

신축, 교직원 사택 건립 등에 편성하여 간접시설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소질을 계발하여 전인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특기·적성 교육활동비로 2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총 1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교원 및 실습용 컴퓨터 보급비 2억8,100만원, 학교 전산 활성화를 위한 전산보조인력 활용비 5억3,500만원, 인터넷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상방송 시스템 구축비 1억2,100만원, 오지지역 분교장의 위성 인터넷망 구축비로 1억1,600만원, 본청 교육행정 전산망 확장과 홈페이지 개선·보완사업비 2억900만원입니다.

또한, 실업계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직업교육확충비로 17억7,100만원과 영동농·공고 유리온실 신축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실업계고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1억4,500만원,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 연수비 1억3,100만원, 산업체 현장 연수비 8,900만원을 계상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교원들이 하루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그간 도내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서해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가칭 충청북도 서해수련원 시설비로 14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 8,600만원, 도·농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

지원비 2,3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억9,700만원, 교원들의 자율적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교과교육 연구활동 연구비로 1억2,000만원, 평생교육 활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중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추가액과 토지보상금 등 자체수입 그리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시설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별첨4

(끝에 실음)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별첨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첨2

● 의장 손만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 별로 해당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15시 13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도 역시 일괄 상정합니다.

중전의 예에 의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의 구성은 각각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역시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의안건중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9월

7일까지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광수위원님과 송진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위원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정칙적으로도 중립을 강조하고 그리고 전문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어떠한 과학보다도 특유한 그러한 과학입니다.

하물며,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냉철하게 이성을 찾고 그리고 지적으로 교양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119회 임시회를 마치는 본 위원은 마치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장송곡을 부르는 듯한 이러한 비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난상토론 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그리고 좋은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앞으로 해 주실 것인가 안해 주실 것인가, 또한 위원의 발언을 막아서 위원이 여기 나온다고 해서 독선을 하느냐, 끌어내라, 마치 우리가 짐승에게나 사용하는 이런

비속한 용어로 회의를 이끌어 앞으로도 가
실른지 이것에 대한 의장님의 솔직한 심정
과 사과의 말씀을 촉구합니다.

또한 제가 마치 전반기 의장단이 끝나고
인수인계 또는 선거과정에서 자칫 휴유중에
관한 이러한 것으로 비춰질까봐 대단히 송
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쪽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유롭고, 그런 정도
의 식견은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감님이하 집행청에
누를 끼쳤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과 같은 날치기 통과가 다시는
이 회의장에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치판에서나 있는 줄 알았더
니 우리 교육판에도 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진중하게 사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지금 조일환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위원님
개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모든 걸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제119회-제1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 별첨2

▶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 별첨3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별첨4

※ 별책부록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별책1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실명서 : 별책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9월 8일(금요일) 10시 03분

議事日程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3.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께 누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틀동안에 소위원회 운 영하면서 진지하게 그리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저의 부덕한 소치로 여러 위원님

이를 거울삼아 더욱 신뢰받는 교육위원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청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심의하는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더욱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과보고

(10시 05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9월 7일 본 위원회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7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이신 이상일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간사 이상일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이상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 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5일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 주요 내용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청에서는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방안을 모

색하여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조례안의 성안에서부터 소위원회 심사과정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5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계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10시 11분)

● 의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제2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 의장 손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이기수 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간사 이기수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 이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3일간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 일동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세출예산 편성의 합목적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던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115억4,115만원보다 231억6,704만원이 증액된 8,347억8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70억3,598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7억1,13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44억1,9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학교 교육에 220억7,155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4억375만원, 교육행정에 169억4,8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급여,복지와 기타 경비는 각각 1억1,059만원과 151억4,632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30억6,712만원으로 본청 청사보수공사 사업비로 15억6,812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청사보수가 불가피하기는 하나 산적한 다른 현안 사업과의 투자 우선순위

및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수범적 입장을 고려하여 동 사업비중 시급한 보수공사비를 제외한 7억1,8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충남 보령시에 건립할 예정인 서해수련원의 건립 사업비로 14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륙도로서 해양수련원의 확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추진상의 적시성과 사업효과 그리고 막대한 재원의 투자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비의 일부를 보다 시급한 일선 교육현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23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그리고 정보화사업 지원 및 실업교육 강화, 학생 수련활동 시설 등을 투자요인으로 하여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예산의 경우 많은 재원이 엘리트 체육을 위한 예산으로 투자되고 있는 반면,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균형적인 학교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학의 부족한 재정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공립보다 열악한 실정인 바 학생들에 대한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사립학교

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적 발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삭감되어 조정되는 재원을 향후 예산편성시 제7차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재투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의견에 따라 200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삭감이유와 내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간사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6

[제119회-제2차 본회의]

(끝에 실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 손만재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세입·세출 각각 8,347억819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5
- ▶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6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9. .

의 장 손 만 재 

위 원 김 광 수 

위 원 송 진 하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1)

議 事 日 程

第119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0. 9. 5. ~ 9. 8. (4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p>9月 5日(火) (10:00)</p>	<p>□ 開會式</p> <p>[第1次 本會議 開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0. 9. 5. ~ 9. 8. (4 일간)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p>[第1次 本會議 散會]</p> <p>□ 小委員會 活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p>9月 6日(水)</p>	<p>□ 小委員會 活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결산소위원회 	<p>본회의 휴회</p>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月 7日(木)	<p>□ 小委員會 活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결산소위원회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회
9月 8日(金) (15:00)	<p>[第2次 本會議 開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3.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p>[第2次 本會議 散會]</p> <p>※ 閉 會</p>	

(별첨2)

의안번호	제 119-1 호
의결 년 월 일	2000. (제 회)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8. 28.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19-1
----------	-------

제출년월일 : 2000. 8. 2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정사유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 3. 1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함.(안 제2조)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3조)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평생학습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안 제5조)

제정근거

- 평생교육법 제13조 제4항

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평생 학습관을 지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징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평생교육법제13조(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

③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별첨3)

의안번호	제 119-2호
의 결 년 월 일	2000. . . . (제 회)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8 . 28.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제2회變更計劃(案)

議案 番號	119-2
----------	-------

提出年月日：2000. 8. 28.

提出者：忠清北道教育監

1. 提案事由

公有財産의 取得事由가 追加 發生함에 따라 地方財政法 제77조 및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0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제2회 變更計劃을 樹立하여 忠清北道教育委員會의 議決을 얻고자 함.

2. 主要骨子

公有財産의 取得

0 金川高等學校	特別教室, 階段室, 學生化粧室 增築	1,065m ²
	排水路	110m
	鋪裝	210m ²
0 中央女子高等學校	特別教室 增築	720m ²
	連結通路 增築	67m
0 忠州女子高等學校	特別教室, 學生化粧室, 階段室 增築	1,170m ²
	連結通路 增築	25m
0 槐山 曾坪中學校	科學館 新築	825m ²

3. 提案根據

- 0 地方財政法 제77조 및 同法施行令 제84조
- 0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 제34조

4. 2000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제2회 變更計劃書: 덧붙임

5. 關係法令拔萃書 : 덧붙임

6. 設明資料 : 별 책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제2회變更計劃書

公有財産管理計劃總括表(7-1)

【機關名：忠清北道教育廳】

(單位：㎡/㎡，千圓)

區 分		上 半 期			下 半 期			合 計		
		件數	數 量	金 額	件數	數 量	金 額	件數	數 量	金 額
取 得	計	土地								
		建物			4	3,872	3,093,650	4	3,872	3,093,650
		其他			1	320	26,740	1	320	26,740
	1. 賣 入	土地								
		建物								
		其他								
	2. 교환 으로취 득	土地								
		建物								
		其他								
	3. 其他 取得	土地								
		建物			4	3,872	3,093,650	4	3,872	3,093,650
		其他			1	320	26,740	1	320	26,740
處 分	計	土地								
		建物								
		其他								
	4. 賣 却	土地								
		建物								
		其他								
	5. 讓 與	土地								
		建物								
		其他								
	6. 기타 處分	土地								
		建物								
		其他								

取得對象 財産目録(7-2)

【기관명 : 忠清北道教育廳】

(單位 : m²/m, 천원)

一連 番號	財 産 の 表 示				推 定 價 額	取 得 時 期	取 得 事 由	取 得 財 産 所 有 者 住 所 姓 名	備 考
	機 關 名	區 分	所 在 地	數 量					
1	금 천 고	建 物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4-6	1,065	726,450	하반기	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教育監	1쪽
		工作物		2종	26,740	"	외부환경개선	"	
2	중앙여고	建 物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	787	630,600	"	7차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	2쪽
3	충주여고	建 物	충주시 용산동 2060	1,195	909,600	"	"	"	3쪽
4	괴산 중평중	建 物	괴산군 중평읍 중천리 600	825	827,000	"	교육환경개선	"	4쪽
계		토 지							
		건 물	4교	3,872	3,093,650				
		공작물	1교	2종	26,740				
		계			3,120,390				

關係法令拔萃書

□ 地方財政法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 地方財政法施行令 제84조(公有財産의 管理計劃)

제84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法 제7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의 管理計劃에 관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때에는 地方自治法 제35조 제1항제6호의 規定에 의한 重要財産의 取得·處分에 관한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法 제77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公有財産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豫定價格이 取得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處分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豫定價格의 基準은 土地에 있어서는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個別公示地價(해당토지의 개별 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算定한 金額을 말한다)로 하고, 建物 및 其他 財産에 있어서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으로 한다.
2. 土地에 있어서 取得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處分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市·郡·自治區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 第8條(教育委員會의 議決事項)

第8條(教育委員會의 議決事項) ①教育委員會는 당해 市·道의 教育·
學藝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市·道議會에 제출할 條例案
2. 市·道議會에 제출할 豫算案 및 決算
3. 市·道議會에 제출할 特別賦課金·使用料·手數料·分擔金 및 加入金の
賦課와 徵收에 관한 사항
4. 市·道議會에 제출할 起債案
5.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한 사항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處分에 관한 사항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관리 및 處分에 관한 사항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
에 관한 사항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法令과 市·道 條例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②第 1 項 第5號 내지 第11號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教育委員會의
議決은 市·道議會의 議決로 본다.

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 제34조(公有財産管理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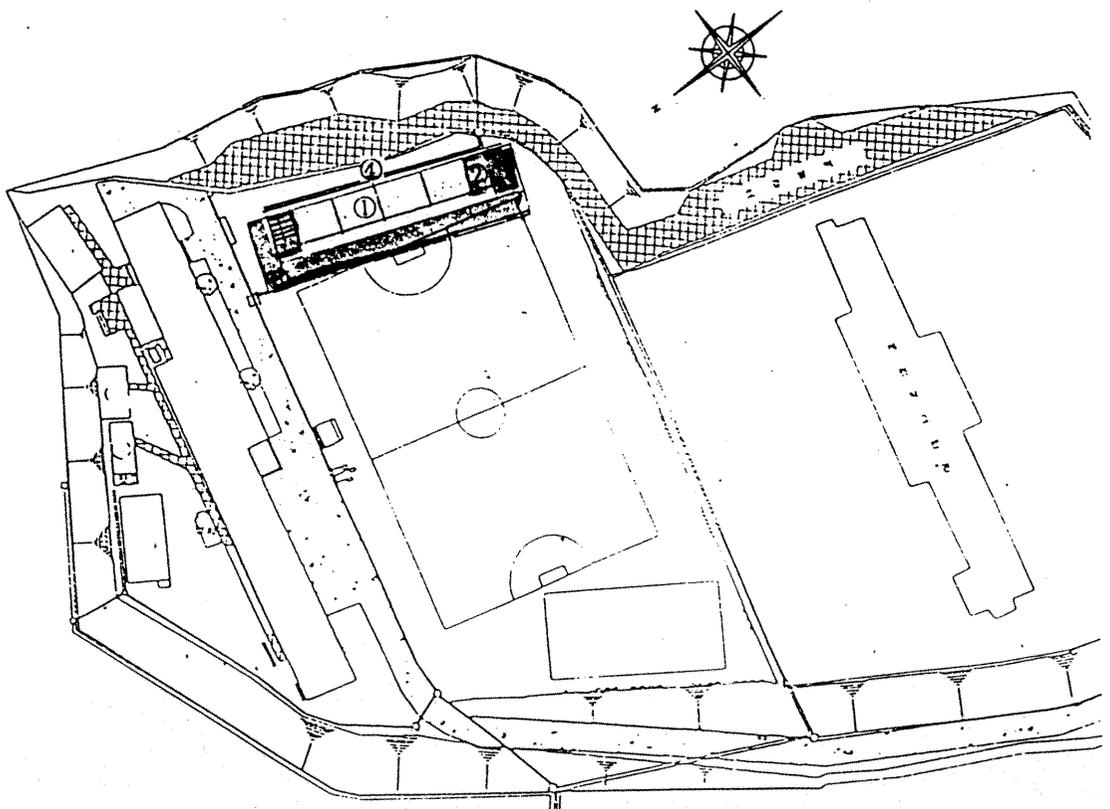
제34조(公有財産管理計劃)①教育監은 地方財政法제77조 및 令 제84조의 규
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取得·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教育委員會의 의
결을 받아 公有財産을 取得·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追加更正豫算 編成 전에 變更計劃을 作成하여
教育委員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2000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제2회變更計劃(案)

設 明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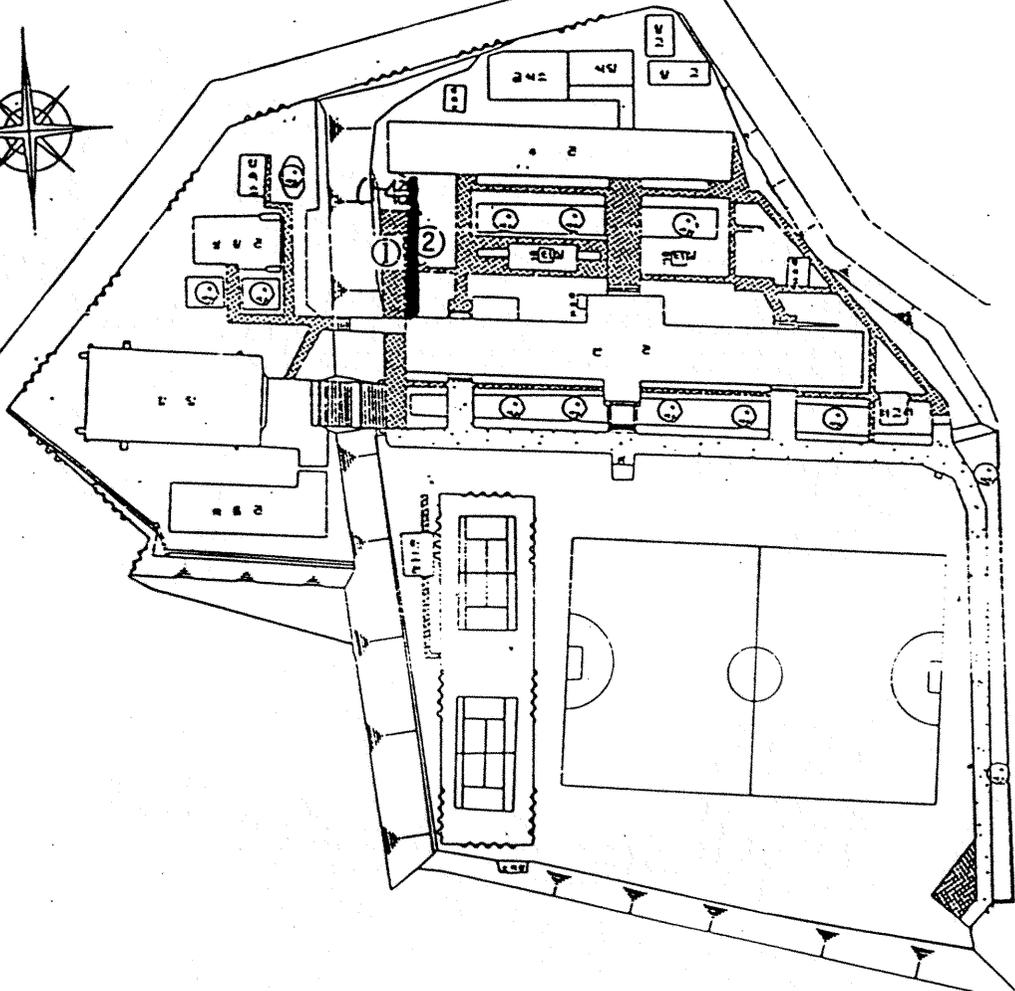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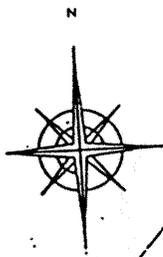
금천고등학교 건물 및 공작물취득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m ² /m)	취득금액 (천원)	사유
①특별교실	청주시 상당구	4-6	철콘슬	720	429,600	7차 교육과정예 따른 증축
②계단실	금천동		"	225	134,250	"
③학생화장실			"	120	162,600	"
④배수로			철·콘	110	15,400	외부환경개선
⑤포장			"	210	11,340	"
계						753,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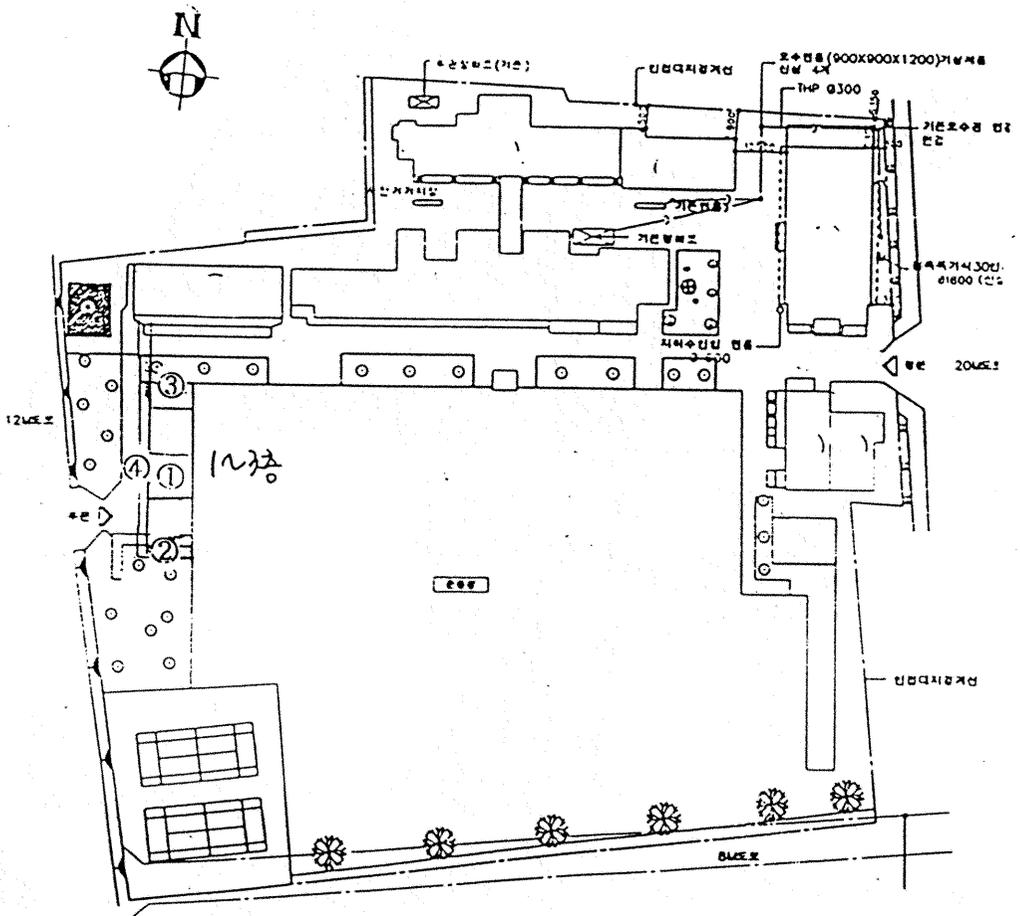
중앙여자고등학교 건물취득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m ² /m)	취득금액 (천원)	사유
①특별교실	청주시 흥덕구	227	철콘슬	720	429,600	7차 교육과정예 따른 증축
②연결통로	사창동		"	67	201,000	"
계					63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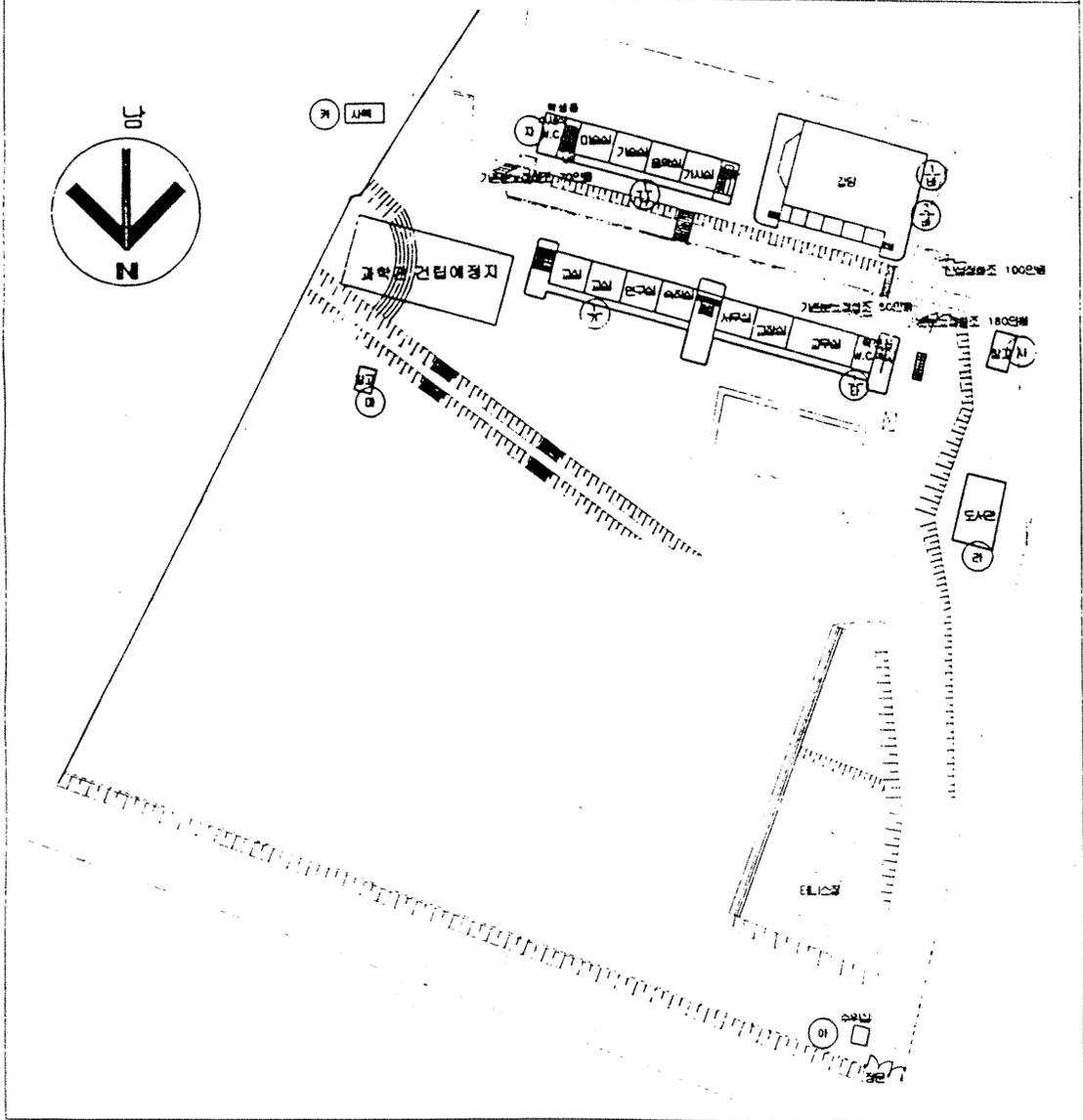
충주여자고등학교 건물취득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① 특별교실	충주시 용산동	2060	철·콘·슬	810	483,300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증축
② 학생화장실			"	180	243,900	"
③ 계단실			"	180	107,400	"
④ 연결통로			"	25	75,000	"
계					909,600	



괴산 증평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m ²)	금액(천원)	사유
과학관	괴산군 증평읍 증천리	600	철.콘.슬	825	827,000	교육환경개선



(별첨4)

의안번호	제 119-3호
의 결	2000. 8. .
년 월 일	(제 회)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0. 8. 28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19-3
----------	-------

제출년월일 : 2000. 8. 28.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115억 4,114만 6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231억 6,704만 4천원이 증액된 8,347억 819만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70억 3,598만 4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7억 1,130만 2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4억 1,975만 8천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중 학교교육 220억 7,155만 2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4억 374만 7천원, 교육행정 169억 4,865만 8천원, 기타경비 28만 7천원을 증액하고, 급여·복지 11억 1,059만 2천원, 예비비 151억 4,660만 8천원을 감액하였음.

예산(안) : 별책

사항별설명서 : 별책

(별첨5)

(제119회 임시회)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9.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8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5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9월 5일(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9월 5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0년 9월 7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이주원)

가. 제안이유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 3. 1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함(안 제2조).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3조).
 -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평생학습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안 제5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6)

(제119회 임시회)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0. 9.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59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59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59
4. 토론 주요내용	60
5. 심사보고 주요내용	60
6. 심사결과	63
7. 소수의견 주요내용	63
8. 기타 필요한 사항	63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8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5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9월 5일(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0년 9월 5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0년 9월 6일)
 -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00년 9월 7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11,541,146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23,167,044천원이 증액된 834,708,190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7,035,984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711,302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419,758천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중 학교교육 22,071,552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403,747천원, 교육행정 16,948,658천원, 기타경비 287천원을 증액하고, 급여·복지 1,110,592천원, 예비비 15,146,608천원을 감액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예산규모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11,541,146천원보다 23,167,044천원이 증액된 834,708,19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되었음.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834,708,190	811,541,146	23,167,044	2.8% 증가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17,035,984천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711,302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419,758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722,054	59.2
	국고지원금	3,313,930	14.3
	소 계	17,035,984	73.5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법정전입금	1,464,503	6.3
	비법정전입금	246,799	1.1
	소 계	1,711,302	7.4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재산수입	4,238,958	18.3
	사용료및수수료	6,775	0.0
	잡 수 입	67,022	0.3
	이 월 금	107,003	0.5
	소 계	4,419,758	19.1
합 계		23,167,044	100.0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22,071,552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403,747천원, 급여 복지 △1,110,592천원, 교육행정 16,948,658천원,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경비 △15,146,32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	성비(%)		
학교교육	유	치	원	△399,101	△	1.7		
	초	등	학	교	13,163,266	56.8		
	중	학	교	1,616,002	7.0			
	고	등	학	교	7,613,780	32.9		
	특	수	학	교	51,484	0.2		
	기	타	학	교	26,121	0.1		
	소	계		22,071,552	95.3			
문화 및 평생교육	평	생	교	육	403,747	1.7		
급여·복지	급	여	관	리	1,033,279	4.4		
	복	지	·	후	생	△2,143,871	△9.2	
	소	계		△1,110,592	△4.8			
교육행정	교	육	청	2,123,062	9.2			
	지	역	교	육	청	434,496	1.9	
	교	육	지	원	기	관	14,391,100	62.1
	소	계		16,948,658	73.2			
기타경비	제	지	출	금	287	0.0		
	예	비	비	△15,146,608	△52.1			
	소	계		△15,146,321	△65.4			
합	계		23,167,044	100.0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교육환경개선 시설 4,116,131천원
- 수용 및 일반시설 확충 10,813,092천원
- 중평중 과학관 신축 827,000천원
- 음성중 다목적강당 신축 491,000천원
- 옥천 교직원 공동주택 건립 282,000천원
- 본청 청사수선 1,568,121천원
-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2,775,312천원

○ 교원용 및 실습용컴퓨터 보급	281,064천원
○ 전산보조원 임용	535,305천원
○ 인터넷 화상방송(회의)시스템 구축	121,000천원
○ 위성 인터넷망 구축	116,023천원
○ 교육청 전산망	209,000천원
○ 직업교육 확충	1,770,309천원
○ 실험·실습교육 여건 개선	300,000천원
○ 부전공 자격연수	144,712천원
○ 정보화 전문요원 연수	131,800천원
○ 산업체 현장연수	89,066천원
○ 서해 수련원 건립	14,349,000천원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86,248천원
○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	22,670천원
○ 교원 명예퇴직수당	397,211천원
○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120,000천원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75,430천원 등임

나. 삭감내역

삭감액 : 3,067,121천원

삭감내역 및 사유

○ 본청 청사보수공사 △718,121천원

본청 청사보수공사 사업비로 1,568,121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청사보수가 불가피하기는 하나 산적한 교육 현안사업과의 투자 우선순위 및 교육행정기관으로서의 수범적 입장을 고려하여 동 사업비중 시급한 보수공사비를 제외한 718,121천원을 감액하였음.

○ 서해수련원 건립 △2,349,000천원

충남 보령시에 건립할 예정인 서해수련원 건립 사업비로 14,349,00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륙도로써 해양수련원의 확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추진상의 적시성 및 사업효과, 그리고 막대한 재원의 투자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비의 일부를 보다 시급한 일선 교육현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2,349,000천원을 감액하였음.

나. 종합의견

금번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정보화사업 지원, 실업교육 강화, 학생 수련활동 시설 등을 투자요인으로 하여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체육예산의 경우 많은 재원이 엘리트 체육을 위한 예산으로 투자되고 있는 반면,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를 개선하여 균형적인 학교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학의 부족한 재정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공립보다 열악한 실정인 바, 학생들에 대한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또한, 국고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면밀히 검토되어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의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금번 삭감되어 조정되는 재원은 향후 예산편성시 제7차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다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참석 6명, 찬성 6명)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0년 9월 8일

제안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중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교육청시설(항), 교육청시설(세항)

- 청사보수공사 1,568,121천원중 718,121천원을 감액함.

나. 교육행정(장), 교육지원기관(관), 지원기관시설(항), 지원기관시설(세항)

- 서해수련원건립 14,349,000천원중 2,349,000천원을 감액함.

다. 예비비 9,340,462천원을 12,407,583천원으로 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장)교육행정 관)교육청 항)교육청시설 세항)교육청시설

청사보수공사 1,568,121천원을 718,121천원 감액한 850,000천원으로 한다.

장)교육행정 관)교육지원기관 항)지원기관시설 세항)지원기관시설

서해수련원건립 14,349,000천원을 2,349,000천원 감액한 12,000,000천원으로 한다.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항)예비비 세항)예비비

예비비 9,340,462천원을 3,067,121천원 증액한 12,407,583천원으로 한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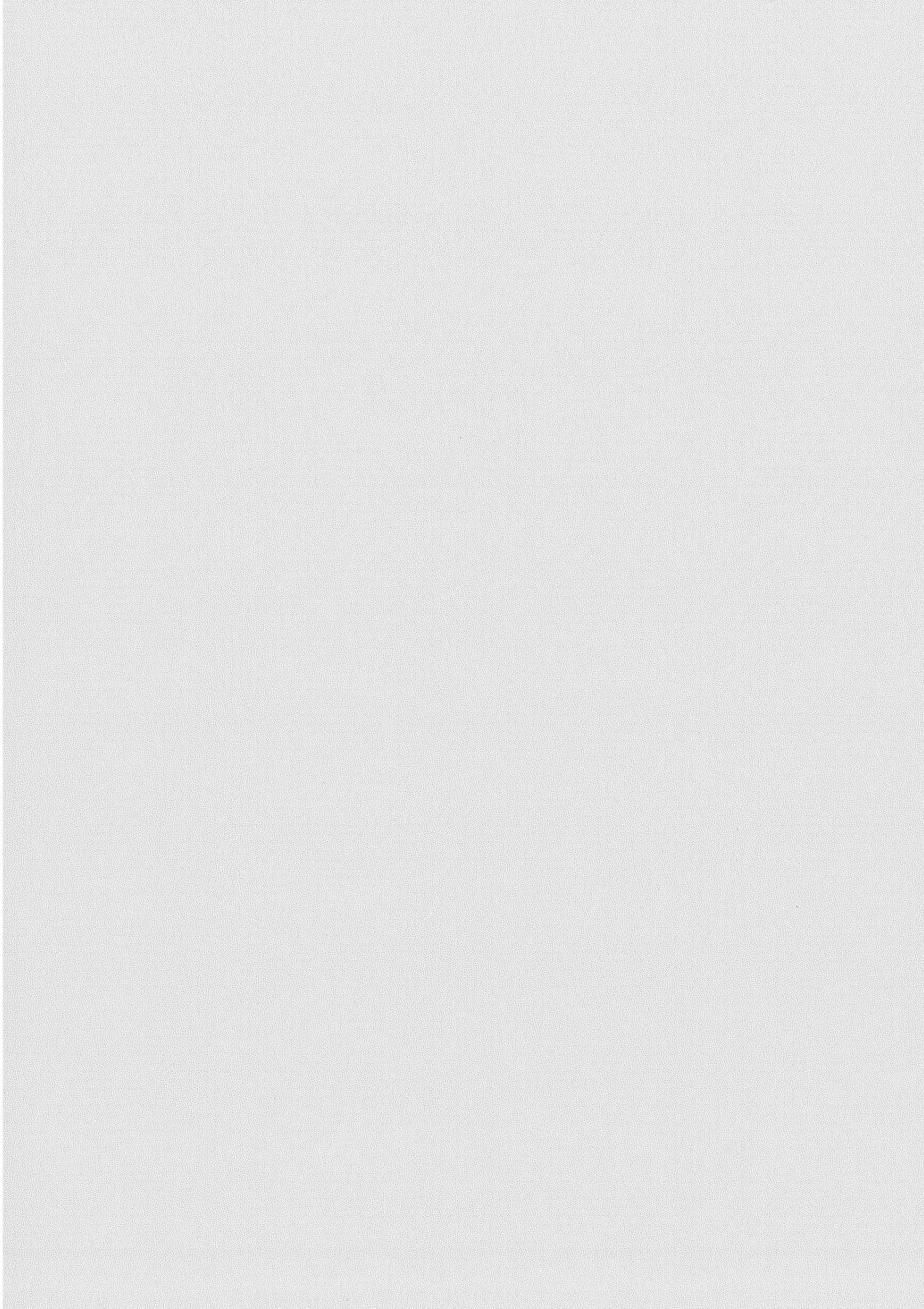
(단위 : 천원)

장	관	과		세	항	교육감제출		교육위원회 의결		예산액	수	정	내	용
		예	산			감	액	증	액					
1.	교육행정	31,259,868		3,067,121						28,192,747				
3.	교육청	8,246,690		718,121						7,528,569				
	2. 교육청시설	1,711,971		718,121						993,850				
	01. 교육청시설	1,711,971		718,121						993,850				△718,121
														○P105. 청사보수공사 (1,568,121 → 850,000)
5.	교육지원기관	17,739,632		2,349,000						15,390,632				
	2. 지원기관시설	15,113,153		2,349,000						12,764,153				
	01. 지원기관시설	15,113,153		2,349,000						12,764,153				○P130. 서해수련원건립(시설비) △2,345,600 (13,878,000 → 11,532,400) ○P132. 시설부대비 △3,400 (25,000 → 21,600)
3.	기타경비	15,864,840								18,931,961				
	3. 예비비	9,340,462								12,407,583				
	1. 예비비	9,340,462								12,407,583				
	1. 예비비	9,340,462								12,407,583				○P114. 예비비 3,067,121 (△15,146,608 → △12,079,487)
	합	834,708,190		3,067,121						834,708,190				

第11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
II.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7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19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9월 5일 (화요일) 16시 11분

議事日程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11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6시 12분)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충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이충원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제가 조례심사 소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6시 14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에 저를 추천해 주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후보자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일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위원장님을 모시고 맡겨진 일을 성심성의껏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15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는데 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 조일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것입니까? 의사일정안, 어떤 것이죠?

● 위원장 이충원

그것은 예산이고요 조례심사는 이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지금 예산 아니요?

● 위원장 이충원

조례.

● 조일환 위원

조례?

● 이충원 위원

예, 괜찮겠습니까?

● 조일환 위원

내일 오후에 되는 거죠?

● 이상일 위원

아니 일단 위원장님이 일정 설명 안하셨잖아요.

● 조일환 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이기수 위원

아까 논의된 것은 예산안 먼저 하자고.....

● 조일환 위원

글쎄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끝나고 나서 일정을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조일환 위원

아니 아까 얘기할 때 우리 이위원님께서 예산 위원장 하신다고.....

● 이기수 위원

아니예요. 예산은.....

● 조일환 위원

아, 그쪽으로. 그런데 예산부터 하고 그리고 남으면 조례는 간단하니까 말미에 가서.....

● 이기수 위원

그것은 7일로 하는 게 좋겠네요.

● 조일환 위원

그래요 7일날.

● 위원장 이충원

먼저 뽑아 주셨으니까 먼저 하죠.

● 조일환 위원

7일날 마지막으로 하지 뭐, 예산 뒤로.

7일날 못하면 8일까지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의결하면 되죠, 뭐. 조례야 뭐.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9월 7일 이틀간 두차례에 걸쳐서 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조례심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9월 7일 10시에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제119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이기수, 송진하,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9월 7일 (목요일) 15시 02분

議事日程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조례소위원회)

1.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15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충원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후 일정을 좀 당겨야 되겠고, 집행청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희가 그 시간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으로서 그저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논란은 교육위원회의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했던 일들이 혹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불이거나 뺨이 없이 사실대로만 전파되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 혈압을 재보니까 밑에 혈압이

120인데 송구스럽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 공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서는 안된다는 게 생활의 신조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성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인데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이충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지금 상정하겠습니다.

[제119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대단히 고맙고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본 안을 입안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성안하시느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또 주무과장인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로 이번 평생학습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하고, 둘째,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교육감은 평생 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

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본회의 (별첨2)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충원

지금 말씀하신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일환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 위원장 이충원

좌석 순으로.

● 조일환 위원

아, 그러세요.

● 김광수 위원

교육위원 김광수입니다.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함.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보면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연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김광수 위원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그 다음 세 번째가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네 번째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이 평생학습관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그 사회교육법 평생학습관 성격으로 충북 중앙도서관과 제천학생회관을 비롯하여 충북에 각 시·군 15개 기관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 시·군 교육청에 도서관을 운영해서 1종 내지 3종의 평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서관이나 학생회관이나 이런 것 운영에 관한 얘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렇죠. 각 시·군에.....

● 김광수 위원

민간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이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지 알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단 말이

지.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그러한 행사를 기관을 두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없애고 평생교육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평생교육법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관을 정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교육감이 어느 기관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또 마련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기관을 활용하는 영을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대상이 어디어디를.....

● 교육국장 이주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서관.....

● 김광수 위원

각 시·군의 도서관이라든가.....

● 교육국장 이주원

회관이 될 수가 있고 또 다시 만들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또 학생회관이라든가, 또 지방에 있는 지역 수련원 같은 거.

● 교육국장 이주원

도서관 뭐 이런 거.

● 김광수 위원

도서관 그렇고, 수련원 이런 것도 되고?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김광수 위원

각 학교 운동장 같은 것도 되는 것입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운동장은 그 사업 3조에 해당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3조에 있는 기능과 관련되는 그런 적합한 기관을 택해야 되겠죠.

●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그럼 평생학습관을 지정을 하는데는 어디를 지정하려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주원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면 제일 적합한 것은 중앙도서관입니다, 청주에 있는.

● 송진하 위원

그 한군데만?

● 교육국장 이주원

예, 한군데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역교육청 도서관도.

● 송진하 위원

지역교육청 도서관하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대로 줘야 합니다.

● 송진하 위원

그리고 교육감은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럼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안한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중앙에서 받아서 금년도에도 하고.....

● 교육국장 이주원

도서관 지원은 했죠. 중앙도서관 지원은 했지만 이 평생교육 차원의 지원은 이번 예산에도 참여를 좀더 우리가 예측을 해서 넣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예측을?

● 교육국장 이주원

거기 들어 있는 것으로.

● 예산담당 김용환

3,500만원

● 송진하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3,500만원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요,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요?

● 교육국장 이주원

그렇죠. 그것이 관련이 있죠.

● 송진하 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 교육국장 이주원

여기 프로그램이 여기 돼 있잖아요.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그러면 평생학습에 대한 일거리를 떠맡게 된 것인데 지금 직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생교육이 최근들어 강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도 평가에도 항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법이 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배려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붓글씨라든지 또는 뭐 꽃꽂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체계를 갖추는 것이죠 이게, 평생교육에 관한 체계를. 그래서 이것은 지금 평생교육을 하는데 도서관에 있는 직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교육도 할 수 있고, 연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주하는 그런 분들을 두어가지고 평생교육을 지금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고정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필요시에 그런 어떤 주부교실을 개설했다든지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강사분을 모셔다가 하는 외부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송진하 위원

지금 도서관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도 넉넉지 못하고 거기다 평생교육을 한다고 여기다 투자하고 한다면은 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수 위원

평생교육은 대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의 원장은 학장급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지금 주성대학에도 사회교육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교육기관이 사회단체의 평생교육에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교육 커리큘럼(Curriculum:학과)이나 교과과정을 본다면 붓글씨도 하고 회화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 외에 수지침도 하고 이제 스포츠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그런 붓글씨를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일부분 지금까지 도서관장 산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상당히 미미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은 앞으로 우리 교육계가 사회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게 고려가 돼야 되겠고, 이 무슨 도시지역에서 청주 중앙도서관에서만 하지말고 경우에 따라서 충주나 청주같은 데는 조그만 건물이라도 나중에 건물이라도 교육여건이 가능하다든지 하면 짓고 우리가 평생교육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고 아니면 그 전까지는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을 이용해가지고 한군데서만 해서는 안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학교를 빌려서라도 평생교육원을, 그 뭐

나 강사는 상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만 있어가지고서 수당만 조금 더 주고서 그 지역의 유지들을 불러가지고서 강의를 하시게끔 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대학이 우리 보통교육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서 그냥 사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는 대학들의 그 원장도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보통교육에서도 사회교육 차원에 많은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학습관이 근간에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일들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마치셨죠?

● 이기수 위원

예

● 위원장 이충원

이상일 위원님.

● 간사 이상일

예, 조금 질문이 이기수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몇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에관한운영조례가 됨으로써 이제 하게 되는데 강좌를 개설할 경우에 부족한 예산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자한테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말이에요?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간사 이상일

사전에 가령 청주의 중앙도서관에서 수지침의 어떤 대가를 초청해서 수지침 강좌를 한다, 이러면 강좌시간하고 저기 소요 경비 같은 것을 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까? 본청에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기관, 중앙도서관에서 기획했으면 중앙도서관장의 승인으로 되는 것입니까, 강좌개설 할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교육감이 승인입니다.

● 간사 이상일

일단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간사 이상일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두 번째로 이 조례가 되면 아까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을 신축도 가능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교육 차원에서 새마을 금고나 신협같은 데도 큰 데는 사육같은데서는 뭐 서예 무슨 무용, 별거 다 가르친다고. 또 행정관서에 서도 스포츠 댄스니 여러 가지 개설을 하는데 충주같은 데서는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교육청 옆에 옛날 중원군 자리를

개조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개설할 장소가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 가령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안되면 가령 예산을 조금 내서라도 그런 평생학습관 같은 것을 신축도 가능한지 한번 여쭙보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여기 이 지침에 의하면 기관에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말이에요.

● **간사 이상일**

아, 지정만 하는 것으로.

● **교육국장 이주원**

지정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만 어느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신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현재 여기는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저 마지막으로 조일환 위원님.

● **조일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언제 개정이 됐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이것이 개정이 아니라 각 시·도 사회체육과장 아니 저 담당자 회의에서 저기되어 가지고.....

● **조일환 위원**

언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3월 1일날 발효되기 전에 각.....

● **조일환 위원**

언제 각 시·도에서 전달이 됐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3월 1일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 **조일환 위원**

3월 3일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요. 발효돼 가지고 6월 30일날 회의를 했죠.

● **조일환 위원**

6월 30일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때 각 체육 우리 담당.....

● **조일환 위원**

법이 이게 폐지가 되고 이게 새 법이 평생교육법이 이것이 생겼다는 것을 6월 30일날 회의에서 전달 받으셨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 평생법이 3월 1일자로 발효가 되고요.....

● **조일환 위원**

발효가 됐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발효가 돼가지고 이에 따른 것은 교육부에서 평생계 담당 사무관을 모아놓고 그런 조례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런 것을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저는 항상 행정의 효율화를 강조합니다.

저는 이 의안을 받아보고 3월 1일부터 이게 벌써 했다는 것은 왜 했느냐입니다. 학교도 바뀌고 교육기관에 좀 빨리 해라, 이 교육법은 왜 했습니까, 이 우리 체육과도 평생이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제 는 평생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더러 요새 교수님들 깜짝 깜짝 놀래요. 정말 배울 것이 많고, 그래서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법의 정신이 뭐냐, 이 사회교육법에서 이 평생교육법으로 왜 바뀌었느냐, 상당한 법의 정신, 법의 취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느 기관을 도서관 이런 정도는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어느 읍이라든지 정같은 데도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씨름이 있어요. 배구조직 예를 들면, 9시에 문을 딱 닫아요. 그럼 따닥 하면은 9시 30까지 갑니다. 그래 학교입니다. 학교 강당에 불을 켜놓고 해요. 그리고는 10시 30까지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고는 문 딱 닫고, 자기 중심 자기 학교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그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고 학교하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운동장에 무엇을 하느냐, 전기볼 간이 이게 다 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테니스도 하고 야구도 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어느 기관의 하나 둘 특정기관 보다는 평생교육을 일반화 해야 된다, 일반화 해야

된다. 그런 법의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육청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언제 밤에 와서 관리 못합니다. 또 서울이나 어느 충주같은 데도 보면 조기축구팀이 어느 학교하고 아주 잘돼 있어요. 축구부도 도와주고..... 아주 운동장을 항상 깨끗하게 하면서 아주 공도 차고 말입니다. 자기 학교처럼 말이야. 이게 본래의 평생교육의 취지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돈만 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1회성이나 2회성 타령에 끝나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에 행정교육은 한걸음 나가서 사회체육, 사회의 씨름하고 연결해서 여기 헬스 하는 사람이 있다 말여, 배드민턴 있다, 강당하고 이렇게 해서 자 당신이 식전에 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배드민턴 배울 사람을 원한다든지 또 이 체육에는 없습니다마는 평생 학습 컴퓨터 같은 것도 시설을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맞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기획을 한 게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금 이것을 조례안으로다가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우리가 각급 학교에 강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3월 1일날 개정된 게 지금 9월달에 올라왔어요. 6개월 걸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하고 하려면 일선에 가서 언제 하겠습니까, 언제. 저는 바람직하기는 이런 조례야 당연히 통과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의결됨과 동시에 일선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행정의 효율화다, 이것을 저는 강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다고 그랬습니까?

● 예산담당사무관 김용환

3,500만원요.

● 조일환 위원

아,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죄송합니다 못챙겨.....

● 교육국장 이주원

국고로 내려와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국고로다가! 그러면 과거 예산은 없습니까, 기편성 된 것은 없습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과거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온 것이.....

● 조일환 위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평생교육관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 조일환 위원

아, 글썄. 그러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관 운영에 대한 지원이 3,500만원.

● 조일환 위원

3,500. 그리고 평생교육에 소요되는 우리가 사용되는 가용재산은 과거에 없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과거에는 평생교육사회 속에.....

● 조일환 위원

사회체육 거기에는 조금 있죠?

● 교육국장 이주원

거기 교육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이 3,500이라는 예산을 우리 전도에 퍼야 뭐가 되겠습니까? 뭐 몇 군데만 지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장소 지정하는 것을 면 단위에도, 면 단위에도 제가 볼 때.....

● 교육국장 이주원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 조일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을 운영하는 예산,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 평생 법의 정신을 한다면은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은 거

기는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어디 도시 지방이나 가능합니다마는 누구는 평생교육의 혜택을 보고 누구는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이 그래서 지정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으로 가능한 시설이겠죠. 그렇죠? 꼭 뭐 도서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교육기관이 대담하게 개방해서 평생교육이 항상 지역사회의 학교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리고요 우리 조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계시고 저기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500만원씩 우리 어디에다가 상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교육청에 나눠졌고요.....

● 조일환 위원

나눠 줬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나눠 줬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지금 꼭 체육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붓글씨라든지 거기에 대한 종이접기라든지 순수한 그런 것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법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3월 3일자로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상정하는 기간은 약 한 1개월 정도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번에 모 초등학교에서도 방학동안에 노인네들 65세인 노인네들을 상대로 해서 15명 컴퓨터 교육을 했어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65세 노인네들도. 바로 이것이 평생교육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정말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이 법의 정신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어느 도서관이라든가 뭐 아주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육기관이 과감하게 우리 평생교육에 참여할 때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도 학교에 전파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 저도 한마디 해야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루종일 얘기할 양이 있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그래서 낮에 못하면 꿈에서라도 얘기를 한다든데 원체 낮에 하도 지껄여 놔서 저는 꿈에도 안나오겠습니다. 오늘 양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겠어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
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
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을 성안하시고 관
심을 가져주신 행정 맡으신 선생님들 대단
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아
울러서 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다 마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이기수, 송진하,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4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 본회의 (별첨2)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9. .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위원 송진하 

위원 이기수 

위원 조일환 

(별첨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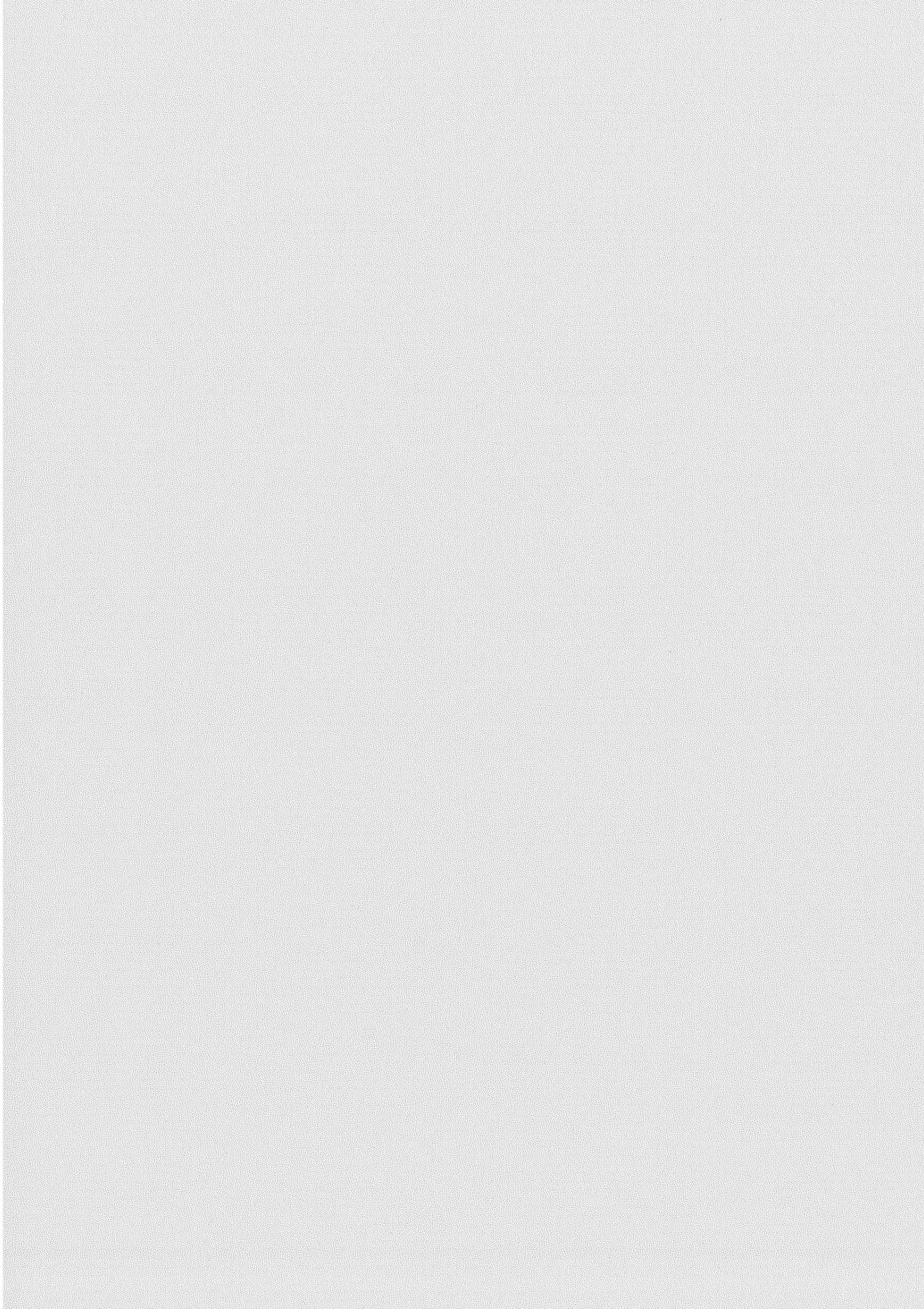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9. 5. (화) 16:0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0. 9. 7. (목) 14: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및 의결) ※ 폐회	

第11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3
II.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7
III.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95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115
V. 별책부록	
▶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9월 5일 (화요일) 16시 19분

議事日程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19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6시 20분)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후보자를 뽑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앞은 대로 해 주시죠 뭐

● 이기수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송진하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6시 21분)

● 위원장 송진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 이기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예산·결산 간사로 선출된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22분)

●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3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24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송진하,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9월 6일 (수요일) 10시 03분

議事日程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예

● 조일환 위원

어저께 저희 위원회의 본회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어저께 일부 보도에서 마치 감정이 섞여서 이런 쪽으로 됐다. 또 그렇게 비쳤을 지도 모릅니다. 위원이라면 적어도 공인이라면 어떤 사전에 어떤 예

상, 말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잠재 의식을 가져도 안되고 또 감정에 치우쳐서 의결이나 판단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전혀 정 말 누구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어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오늘 소위원회에 부교육감께서 참석을 해 달라 하고 전체 위원이 어저께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진하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오늘 소위원회에 나오시도록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행청에서, 의사국에서.....

● 김광수 위원

우리 의사국에서 무슨 연락 못받았어요?

● 위원장 송진하

국장님 답변하세요.

● 의사국장 김성기

예, 집행청에는 연락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의회를 가든지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부교육감이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늘 아침에 소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 의사국장 김성기

집행청에서는.....

● 이충원 위원

아니 이거 그 사실을 알으셨으면 소위원회 위원장님에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위원회 출석·답변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대개 본청 같으면 국·과장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사뭇 답변을 해 왔습니다.

또,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정식 본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한 심사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임의 출석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식 출석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나 도청 어디를 봐도 부기관장까지 소위원회에 나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산심의를 하는데 저희들 국·과장들로 충분히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과장들이 나왔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저,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송진하

어제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될 걸로 아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어제 저희한테 구두로 전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 답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위원장으로서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없는 선례를 만

들지 않고 그냥 저희가 참 답변이 부족하면 모를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왔으니까 저희 답변을 들어 주시면.....

●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국장님, 이국장님. 부교육감이 여기 참석을 해야 된다 안된다, 타기관에는 전례가 이렇다 이런 판단은 위원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못 왔다고, 참석을 못하겠다 해서 여기에 제출하면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또 위원님 의견대로 여기서 처리할 것이지 국장님께서 전례가 이렇고, 누가 답변해도 되고, 그런 것의 판단은 집행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장께서 위원에게 충분한 의견을 말씀하시게 하고 또 위원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적법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글쎄 어제 의사국에서 구두 통보를 받고 저희들도 구두 답변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왜.....

● 이충원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여럿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와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전달을 했고 그것을 구두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더라고 하면 국장님이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께 상의말씀을 드렸었다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연락받으신 일 없습니까?

● 위원장 송진하

없습니다.

●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잠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이것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권위가 이래서 됩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실까 하는 것을 다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식으로 제가 제의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송진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교육감 출석문제로 잠시 정회를 했는데 오늘 소위원회는 부교육감 출석을 사전에 절차를 거쳐 통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 참 조 :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

요사업 설명자료 : (별책1)

● 위원장 송진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사정에 의해서 이충원 위원님, 다음에 이기수 위원님,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다음에 이상일 위원님, 다음에 조일환 위원님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예

● 김광수 위원

이 세입·세출 자체에 방대하기 때문에 먼저 세입부문을 검토하고,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세출분야로 들어가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분이 세입 보고 세출까지 전부 이렇게 질문하다보면 너무 시간이 한분한테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세입 먼저 전부 검토하고 다음에 세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 이기수 위원

.....(청불).....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래도 세입부터도 무슨 세입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서 그 다음에 세출을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 위원장 송진하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겠어요?

● 이상일 위원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송진하

예

● 이상일 위원

아무리 방대하다고 해도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죠, 본 질문이 20분이죠, 그리고 추가질문 5분이고, 응?

● 의사담당 유근영

소위원회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소위원회는 시간제한이 없는 줄 알아요. 본회의의 질문이 20분이지 소위원회 예산같은 거 심의하는데 20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얘기하다 덮어두는 것이지 어떻게 질문을 해요.

● 위원장 송진하

규정이 시간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겠어요? 세입·세출 나눠서 하는 게 좋겠어요 나눠서 하는 게.....

좀 오늘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먼저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 조일환 위원

그런데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데 조금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전

체적으로 저희가 공통으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몇가지 이것을 해 봤는데 맨 나중에 끝나신 다음에 제가 그냥 하는 것 보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전체적인 공통사항 이것을 먼저 집행청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먼저 받아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공통사항요?

● 조일환 위원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추경의 지침,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간략하게 알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소모품은 안된다든가, 시설은 안된다든가, 교육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나 이것을 예산에 집어넣어 보라 하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니까, 예를 들면.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안을 제출해 봅니다.

(이기수위원 “제가” 하고 거수하여 발언신청)

● 위원장 송진하

예

● 간사 이기수

지금 두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먼저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하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세입·세출을 나눠서 질의를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계시는데 김광수 위원님 어떠세요?

● 김광수 위원

할 수 없는 거지 뭐.

● 위원장 송진하

그러면 세입·세출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본적인 사항,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 이충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있느냐 없느냐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하시도록, 이런 뭐가 있으시면 들어보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냥 일괄해서 지나가면서 묻게 되는 거죠 뭐.

● 조일환 위원

글쎄 위원님들이 다 계신지 모르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사정에 따라서 자리를 잠시 비울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 이기수 위원

아니 저 같이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세입·세출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튀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테니까 그냥 세입·세출 해 가지고 통과를 해 가지고 순서대로 죽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질의를 하는 것도 뭐 참고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몇 안되니까, 몇 안되니까, 세입·세출을 같이 하는 거니까 세입·세출을 동시에 하는 거니까 죽 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좋겠어요? 조위원님.

● 조일환 위원

어떻게요?

● 위원장 송진하

세입·세출을 동시에 하는 거니까.....

● 조일환 위원

네, 네. 좋으신 대로 하세요.

● 김광수 위원

동의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뭐.

● 조일환 위원

그럼 하세요.

● 위원장 송진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여쭙보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에요. 25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7. 우수 시·도교육청 지원사업” 이것은 아마 국고에서 나오는 거죠? 과장님.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배분현황을 조금, 우수 시·도교육청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는 얼마만큼 돈을 받아오고 다른 도에는 얼마만큼 받아왔나 좀 필요하고, 상당히 많이 타도보다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등했기 때문에, 이래서 시·군 및 그 얻어 온 것 시·군 및 일선학교에 이게 배분 됐나, 배분됐으면 이것은 어느정도 배분됐나?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충원 위원

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우수 시·도 정보화 사업 쪽인데요 저희들이 각 도별로 따로따로 주기 때문에 타도에 대해서 내용을 모릅니다.

● 이충원 위원

타 도는 알고 있는데. 전북 가니까 벌써

다 알던데. 다 같이 가지고 있던데요. 거기
는 거기대로 제일 먼저 많이 얻어왔다고 그
러니까.....

● 김광수 위원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25쪽 7항이죠?

● 이충원 위원

네, 네.

그간에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
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보편은요 “충북학생수
련원 건립” 이래서 약 50억정도 얻어 오셨
는데, 이거 혼동을 합니다, 제가. 이게 충
북학생수련원건립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 낼 때 서해수련원 건립한다고 내
신 것입니까, 이것을 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충북학생수련원 건립으
로 교육부에 예산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
다시피 대천에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해 놓
은 데가 있어서 그쪽에 서해수련원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래서 이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교육부에다. 저희들이 위치변경
이라든지 내용을 변경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충원 위원

변경 승인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처음 했을 때 불가하는 것
하고, 그런데 내 이거 아침부터 요구를 했
거든요. 그래 복사본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이왕 해 주시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러니까 그 건립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하는 감사원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권고사항
이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충
북만은 내용적으로 허락을 한 그런 사항입
니다.

● 이충원 위원

하여튼 그 온 공문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전해주십시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수입에 대해서 얘기 한 것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이충원 위원

참 많이 얻어오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수
입에 대해서는 말씀없고 저 지출분야에 대
해서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지출분야에 총무과 소관을 봐 주시기 바
랍니다. 총무과 소관, 104페이지 좀 봐 주
세요. 지금 보면 업무용 차량 의전용이라고
그랬는데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의
전용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게
내구연한이 저 됩니까, 얼마나 됐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저희 의전용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의전
용은 없고 업무용 차량으로다가 아반떼

9100호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고 어디가 의견용을 다 가지고 있고 유독 저희만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필요에 의해서 사야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도 있으니까 사야되겠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사야 되겠다 이겁니다.

● 이충원 위원

이렇게 고가의 것을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상당히 상류일 것 같은데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지금 학교버스 시·군에서 사달라고 뭐 아우성들인데 그것보다 이것이 더 급하다 이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들 학교에서 요구하는 통학버스는 100% 다 사 주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안 사준 데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한 9,000억, 8,000 한 348억, 그렇죠, 얼마예요?

● 기획관리국장 김진성

1,120억입니다.

● 이충원 위원

1,120억 아, 미안합니다.

기체가 이번 예산 올라가면 총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에 하는 것 하고 하면, 이것이 다 통과됐을 때.

● 기획관리국장 김진성

현재까지 전액입니다. 저희들이 기체를 계상한 총액입니다. 이번에 금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보는 면에서 다르겠습니까마는 105페이지에 보면 청사보수공사 해서 16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15억 정도가. 15억 6,000. 이거 어느 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저희 본청 이 본관이 '79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균열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외벽 타일이 오래돼 가지고 자꾸 떨어지고 밑에 그 차 있는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서편이 많이 떨어지고 땡 돌려가면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도에도 이 외벽을 완전히 고치는 그런 예산을 세웠다 그때 마침 IMF가 와 가지고 실행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덜 급하다 해 가지고 우리 자체로다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겨울

을 나다보고 하면 점점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외벽을 전체를 바꿀려고 하는 그런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제 생각으로는 사실 본청 청사 확장하는 것이 더 급할까, 이래서 어쭙보는 것이고,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기자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실이 지금 거의 못쓰게 된 것이 27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따 그럼 정확한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확장을 해서 분철을 해서 바꿔 말하면 근사하게 했을 때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과연 참 교육청 번쩍하다 이렇게 볼 것인가, 참 돈도 많다 이렇게 볼 것인가, 그게 급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통과를 시켰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직 조정수당만 죽 눈에 띄이네요. 교원 조정수당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113페이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교원 조정수당은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좀 부족해서 넣은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럼 바꿔 얘기하면 본 예산을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교원 인건비는 과다책정이 된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년과정에서 교호봉자가 나가는 그런 것이 많이 차액이 남고, 또 저희들이 봉급 책정할 때에 전 교원들을 다 보수 호봉을 통계를 내서 그 가운데 호봉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그런데 대한 기준 호봉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충원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잉여금이 남더라.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럼 뭐 정부에서 교원들 무조건적으로 정년이하 한 것이 이런 예를 보면 다행이네. 저는 그 반대로 알고 있는데. 별 예산 절약이 안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명퇴수당 주는 것이 오히려 이쪽에 수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경제사정 곤란한 자녀들에게 학비지원인데요, 119페이지. 그렇죠 선생님? 119페이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삭감을 해서 고등학교로 바꾸는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22억7,000만원 감액됐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분으로 올려서 고등학교는 부족하고 중학교는 남아서 과목 바꾸는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로 올리는 바람에 이런 예산이 나왔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이충원 위원

이것도 참 저도 조그만 집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매년 지붕이 새서 걱정인데 시설과 분야인데 1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매년 되풀이 되는 지붕 방수입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학교가 지붕방수인데 계속 그것도 매년 올라와요. 금년에도 26실, 또 이게 뭇니까 9실, 연결통로 이래 가지고 죽 나오는데 이게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이 지붕방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사를 할 적에 제대로 되어 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새지 말아야 되는데

뭐 참 학교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수문제가 잘 안돼 가지고 지은지 몇 년 안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가 새 가지고 다시 고치는데 PT방수나 그 액체방수를 하면은 4년 내지 5년 가면 또 새고 또 새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는데 앞으로 하는 공사는 참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참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항목에 “서해 해양수련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고해서 총 금액인 것 같은데 138억, 약 140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 또 한번 제가 구체적인 것 그것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충 90억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서 여기다 넣으셨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재산형성은 이쪽 세입에서 재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돼 가지고 그 잉여금 넘어온 것 있습니다. 결국 예비비에 들어가 있던 것 150억을 꺼내서 시설비 쪽하고 이쪽 시설비하고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지어야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얻어온 참 엄청난 돈인데 50억만 가지고서 다음에 또 얻어 올 수 없습니까? 정말 이 90억이라는 돈이 우리는 지금 이 많은 숫자를 8,000억을 주무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현장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금년에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추경까지 해 가며, 저는 50억을 얻어 왔다고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내년에 계속 공사를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지금 해봐야 금년에 대충 보니까 두달을 못했어요. 한달 한 열흘쯤 한 것인데 여기다 또 17명의 직원을, 물론 압니다. 교체로다가 교대 근무를 하고 새로이 그 뭇니까 직원을 파견하는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얼마나 소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서 교육을 도대체 못하겠다고 하는 판에 지금 17명의 작은 수치지마는 그렇게 운번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장에 보내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어 보고, 그 이외에서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드는 경비가 많은데 서해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지방비를 여기다가 100억 정도를 또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따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지금 8억만 가지만 된다는 데가 수없이 많고 그 추운데 아이들이 떨어가지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번쩍 지어놓고서 더군다나 충청남도예다가,

이것은 조금, 좋습니다. 여하간 얻어 왔다고 하니까 이것을 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이따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재원 관계 더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충원 위원

예, 아까 재원은 말씀 안하셔서.....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98년도에 계획할 적에는 교육부에서 100억 정도를 얻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2년 가까이. 그런데 IMF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이 특별교부금 산정기준이 그 전보다도 상당히 내려가서 산정기준이 내려가서 100억을 얻어오려고 했던 것을 여러 가지 참 노력을 많이 한 것이 50억 정도밖에 못 얻어 왔습니다. 강당같은 것을 예를 들으면 강당 특별교부금이 '98년도 이전에는 IMF 이전에는 한 8억 내지 11억까지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많이 줘야 6억8,000밖에 안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교부금 산출기준을 줄였습니다. 심지어 금년도 음성중학교 다목적 교실로 얻어 온 것은 학교가 학생수 적다고 그래가지고 5억도 안되는 4억9,000밖에 안줬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교육부에서 더 얻어온다 하는 기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충원 위원

불가능하면 못하는 거죠. 이것을 정말 현장이 그렇게 어려운데 '99년도 통·폐합 교육여건개선비 차익금이 약 100억 되지 않습니까? 99억.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그렇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 차익금은 교육부에서 앞으로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 저 명퇴금하고 통·폐합의 차익금은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충원 위원

자꾸 되풀이 되는 말입니다마는 나라 빛도 빛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발전 못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총북.....

● 이충원 위원

주는 거니까 받아오는 것이고 피차 담보를 스는 것은 국가에서 지는 거니까 저는 그런 발상은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정말 국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요 이것은 나는 조금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비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가족끼리 얘기를 하십시오. 1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39페이지. “사업성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도서관에 800만원 주셨는데 참 내가 얘기하기도 거북하고 이 독서교육행사, 문화학교운영, 평생학습관운영, 작품종합전시운영을 할라면 이게 벌써 본 예산 때 해야지 앞으로 석달밖에 안남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아, 이게 독서교육행사가 나와야 되겠고, 문화학교운영을 해야겠고 이런 게 누가 보면요 잘못하면 예산 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독서운영추진위원회도 두 번인데 이미 작년, 금년 초에 이것이 결정이 돼야지 조금 그러네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람보고 주는 듯한 이런 게 들어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 저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이 나와 있는데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할까요?

● 이충원 위원

예, 설명하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보다 사정을 다 아니까요.

●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문승호

문승호입니다.

이 사업성격을 사실 낭비성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 이충원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문승호

예. 금년도에 한국교육기관에서 지역평생 교육정보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예년에 없던 행사로 추가해 가지고 본 도서관의 독서교육행사라든지, 문화학교사업인 사진강좌, 비디오 강좌, 수지침 강좌, 청소년 교양강좌로 우수영화 상영,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은 각종 취미교실, 또 서예, 목화, 스텐실, 킬트, 줌 낫선 용어입니다만 염색교실, 이것을 주민들한테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분들에게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이번에 한번.....

● 이충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타 지금 부설기관이라고 그러니까 뭐 단 재교육원에 이런 직속기관 여기에는 전혀 추경예산이 없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요구가 없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형평성이 괜찮습니까? 우리 사업을 얼마나 하는데 거기는 사람 잘 갔기 때문에 주는 거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예산요구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1회 추경 있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되고 여기만 특별히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3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지방체에 대해서 참 저는 걱정이 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빗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인데 349페이지 정확한 것이 1,125억이군요. 그렇죠?

(관계관 석에서 “예”하고 말함)

1,125억이 되는데 우리 도로 봐 가지고서 뭐 내가 타 도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매년 갚아가는 단돈 서푼이라도 갚아가는 예산이 나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것이니까 받는 거고 그냥 그대로 국가담보 선 것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갚을 테지, 이러면 참 우리 교육계뿐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 대단히 어렵다. 하기가 뭐 피차 뭐도 빼 먹는다는 식이지만은 향후에 이 상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어떻게 이것을 갚으실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98년도 명퇴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그 기채 승인을 해 주고, 기채를 권장할 적에 이것은 명퇴를 100% 다 시켜라, 그러면서 돈이 없는 시·도에는 기채 승인을 해 주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 애초에 그 계획서를 교육부를 통

해서 기획예산처까지 가 가지고 다 거기서 이것이 재특용자 가져올 때 다 협의가 되고 다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 됐고, 2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원해 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되도록이면 빨리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육부에서도 그것은 뭐 공인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제가 또 청원합니다마는 사실 뺀을 데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믿는 자리가 있어서 그렇고, 국가라는 믿는 자리가 있어서 그렇고, 또 여기서는 기채하는 것 승인할 때야 다 값을 것 같으니까 승인을 한 것이지만은 저희가 보기에 막대한 이자가 나 갑니다, 막대한 이자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하면 빚을 덜 쓰느냐 하고 하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가느냐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단돈 서퍽이라도 갚아 나가는 뭘, 참 이자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간 걱정이 돼서 제가 작은 자리라도 앉았지만은 대단히 걱정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지금 보게 되면 거기 8페이지 있는데요 저 과장님,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8페이지 보면은 “교원편의시설 확충” 이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억700만원인가 2실, 어디다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대요 이 안에. 어디 편의시설 하는 겁니까, 교원편의시설 확충 1억7,000만원?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편의시설을.....

● 이충원 위원

학교도 괜찮고, 잠깐 한 1분만. 시간이 지나면 찾으시겠죠. 시간이 자꾸 가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청원교육청이랍니다.

● 이충원 위원

청원교육청이에요, 과장님?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흥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흥무인데요 저희들이 가덕중 학교가 제1회 추경 때 17억 정도가 예산이 돼서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교원 편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교원 편의실하고 기초 파일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덕중학교가 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기초 파일비?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흥무

예, 편의실하고.....

● 이충원 위원

할려고?

● 청원교육청 관리과장 이흥무

예, 예.

● 이충원 위원

아, 저는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 편의시설은 이것밖에 안되나, 그래서 여쭙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비율이, 자영농 퇴사비율이 높는데 그 사유가 뭐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거기 감소사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학년들 2학기가 되면 현장실습을 가게 됩니다. 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잘 입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알았습니다. 뭐 그쪽 사정은 과장님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별 예산편성내역 보니까 청주를 제외한 기타 피교육청에서 평균 75%를 감했어요, 보니까. 충주가 79%, 제천 죽, 여기 89

페이지 경제사정 곤란한 학비지원 이쪽 제가 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우선별로 혹시 그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 조금 과다하게 하라니까 이것 해 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여기 들어올 학생들이 많은데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내들이 이래서 한 것인가, 뭐 그런 것을 감액했거든요, 전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게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대 50, 국고 대 지방비 50대 50 사업인데 당초에 교육부에서 그 지난해 실적에 비해서 그 맞춰가지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원아들 찾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와 지방비 50대 50으로 지난해 실적에서 세웠는데 금년도에 지급하는 기준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난해는 그 보험료, 의료보험료 얼마, 이런 기준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가구당 수입이 얼마, 뭐 이런 정도로 제한이 돼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신청자수가 급격하게 감이 됐습니다. 결론은 자기가 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타 가서 돈이 남는 돈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이따가 또 말씀드리죠.

이제 103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도 조금 물어봤는데 서해수련원 시설입니다. 이

거 예산계장님이 오셨나, 시설계장님이 오셨나 이것 좀 어지럽습니다. 몇가지를 자꾸 주어가지고서. 나오셨네요.

(관계관 “예” 하고 말함)

이것이 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가져오신 거죠, 한번 얼른 봐 주세요, 그게 맞죠, 세가지기 때문에, 맞죠?

건축에 대해서 조금 여쭙보겠습니다. 문의한이 묻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토목 공사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파일같은 거요 이런 것이 전혀 안들어 있어요. 파일 박는 거, 거 바닷가라 박아야 할텐데?

(관계관 석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말함)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까?

(관계관 석에서 “예”하고 말함)

그래서 금액이 늘은 거군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아, 글썽 금액이 조금 늘어서, 예 알았습니다.

상가운영을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저희가 상가를 애초부터 거기다가 지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 위원님들도 가 보셨습니까마는 뒤편하고 앞편하고 이 고저 차이가 있습니다. 한 3m 차이가 되는데 이것을 어차피 그 고저를 뒤쪽에다 맞추려고 그러면 앞쪽에 옹벽을 3m

이상 쳐야 됩니다. 그러면 옹벽을 칠 바에야 그쪽이 상가쪽이니까 조금 더 상가비를 들여서 상가조성을 하면은 그것을 전부 임대로다가 해 가지고 저희가 수익도 올리고, 이게 상가 지역에 같이 상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임대하겠나?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예. 직영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충원 위원

대체적으로 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충북학생수련원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것인가, 더구나 충남지역에. 지방비를 거기다가 95억원을 투입을 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비를 본청 보수를 정말 요새는 가지고 있어도 없다고, 옆집 사람이 굶어서 나도 아침 안먹었다고 하는 판에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현재 죽 보다 보니까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도심지역 교실이 부족해서 지금 비상이 내려 있습니다. 지금. 도심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천억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상환액이 1,120억, 금년도 예산에서 이자만 해도 금년 말까지 63,4억 됩니다.

빛을 진 처지에서 과연 이런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따라서 부채상환문제는 심각합니다. 국가에서 보증을 한 기채이 때문에 결국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달은 것은 보증한 국가인데 내가 할 것이냐 하는 뱃심은 정말 비교육적이고 비애국적입니다. 개인 채무든, 나라 채무든 채무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고 교육에서마저 이를 방관한다면 나라의 장래는 정말 심각합니다.

세 번째, 노후교실문제입니다.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뭐 잘 아십니다. 각급 학교에 PC 업그레이드된 교육현장의 교육시설에 최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우리 교육입니다. 이것을 머리에다 좀 두셔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교육 복지예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원군에 그저 2개 교실 짓는 것으로써 과연 이게 교원을 위한 복지시설에 투입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가지고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급 학교 강당은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좀 제거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예산상에 지금 말씀을 드려서 자꾸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천 해양수련원 135억4,000만원 전액 이것을 이번 기회에 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고보조비를 50억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얻어왔는데 해수욕장에 수련원을 건립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저는 다른 교육시설을 위해 전용토록 해야 하며 보다 교육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얻어온 노력만큼 힘을 기울인다는 전용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엄청나게 신경써서 얻어온 것 내가 압니다. 참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설령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돈이 외국에서 얻은 돈도 아니에요. 반납하면 외국에 가는 돈입니까? 어떻게 얻어온 돈인데 이것을 반납하냐 할 것이지만 이러한 발상이 바로 교육에 악영향을 줍니다. 1년에 1개월 사용이며, 극히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하여 150억이나 투입하여 꼭 얻어온 돈이니 사용해야 되겠다. 정말 다른 시설보다 이 분야에 긴급히 투자해야 할 교육시설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교육가족은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시설을 위한 불허한 일을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나라에 돈 많습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교육적인 투자가치를 생각하고 쥐야지 낚은 교실이 무려 625개나 됩니다. 금년에 겨우

127개 68억1,900만원, 제가 신문에 본 것입니다. 그것 고작인데 과연 그 먼 더욱이 타 지역인 대천해수욕장에 이런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17명이라는 행정직원을 파견해야 되고, 물론, 증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17명을 차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인원 차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많은 업무에 시달려 학교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잡무를 위하여 순회 행정보조원이라도 시키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발전을 위해서도 대천에다가 더 이상 투자를 해서는 안됩니다. 왜 꼭 대천입니까? 물가라고 하면 충북에 충주호반도 있고, 단양도 있고, 제천도 있고, 영동도 있지 않습니까?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하면 속리산도 있고, 뭐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본청보수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15억6,812만원은 전액 삭감하기보다는 자진 이것도, 나라의 형편이나 우리도 행정청의 사치스러운 외벽 치장을 할 때가 아닙니다. 강당이 없어 학생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강당이 없어 그 추운 허허벌판에 졸업식과 입학식을 한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외무성 건물은 거의 50년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외교관들이 무수히 드는 곳이지만 허술한 건물로 새로 지

어야 한다는 여론이지만 그대로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느 나라의 대학의 책임자의 방이 대학에 서는 제일 허름한 장소에, 그리고 허름한 건물입니다. 본청 보수비는 집행청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는 철회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적인 자세입니다. 타일이 오래되어 떨어지면 그것만 새로 붙이고, 얼룩덜룩하여 보기 싫어도 그냥 견디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일 때 교육현장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이 현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추경까지 해 가면서 교육청에 사치스러운 외장을 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 이런 데도 참고 견디지 않느냐” 이럴 때에 사표가 됩니다. 이미 금년 본 예산에도 교육청 관사 수리비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애기도 또 들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재산유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심의할 때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위원입니다. 교육예산은 우선적으로 교육현장에 직접 교육투자에 배정해야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기타 뭐 좋은 안건이 있는데 저는 두가지는 제가 여러 가지로 봐도 이것은 “아, 그것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충북교육 정말 올바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 질의말씀을 끝내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승진하

답변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크게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수련원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이미 '98년도에 본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설립계획안을 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또 충북 학생들이 바다를 참 가고싶어 하고 그쪽에 충북수련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설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미 돼서 그 뒤에 바로 추진하다가 IMF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오지 못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설립 타당성이나 이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이것을 타당하다, 안하다, 아니면 뭐 여기 해서는 안된다 하시는 말씀은 조금 저희 교육현장에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시설이고, 바다가 있는 수련원을 시설하려고 바다 쪽으로 가는 것을 충남이니까 안된다, 충북의 어디다가 호수나 산에다가 하면 안되냐 하시는 말씀은 조금 애초에 설립취지하고 안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 교육부에서 불허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 서울교육청 감사 때 감사원에서 대전지역에 서울서도 짓고, 충남에서 이미 지어 있고, 서울은 이미 지었습니다. 지금 완

공 다 되었습니다. 대전, 충북이 들어간다고 그러니 이것을 통합해서, 그 자체가 나쁜게 아니다. 학생들이 바다에 가고 거기에 가야 되니까 짓되 이것을 개별적으로 짓지 말고 좀 통합해서 짓거나 같이 기왕에 진것을 같이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 충남하고 대전하고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동사용 방법을 많이 몇차 했지만은 그쪽에서 불가하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후에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도 짓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아까 서류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서해수련원만은 꼭.....

● 이충원 위원

어느 게 더 국장님, 가만있어요. 어느 것이 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 이충원 위원

조금 있다, 조금 있다가.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이충원 위원

어느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대전에 같다 한달 열흘정도 일부를 훈련시키는 것 하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한달 열흘이 아닙니다. 이것은.....

● 이충원 위원

한번 잡읍시다. 석달이라도 마찬가지로
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1년 열두달 현지 훈련할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 위원장 송진하

예, 말씀하세요.

● 조일환 위원

제2기 때에 의결이 된 게 사실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예. '98년.

● 조일환 위원

그런데 그때에 국고보조를 얼마를 확보했
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확보했다고 말씀 안드리고 앞으로.....

● 조일환 위원

확약을 받았다, 확약을 받았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조일환 위원

거의 다. 국고를 확약을 받았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마 그 당시에 100억 가까이 받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100억을 받았다, 100억을 응?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조일환 위원

그 당시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98년도 의결한 서류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그때.....

● 조일환 위원

아니, 글썄 주세요, 의결서류.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여기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제는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야, 상황이.

이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0억을 우리가
받아와서 100억을 우리 자체 예산을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분명히
100억을 교육부에서 확답을 했다, 확답을
했다. 그래 승인하자, 우리 김광수 위원님
계셨습니다. 뭐 우리 이기수 위원님 계셨습
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이것을
승인한 것을 이제 와서 왜 이것을 재론하느
냐, 이렇게 말한다면.....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 조일환 위원

아, 글썄 필요성은 좋습니다마는 실효성
을 강조하셔야지 과거에 해 주었는데 과거
하고 약속이 달라졌잖아요 현황이, 그러니
까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감안하시도록 제
가.....

● 이충원 위원

예.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현장을 정말 보셔야 합니다. 거기 가서 해수욕장 가 가지고서 좋습니다. 1년 내내 훈련받는다 하더라도 그 150억을 들여서 거기다 현장에 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교육자료를 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한번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왜 꼭 바다를 가야 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위원님 말씀은 학생들이 거기 가는 것을 뭐 참 교육적으로도 필요없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 이충원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없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우위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물론 우선순위적인 것을 가늠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3년전에.....

● 이충원 위원

아, 필요하죠. 뭐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거기다가 저 뭐니까 덩그렇게 기와집도 짓고 다 하면 좋죠. 그거야 뭐 보십시오. 외국에 가보면은 학교 시설중에서 참 교원들이 가서 1년 열두달 교대로 하면 좋죠.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 거기다가

그것을 지을 필요가..... 나는 그래서 추후에 다만 50억만 투자해라 이거여. 지방 빚 얻어 가지고서 거기다가 그래 빚 얻는 처지에 거기다 갖다 그래 그 건물을 지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했다 그랬을 때 말이죠, 아 빚 얻어 가지고서 빚지는 주제에 이 학생들 수련을 위해서 저 대천에다 지었다, 그랬을 때, 빚을 얻더라도 그거 해야지, 글썄 저는 잘 모르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리고 아주 청사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사도 그냥 건디면 뭐 건딜 수도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도 또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저 위험성 관계, 복축을 보면 옛날에 저 방음이라든지 방한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알루미늄 단창으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겨울되면 여러 가지 열손실이 있고 그런 게 많습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몇년차 걸렸던 것을 한번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이충원 위원

그것도 뭐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죠. 거기 뭐 돈 많이 들여서 짓는 거 하고 그런 거 내가 나쁘다 하는 것보다도 어느 게 더 우리가, 아 지금 학교 얘기대로 이동수업하는데 교실이 부족하다, 세 학교에 지금 하나의 강당만 지어 달래도 못 짓고 있잖아요. 세 학교에 하나의 강당을 지어다 고, 그러면 세 학교가 쓰겠다, 그것도 한

10억 정도 투입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주면서 여기다 갖다 막 근사하게 했을 때에 지나가면서 그러겠죠. 아, 좋다는 하지만은 정말로 교육가족이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하게 볼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좋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게 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다시 뜯고, 다시 짓거나 호화로다가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그래도 17억을 껍데기에다 붙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내용이 틀립니다. 껍데기도 있지만은 안에 내용도.....

● 이충원 위원

물론 있어요. 제가 그거 봤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도 고치고 뭐 했는데 그런 거나 내부적인 거나 어떤 거나 하지 이 외장을 이렇게.

● 위원장 송진하

더 이상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이 전혀 그것이 그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교육 못지않게 인성교육이나 이 체험교육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짓는 건데 40억짜리 쪼가리 건

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십년 앞을 바라보고 한번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강당이나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안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을 우리가 다 해 나가면서 학생수련원 짓는 다는 것을 우리들이 손댔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충분히 나름대로의 어떤 인성적으로 호연지기한 기상도 기르고 하는 이런 충북이 내륙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특관계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신 것이 옳은 말씀인데 지방으로 봐서 국고에서 준다는 것을 지방비로 갹았을 때 우리 충청북도만이, 타 도는 다 국고가 와서 갹는데 충청북도만 갹았다, 그러면 충북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점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진하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12시까지는 약 15분 남았는데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 간사 이기수

아, 저까지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송진하

예?

● 간사 이기수

저 한 15분 하니까 저까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고.....

● **위원장 송진하**

그러겠어요?

● **간사 이기수**

예

● **이상일 위원**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그러면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히 이충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리고 잘 모르고 질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해하세요.

2페이지에 그 유치원.....

● **조일환 위원**

위원님, 이거 설명자료?

● **간사 이기수**

예, 설명자료. 2페이지에 예산회계에서 유치원 쪽에 지원되는 것이 줄었는데 그 2페이지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가정이 어려운 유치원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기준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 타가는 수령할 수 있는 학생이 줄어서 자원이 남는 것입니다, 이게.

● **간사 이기수**

다른 데 시설투자나 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 **간사 이기수**

아까 이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중에 나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 2001년에 1학년, 2년 이렇게 해서 이거 도시지역에 이동식 수업을 하는 바람에 대학교마냥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교실이 태부족이라서?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는데 충청북도는 소요예산이 얼마며,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정말 심각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수용시설은 2004년도까지 초·중은 35명 수준이고, 고등학교는 40명 수준입니다. 그 OECD 수준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등은 35명 수준이라는 것을 전량을 다 확보하고 7차 교육과정으로 확보되어야 할 물량은 초·중은 거의 지금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시설과에서 짜기는 2,000 한 200억 정도 해서 4,000 몇 십억, 4,00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난번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명년도에 한 3조 한 8,000억을 더 투자해서 7차 교육과정을 완성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료예산을 다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같은 7차 교육과정으로 한 2,000 한 200, 300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전량을 다 한다면 4,0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첫해에 2,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지금 그것은 당년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2004년까지인가 연차적으로 투자할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게 4,000억입니까, 2,000억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최대한 그 기준으로 한껏 잡으면 한 4,000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것을 최소화 한다면 2,200억 정도면은.....

● **간사 이기수**

그런데 그 재원조달은 중앙에서부터.....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중앙에서 해주겠다고 하고, 3일 전인가 각 시·도 시설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거기서도 각 시·도가 균

형적이 되어야 되니까 통합적인 7차 교육과정 계획이라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 다음 17페이지에 귀국학생 국내 학교 생활 적응훈련, 효과적인 지도능력향상, 열린교육 교원연수인데 이게 그러면 유학생들 갔다가 귀국한 학생들 말씀입니까, 이게?

● **교육국장 이주원**

유학생들도 있고 외국에 갔다 와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 **간사 이기수**

교사, 그러니까 열린교육은 외국에서도 받고 올텐데 그 열린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외국에서 열린교육을 지금 안하는 후진국에 이것을 귀국한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관계관 석에서 “이것은 교원들이” 하고 말함)

교원들입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이것은 교원 한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한명을?

● **교육국장 이주원**

그 학생들을 담당할 교원 한명을 연수시키는 것입니다.

● **간사 이기수**

예, 22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

유치원이 대단히 많을텐데 말입니다 어떤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정기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못 저기 하면 이런 것이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있고 그럴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몇 학교 정도 선정하며, 선발기준이라든지 뭐 여기 선정된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102개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균등 지원으로 70만3,200원씩 균등 지원하고 학급별로 좀 차등으로 지원을 해서 4,5학급은 24만원 더 지원하고, 6 내지 10학급은 34만원, 그리고 법인에 3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 간사 이기수

아, 일률적으로 균형.....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간사 이기수

그런데 그 유치원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럴텐데 그 학급 수에 의해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습 수에 따라서.

● 간사 이기수

중등교육과 예산입니다.

사립교원 특별채용시험은 앞으로 계획이 매년 있을 계획입니까, 이게 한두차례 한시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작년이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 교원도 있고, 퇴직 교원도 많아서 인원 확충하기 위해서 사립 학교의 과원이나 또 교과 상치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받으면 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아서 인원 제한을 했습니다. 그 분들을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 공립에 와서 수업을 다른 교사들과 차질없이 할 수 있나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절차를 밟았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런데 이제 과원 교사에 대한 문제 해결.....

● 교육국장 이주원

과원 교사가 있는, 그런 과원 교사에 해당되는.....

● 간사 이기수

여기는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과학실험보조원 자격은 그것은 고등학교 출신이 어떤 자격을 실험보조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57페이지에 전산보조원이 있는데 그 보수관계를 같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57페이지 그 전산보조원 관계는 고학력을 가지고 미취업,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 구조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인원 수가 1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37페이지에 과학실험보조원 관계는 과학실험보조원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과학실험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학교 자체로 인원을 쓰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 **간사 이기수**

페이지 62에 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제작이라는 그 예산이 있는데 이 졸업생이 있고 학생 재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생활기록부를 이제 그 대학의 입시에도 반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부 졸업생들 CD를 제작하고 이제 재학생도 하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 생활 기록부에 대한 그것은 영구보존이죠, 그렇죠? 영구보존인데, 그 CD롬하고 생활기록부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두가지로 보관하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을 보관하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영구보존인데 화재라든지 이런 것 있을 경우에 필름으로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대학에서는 학적부 관리 문제를 다양하게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산 보존 말고 생활기록부 책자도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책자보존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산 자료만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추경에 올린 것은 그러한 자료들을 학교에 그냥 전산으로 보

관해 놓으면 되게 되어 있는데 다시 고등학교 3학년 대입을 위해서 추가로 또 뭐 CD를 작성해서 보관하라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추경을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 보관방법 관계는 자세한 것은 몰라도 제가 있을 때는 CD같은 것을 그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출을 하고 우리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도 올려서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 **간사 이기수**

이제 이게 뭐 앞으로 그런 일이야 없겠지 마는 6.25때 그 학적부가 분실이 돼갖고 학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대학에서는 마이크로 필름이나 이런 것으로도 보관한다는데 하고 해서 그런 장소에 아주 특별 보관해갖고 어느 불상사가 난다고 그래도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그게 참 이 학적만은 잘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기록보관소로 올라가서 거기서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필름으로다.

● **간사 이기수**

마이크로 필름으로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간사 이기수**

65페이지에 그 “인터넷화상방송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상회의도 교육

감하고 교육청하고 할 예정이고 이런 선진적인 정보화에 대한 시설을 이제 발맞추어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권장사항인데 그 뭘니까, 지체부자유자들 재택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시설을 참 물론 우리의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지체부자유인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1주일에 몇 번 가서 교육한다 이런 것보다는 가정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지금 지체부자유자 재택교육의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다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교육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없고 장애가 중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치료교육 쪽의 재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상교육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재택교육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앞으로 그러면 전혀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착안하지 않으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사이버교육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택교육에 한한 사이버교육은 아직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예, 도서관 운영에서 그 경비지원인데 도서관에는 요즘은 뭐 책에 의한 지식습득보다는 참 컴퓨터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한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도서관도 전자도서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그렇다고 해서 확보율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저 청주 내에 청주중앙도서관 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문승호**

중앙도서관 문승호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 운영의 경우 CD로 되어 도서열람은 필요없다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매우 빈약합니다. 타 시·도에서 한 50% 수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관이 2,638석이고 여기에 장서 수가 21만2,000권입니다. 우리 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의 서울의 정덕도서관 여기는 2,624석인데 여기에 장서 수는 40만 4,761권입니다. 대구의 중앙도서관은 2,968석에 장서 수는 32만 4,641권입니다. 이 장서수가 1.5배 내지 2배에 달하고 규모가 적은 서울 마포, 남산 도서관, 또 부산 시흥도서관도 장서 수가 우리 도서관보다 훨씬 많고 또 예산도 1억 내지 1억8,000까지 지원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당초에 3,000, 이번 저희들 추경 때도 겨우 3,000만원이고 국고지원 된 게 1,300 해서 이번에 겨우 이것이 7,000 된 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얘기가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충북의 중앙도서관이 일반인까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청주시립도서관이 통합되면서 받았습시다. 그러면 청주시립도서관은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중앙공원 내에 시립도서관이 옮겨갔다가 저 수동에 옛날에 보안대 자리로 옮겨갔다가 거기에서 사람만 넘기고 아무것도 넘겨준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학교운영비를 쪼개가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교육청 도서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사실 따지면 우리 교육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도와야 하는 부분은 정말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고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저쪽에 돈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혀 저희들한테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지금 제가 도서관이 그 학생도서관이 청주에 있는 중앙도서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 있는 도서관 하며 직접 방문을 못했습니다마는 중앙도서관도 저희가 2대때도 가보고 했는데 책이 아주 빈약합니다. 아까 그 뭐 교실을 이충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개선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쪽도 좀 중요하지만은 도서관 시설을 잘해서 요즘 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하

지 않습니다, 장서를 구입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독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조성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시설에 못지않게 도서관쪽에 그 장서구입을 많이 하셔가지고서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권고하고 싶어가지고 중앙도서관의 평균확보율에 대한 그 장서, 장서의 평균확보율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명년도 예산이라도 이쪽에 좀 많이 그쪽을 착안하셔가지고서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최초로 6억을 책정해서 학교문고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송진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오전에 두분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별반 질의할 것이 없습니 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가지 질 의를 드릴까 합니다.

책이 제일 적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을 좀 봐 주시면 거기 9쪽에 “세입·세출 총괄 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국가부 담수입,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이렇게 나뉘져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라고 하는 것이 137억2,205만4,000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고지원금이 33억 1,393만원 해서 계 170억3,598만4,000원으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국고지원금하고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 셴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들한 테 내려지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거 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국고지원금은 국고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어떤 사업을 할 적에 보조금 주는 거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하고 이제 137억원은 교부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 양여금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양여금은 그 교육세를 받은 것을 지방인 구 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지방자치단체 에 내주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교부금 근본적인 성격이 그렇잖아요 인 구, 학생수, 학교수 이런 것 해서 배분해 주는 것이 교부금 아닌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 교부금을 내려주는 공식은 교육부 에서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해져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그래 국고지원금이라고 하는 것 33억 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정해서 나온 것인 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그것은 저.....

● 김광수 위원

어디다 어떻게 써라.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교육부에서 명칭이 전부 지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어디다 어떻게 쓰라고 말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 지방자치단체 회계부담금, 법정전입금이 14억2,4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4,679만9,000원,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은 이게 무엇이 들어온 것인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도청 세입금의 2.6%인가 해서 거기서 정해지는 것이고, 비법정전입금은 그 도서관운영비라든지, 급식학교지원비라든지 해가지고 도나 각 시·군에서 지원되는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죠, '99년도에 이월금 좀 해서 완전히 남은 것?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세출분야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습니까, 1차 우리가 추경을 하잖아요, 이거 내가 가져왔는데 1차 추경을 한 그 예산액이 여기 2차 추경으로 보면은 기

정예산액이 되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기정예산액이 되고,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것이 예산액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은 기정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먼저번에 1차 추경을 했을 적에 그 예산액하고가 좀 똑같지 않은데 그 똑같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같을 겁니다. 여기 기정예산액은 당초에 산액과 예년 예산액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나와있는.....

● 김광수 위원

글쎄, 1회 추경에서 완전히 합쳐진 것이 학교교육에 2,872억5,272만5,000원인데 기정예산액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1차 추경을 하고서 거기 예산액이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단 말이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낸 예산서에는 교위나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

이요, 도의회 가서 일부 삭감된 것이 있죠.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아, 그것이 차이가 나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게 차이가 나는 액수가, 차이가 나는 액수가 4억7,400, 그 학교교육비에서 4억7,452만7,000원이 차액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급여복지에서는 같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비에서는 60만원이 차액이 나고, 또 그 몇군데 차이가 난단 말이야.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것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보시는데요 맨 끝에 세출 합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별로 조금씩 바뀌어도 총액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을 듣고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보조, 여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해서 231억 6,700만원이 순수하게 돈이 온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죠, 세입재원이 생겨난 거죠.

● 김광수 위원

세입재원이 생겨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예비비 151억 4,600만원을 여기에다 포함시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한 것은 380억 이상이 되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380억을 가지고서 이번에 추경 예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보고, 주요설명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중복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맨 위에 9쪽을 기타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평과 학관 신축 국고보조 8억2,700만원, 음성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4억9,100만원, 그 밑에 옥천지역에 공동주택건립에 2억 8,200만원, 본청 청사 수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국고보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옥천 교직원 사택건립까지가 국고보조고 본청 청사수선은 자체재원입니다.

● 김광수 위원

거기에 국고보조라고 안했으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증평과학관 신축도 국고보조에 아주 증평과학관을 아주 지으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여기서 요구를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내려보낼 때 명칭을 그렇게 달아서 보냅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금 요청을 해서 형식상 이것이.....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본청에서 우리 증평과학관을 지어야겠으니 이 만큼 예산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증평과학관을 지어야지만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과학관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광수 위원

다 있죠. 각 시·군마다 다 있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증평중학교에 생물표본을 한 선생님이 유명하게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 지역사회까지 널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 거기 과학관을 만들기 위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아니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생기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는 과학관 해주고 어디는 안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은 국고보조사업은 아시다시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판단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아니 국고보조 170억이 내려왔는데 170억, 그 중에서 증평과학관만 유독이 지어야 겠다라고 8억2,700만원을 요구한 것이 뭐냐 이거죠. 왜 한 개만 지어요, 몇 개 짓죠. 이렇게 교육부에서 과학관 지으라고 예산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과학관이 한군데씩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요. 그런데 이 증평중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한 선생님이 아주 표본을 생물표본을.....

● 김광수 위원

개인 선생님이 그것을 했어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중대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전국적으로.....

● 김광수 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죠. 개인이 그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중대

그것을 학교에다 기증을 했는데 그것을 보관할 장소, 활용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표본자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관은 먼저 각 시·군 단위보다 중심학교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평은 괴산에 있기 때문에 읍지역이면서 학생 수는 많고 그래도 과학관은 없어 가지고 아까 그런 선생님들이 좋은 어떤 자료는 많아도 진열하거나 넣을 때가 없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평중학교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그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해가지고는 보조금 신청을 내가지고 그것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네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유독이 중평만이 이 과학관을 짓는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다고 할 적에는 이 8억2,700만원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국고보조 받을 이외로 더 오는 것인지, 그 가운데 교육부에서 각 시·도 배정할 적에 그냥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인지, 이것이 그 외에 별도로 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지금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은 시·도에 어떤 미리 안배를 하고 그 중에서 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특별교부금 요청 노력을 한 것에 따라 가지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더 올 수도 있고 노력을 게을리 하면 좀 덜 올 수도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런 것이 다른 부처에서 오는 것 같으면 아주 참 공돈같이 오는 것이라고 해서 반갑겠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오는 예산 같으면 내내 그 나가는 돈 중에서, 예산 중에서 그것 좀 중평에다가 해줘라, 말하자면 힘센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보다도 더 뚝한 분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게 그쪽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런데 결국 특별교부금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 김광수 위원

그것은 타 시·도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타 시·도 균형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도만 더 특별히 많이 주고 어느 도에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음성중 다목적 강당신축이라고 해서 강당을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4억9,100만원 가지고 무슨 다목적 강당을 짓습니까, 이 뒤에 쓰는 강당이예요,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저희가 이거 신청한 거는 저희가 확실한 금액은 저기하지만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이 학교가 학생 수가 지금 3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사정할 적에 300명 안되는 학교에다가 큰 강당을 지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은 형의 강당 겸 특별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실을 지으라고 이 정도 금액을 내려 준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이것도 정치적으로 온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것은 아마 정우택 의원이 지원.....

● 김광수 위원

이것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 전부터 그 옛날부터 북쪽에는 강당같은 것을 많이 갖다 짓고, 남쪽에는 한번도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불균형하단 말이죠. 충북의 교육 이러한 여건으로 보더라도 어느 지역은 누군가가 있어서 많이 갖다가 강당도 많이 짓고, 어디는 하나도 없고 이런 사례가 있어

서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개인 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시시비비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국가예산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균형있는 그러한 예산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충북에 그래도 강당같은 체육관 겸한 강당같은 강당이 몇 개소가 있는가, 초·중·고를 통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그 지정체육종목이 있을 거예요. 배구나 농구나 유도나 기계체조나 이런 것은 이러한 체육관 없이는 운동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지정받은 학교에 학교가 몇 개소인데 이러한 강당이나 다목적 강당이 있는 데가 몇 개소가 되는가 이것 좀 그 실태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내내 그 밑에 3번 교육정보화 사업의 교원용, 실습용 컴퓨터 보급이라고 해서 125대 국고보조예요 또 1억 6,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관계관 석에서 “예”하고 말함)

125대가 오는데 그 전에는 이러한 기자재를 쓰고 하면 단가입찰제로 해서 사뭇 해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런지 구입방법을 말씀을 해 주실까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가입찰을 못하고 거의 조달청에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양을 정해 가지고 단가 입찰만 하면 그 사양에 맞는 물품만 납품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럼 학교에서 쓰는 선생님들 용이나, 교육용이나 컴퓨터가 전부 비품 하여간 사양만 맞으면 되니까 조립식 컴퓨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는 거의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 학교별로 뭐 삼성것이 됐든, 대우것이 됐든, 어느것이 됐든 학교별로다가 조달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학교단위로 구입을 하도록?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컴퓨터를 저희들이 단가입찰한 예는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거기 예산에 나온 거 보면 138만원이죠, 대당?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김광수 위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그 10쪽을 보면 실험실습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유리온실 신축이 있네요. 여기 농고에 한해서 이것을 하시는가 보죠, 충북에 농고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그것은 영동농·공고에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아니 여기는 영동농·공고인데 충북에 농고가 있는 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 교육국장 이주원

여섯 개 학교가 있습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지금 도내 여섯 개 농고가 있는데 지금 다섯 개 학교는 첨단 유리온실이 설치가 됐고요.....

● 김광수 위원

다 이게 시설이 됐어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다섯 개 학교는 됐고요 이번에 영동농고만 되면 마지막으로 첨단유리온실이 전부 시설이 됩니다.

● 김광수 위원

3월까지면 충분히 좋게 시설이 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영동농고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과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온실을 지어주면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이?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여기에 원예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광수 위원

원예과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데?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지금 한 클라스씩 있는데요 그게 꼭 원예과 학생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농고 학생들은 선택으로 전부.....

● 김광수 위원

다섯군데는 다 있는데?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 김광수 위원

영동농·공고만 이제.....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마지막으로.

●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해 주는 거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그 10쪽 맨 밑에 교원연수 3억 6,500만원 이렇게 부전공 자격연수라고 나왔네요. 이것도 국고보조인데 실과 전문교과교사 7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전공 자격연수를 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예, 이것은 305시간 이상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전공 연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에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그때 해서 300

몇 시간?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305시간 이상입니다. 15시간씩.

● 김광수 위원

그럼 이분이 국어과에 있다가 다른 과로 바뀌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전문교과 교사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실과 쪽으로 받게 되고요, 저희가 체제개편하고 맞물려서 그 과원교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과 선생이 국어나 수학, 이것은 극히 드물고요 주로 부전공 쪽은 전산 쪽이라든지 실과 유사과목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전공을 바꾸는 것은 왜 부전공을 바꾸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지금 말씀드린 체제개편에 따라서 학과가 개편되면 과원교사도 발생이 되고요, 실업계 학교 학생 미달사태로 인해서 학급 감축이 되는 경우 이럴 때 과원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원교사 해소책으로 이 부전공 연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 과원교사가 생기기 때문에 한 방법으로써 이 부전공 교육을 시켜서, 300 몇 시간 교육을 시켜서 교사로서 유지시킬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 교육국장 이주원

과원교사가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반대

편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다 보니까 필요한 교과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과원 쪽에서 필요한 교과 쪽에 부전공 연수를 받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교육만 받고 올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도 됩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필요하신 분들이 그 과원교사,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있는 정원이 남아 돌아갈 것이 예상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그 교과선생님들이 다른 교과를 하셔야 될 입장이 된단 말이야, 어느 분이 됐든지. 그러니까 그 교과 선생님들 중에서 앞으로 수요가 있을 그러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부전공 연수를 받도록 이렇게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게 해주고 우리들도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전공 연수를 받으면 그 자격증을 주죠.

● 김광수 위원

자격증을 줘요?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교사는 남아두고 그 학과는 없어지고 말하자면 미봉책으로 그냥 부전공 시켜서 유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미봉책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서해수련원 얘기가 들고 나왔는데 그전에 100억원 준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어서 한 50억밖에 안돼서 상당히 참 유감스럽네요. 앞으로 국고를 더 받을 수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뭐 아까는 참 제가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딱 잘라서 안된다, 된다 하기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번에 140 몇 억 가지면 완공을 하게 되나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시설은 완공이 됩니다.

●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수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시다마는 각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기이 도서관이라고 각 시·군에서 있으면 명실상부한 도서관으로써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서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를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뭐 다른 시설비마냥 몇 백억 이렇게 안들어가고 상당한 예산만 좀 관심만 둘 것 같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지역교육청의 그 장서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학교 도서관의 장서 확대는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해

나갈 방향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리고 81쪽을 보면 그 설명자료에 대여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아까 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이 33억이 서 있는데, 그러시죠? 33억이 서 있는데 이번에 21억4,300만원을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11억5,600이 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11억5,600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김광수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33억까지 세웠다가 21억이라고 이렇게 많이 조정을 해야 되는지.....

● 총무과장 신춘우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춘우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여장학금 대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으로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상환방법은 분할상환이 원칙이나 퇴직할 경우에는 일시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당해 연도 대부소요에서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 금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 김광수 위원

아니 저 과장님, 잘 알고 있어요. 아는데 33억을 세운 것을 21억이나 깎는 것이 그런 거 예상을 못했던게요?

● 총무과장 신춘우

아니 그래서요, '99년도 당초예산액은 '99년도 이 부담금 납부액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부담금 정산결과 그 정년 및 명퇴자가 아주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상환액이 퇴직하게 되면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상환을, 그 금액이 한 2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을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예산심의할 것 같으면 삭감 좀 하자고 하는 데가 대여장학금이예요,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삭감 조금 깎자고 하니까, 아이구 예산 때번 거기다 손대면 안 된다고 해서 못 깎는다고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 21억이나 확 깎아버리는 거란 말이죠. 어지간히 깎으면 얘기를 안하죠.

● 총무과장 신춘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명퇴가 하도 많아서 말입니다 그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 김광수 위원

명퇴가 있는 거 다 알고 그렇지 그거 왜 몰랐어요?

그 용어가 편성하는 데 보면 용어가 성립 전사용, 그게 무슨 용어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예산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예산성립이라고 합니다. 예산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통지를 받아 가지고.....

● 김광수 위원

승인 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내려온 목적교부금을,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한.....(청불).....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에요.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저기 부분에 나왔는데 이 도·농간 뭐 교체수업, 어디 있지?

(관계관 석에서 “23페이지”하고 말함)

그렇지요. 도·농간 교체학습지원 해서 그 예산액이 이번에 처음 세운 것인데 2,267만원이란 말이죠. 이게 각 시·군마다 한 학교씩 이거 세웠죠?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그 새학교문화창조 강조하는 데서 그 체험학습을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그 추진하는 학교가 있어요.

● 김광수 위원

예, 그러니까 시·군마다 하나씩 있나요?

● 교육국장 이주원

시·군마다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이것이 이번에 몇 개 학교가 되나요? 2,267만원인데.....

● 교육국장 이주원

8개 학교.

● 김광수 위원

8개 학교인데 이게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300만원이 채 안되네?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도·농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해서 심사에 합격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나온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게 2,267만원이란 말이죠, 8개 학교에?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주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도·농간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하고, 그 학교에 가서 그 활동하는 데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학생하고 그 시골

에 있는 학생하고 서로 말하자면 이렇게 교
류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 김광수 위원

하는데 글썽 어떻게 예산을 뭐에다가 세
우는데 한 300만원 정도도 안되게 이렇게
돼 있나 이런 얘기에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 학교에서 계획수립하는 것을 보면 최
소한의 경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형식화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제대로 뭐가 됐으
면 모르지만은 이게 뭐 여러 학교에 한 300
만원도 안되게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예산이 어디다가 들어간 예산이냐 이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요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쇄물을 뭐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학습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는 경비이
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이게. 여기 예산이
안들어 갔으면 어디서 예산이 나와요, 이게
까지 다른 데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에
2,267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프로

그램만 만들어 놓았지 이게 하나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그것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하
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신청을 했
기 때문에 그 신청한 액수에 따라서.....

● 김광수 위원

글썽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
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제가 이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제가 조금 보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와 학교가 일단 교체학습을 하는
것이 서로 정해지면 그 학생들이 전원이 다
가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학부모와 학교와 학생과의 협의
를 거쳐서 나는 거기 참여하겠다, 그래 양
시·도의 농촌이나 도시하고 서로 합의를
봐 가지고 본인들 희망하는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고 그냥 운영하는 그
런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 김광수 위원

거기에 저 맨 밑에 교육청별 평정내역을
보면 금액 그 나와 있네요.

(관계관 석에서 “예”하고 말함)

학교는 한 개교씩 하고, 금액은 청주에
250만원, 또 청주 동중에 400만원, 충주여
중에 400만원, 옥천중에 400만원, 옥천여중
에 127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것을 뭐에다 편성을 한 거냐 이겁니다, 글쎄.

● 교육국장 이주원

프로그램 신청을 냈을 때 그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으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가 설명좀 해줘 봐요. 뭐에다 어떻게 400만원은 뭐에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400만원 예산이 나왔는지?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입니다.

제가 동중에 작년에 교장으로 있을 적에 영동 상촌중학교 서울 성정중학교하고 교류 학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에 그 희망자를 받아서 1대 1로 민박을 합니다. 서로 교류하는 학생끼리.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는 별로 들지 않고 역시 학생들이 처음 왔을 때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식사를 대접을 한 다든지 또 관광을 할 때에 교통비, 이런 것이 여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행사라고 해서 1,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된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것을 전 학교에다가 1,000만원을 배정을 하게 됐나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1,000만원을 전학교에 고루 배정한다는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돌아가는 돈이.....

● 김광수 위원

여기 설명자료 몇쪽에 있죠?

(관계관 석에서 "20쪽"하고 말함)

20쪽에?

(관계관 석에서 "20쪽입니다."하고 말함)

● 교육국장 이주원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2만원, 3만원도 안돌아갑니다. 한 학교에 2만원, 3만원 돌아가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달리해 가지고 전체에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해서 그 어떤 특별도 전체의 행사를 하는 쪽으로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저 설명 나온 것과 같이.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1,000만원 가지고서 전교의 교사님, 선생님들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무엇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고가 1,000만원이면은 자체 예산을 거기다가 좀 몇천만원 더해서라도 스승의 날 스승의 대접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인데 단 1,000만원 그것만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자체예산에서 아, 예비비 150까지 빼다가 하는 것인데 거기서 조금이

면 1억을 보태도 되고 뭐 몇천만원을 더 보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좀 상승의 날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대접을 해주는 그런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두분이 다 질문을 드려서, 그 사립학교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 보조금 명칭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사학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응?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사학지원비, 사학지원비요.

● 김광수 위원

아니 사학지원비인데 이것을 세분해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은 국립학교는 나가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사립학교에 그 예산이 더 많이 있던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사학지원비로 되어 있죠.

● 김광수 위원

사학지원에 그게 더 많던데....., 한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립학교 선생님 사립학교 채용할 적에도 공립에서 시험을 봐서 사립학교 채용하게 해주느니 뭐니 이런 얘기가 그전에 있었던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충북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사립학교 교원 채용하는데?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몇 년전에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에 국립교원들 공채할 때에 사립학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같이 같은 문제로 같은 시기에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립학교 근무를 희망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후에 충북에도 권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안되고 있구만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네 교원은 자기네가 선발하는구만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저 큰책 65쪽을 보면은 급여복지라고 하고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분해서 볼 것 같으면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44억1,490만2,000원이 삭감이 됐단말이에요. 그 내역좀 설명좀 해주실까요, 65쪽에?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교직과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서 교직과를 초등, 중등으로 갈라서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직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해서 그 초등으로 보내고, 중등에

필요한 선생님들이 초등으로 거기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초등으로 그 예산이 갔습
니다, 초등교육과로.

● 김광수 위원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어디에 서 있던
것을?

● 교육국장 이주원

교원지원과, 그 항목이 교원지원과 항목
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맨위에 보면,
그 장의 끝페이지 맨위에 보면.....

● 김광수 위원

그렇죠. 교원지원과죠.

● 교육국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에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교원
지원과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졌기 때문에
감한 거죠.

● 김광수 위원

그전에는 교원지원과에서 이것을 취급을
했는데.....

● 교육국장 이주원

작년에 세웠죠. 금년 들어와서 교원지원
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로 옮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것을 초등 어디로 옮겼
어요?

● 교육국장 이주원

초등교육과로.....

● 김광수 위원

초등교육과로?

● 교육국장 이주원

초·중등 나눠서 갔습니다.

● 김광수 위원

초·중등?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김광수 위원

그럼 그 밑에 사학지원비도 같은 거겠네
요?

● 교육국장 이주원

예, 같은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또 저기 이 전산보조원을 쓰게 예산에 서
있죠, 전산보조원?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김광수 위원

이게 몇월부터 언제까지 이 예산이 되는
겁니까. 9월부터인가요?

●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입니다.

그것은 그 국가예산 작년 올해 마지막입
니다. 마지막에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쓰는
것은 8월부터 12월 사이로 이렇게 쓰게 되
어 있습니다.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경비를 주고.....

● 김광수 위원

5개월 분이에요 그러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미 그럼 쓰고 있겠네요.

●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지금 쓰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 전산보조원을 지금 현재 고용을 했겠네요.

●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예, 성립전 그 사용하도록.....

● **김광수 위원**

성립전 예산이구만 이게?

●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예,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보조원을 주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 95쪽에 평생교육체육과인데 예산에 관계없이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저 농구나 배구나 이것을 할려면 이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치가 없어서 상당히 각 학교마다 애로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 실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체육과 김태봉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정종목 중학교에 코치도 전부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따라서 일선에 육천지역하면 초·중·고에 농구가 있고 배구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코치를 하나 주고, 중학교에 주면 고등학교에서는 자체 코치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연계성

을 이어주도록 그렇게 하고, 더불어 학교를 주지 못하고 각 지역마다 지정종목의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연계성이 돼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다 지금 저희 도에서는 전 코치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육천인 경우 육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농구 내지 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코치는 한사람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코치 하나가 있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배구 코치는 현재 둘을 주고 있고 농구 코치는 하나를 주고 있는데 자체 코치로 해서 여중하고 상고하고 같이 학교에서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코치 때문에 문제성은 현재로다가 크게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뭐 문제가 있는 곳은 없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여기 좀 한 학교에 대표선수한테 하나씩 주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인건비로 도내에 순회코치를 63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소년체전 대표코치도 지금 다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광수 위원**

여기 95쪽을 보면 그 코치 예산을 1,900 만원을 깎은 것 같네요?

● **교육국장 이주원**

그것이 고등학교로 옮겼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그 코치 선정을 할 때 초·중의 코치를 인원조정을 할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초등이 고등학교에 있는 코치를 내야 하겠다, 하여튼 내려다보니까 인건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줄은 게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실제적으로는 안줄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예.

● 김광수 위원

이 총무과 소관인데요 103쪽에 볼 것 같으면 맨 밑에, 맨 밑에가 아니고 그 위에 출연금이라고 했어요.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대여장학금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21억4,300만원이 바로 이건가요, 이게?

● 총무과장 신춘우

예, 삭감한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관서운영비에 임차료라고 있어요, 아파트 임차 8,000만원?

● 총무과장 신춘우

총무과장 신춘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교육감 관사가 그 전용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여년 된 25평의 작은 건물인데 이게 당초에 이게 원래 시설이 잘못 돼 있어 가지고서 요즘에 자꾸

만 수선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음도 안돼 있고, 생활편의시설도 미비하고, 그래서 생활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또 아파트는 속성상 한번 사놓으면 말씀이죠 속성상 재산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 가지고서 임대아파트로다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 예산을 세운 거죠, 아직 여기 입주한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신춘우

아닙니다, 지금.

● 김광수 위원

이 8,000만원이면은 청주에서는 한 30평 짜리는 살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신춘우

그런데 전용 아파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 김광수 위원

8,000만원 세워났기 때문에 하는 애긴데, 8,000만원이면 그 웬만한 아파트는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모르지, 한 50평짜리나 60평짜리 임대하려면.....

● 총무과장 신춘우

아니죠. 지금 한 36,7평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인데요 실제 임대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앞으로 적정한 규모의 아파트를 임대하세요.

● 총무과장 신준우

예

● 김광수 위원

돈이 남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넘겨서 업무용 승용차 전용차량을 물으셨는데 이게 몇인승이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승용차는 정 인원은 5인승 아닙니까, 5인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게 5인승이예요 그럼?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일반 승용차입니다, 일반.

● 김광수 위원

그럼 2,800만원이면 한 3,000cc 되는 건가?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닙니다. 2,000에서 2,50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00cc는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삽니다.

● 김광수 위원

그래요? 기획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111쪽을 보면 학교 회계시범학교라고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이 회계시범학교라는 게 뭐예요, 이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명년도부터 학교 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 회계는.....

● 김광수 위원

이게 상고에 생기는 건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과목이나 이런 것들 다 지정해서 돈을 내려 주었는데 명년도부터는 회계년도도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2월 1일부터 3월.....

● 김광수 위원

아, 학교에 회계년도 관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학교에 들어오는 돈을 전체를 학교에서 예산을 짜서 그것을 학교 회계에 편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그런 연구학교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어느 학교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 지금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어디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성여고하고, 미원초등학교, 두군데입니다.

● 김광수 위원

미원초등학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이 되

나 짚어보면 되겠네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도출하고 차기 적용에 저희들이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 밑에 보면 목적지원경비라고 해서 조정부 경기정 구입, 조정 그 강에서 하는 그 조정관계 얘기인가요, 이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조정이 물에서 하는 경기, 그 조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래 어째 그게 평생체육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획관리과에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에다가 돈을 직접 내줘서 이쪽에서 직접 사게 하니까 이쪽에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요구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편입을 해서 학교로 나눠주니까요.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런 것을 평생체육과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 김광수 위원

아니 기획관리과에서 말씀해야지 왜 평생체육과장님이 말씀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글쎄 그것을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과에 들어오면 장비비가 없는데 이번 기획에 충주여고 조정팀이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그 밑에 배가 없어서.....

● 김광수 위원

충주여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배가 없어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못하면 출전을 못하는 관계로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해서 2,000만원 산정했습니다.

● 김광수 위원

다음에도 우승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기획관리과 예비비 관계입니다. 151억4,660만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빼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151억4,660만8,000원입니까? 나머지가 93억이 남아 있는데 그전에 볼 것 같으면 예비비를 더 많이 싸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내년 예산에 또 여기 좀 저축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 본도는 말씀하신 대로 참 예산을 굉장히 절약을 해서 많은 재원을 이렇게 예비비로 가지고 있고 또 불용액이 남은 것도 쓰지 않고 해서 많이 비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교육부나 이런데서 평가

기준이 틀려져 가지고 왜 예산을 많이 남기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방향이 좀 틀려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왜 더 많이 빼시지 그러셨어요? 강당같은 것 하나 지으려면 9억이면, 10억이면 되는데 그것 좀 빼서 그런 것 지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보통 총 예산에 1%정도 이게 91억인가 3억인가 하면 1.1%정도 되는데 1%정도의 예비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아래로 내려가서 0.45%가 유지되면 만약에 어떤 긴급한 사태가 날 적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1%정도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일반 행정기관 같으면 그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해서 그놈을 갑자기 풀고야 하지마는 우리 교육계야 그렇게 천재지변이라든가 급박한 사항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150억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이 그놈을 한꺼번에 풀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풀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과 소관인데 그 시설비 하고 환경개선비 이게 다 시설과 소관인가

요, 그러시지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학교 교실 짓는 그 시설비 또는 환경개선비, 이게 다 거기 소관이죠?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추경으로 그 교실을 시설비 내지 환경개선비로 짓는 것이 전부가 몇 개 교실이나 됩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로 교실 중·개축이 29.5실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및 일반시설에서 134.5실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다 합해서 몇 개 실이에요, 그래?

● 시설과장 오형균

합해서 164실이 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164실?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김광수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짓는 것이?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김광수 위원

신설 교는 안들어 갔죠?

● 시설과장 오형균

신설 교는 여기 안들어 갑니다.

● 김광수 위원

이 먼저번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마는 지붕방수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붕방수 이런 것이 요새 새로 짓는 학교에서는 앞으로 10년이면 10년 이내로는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감독 소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방수 누수되는 학교가 '93년도, '92년도에 이때한 학교들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제..... 물론, 방수를 하면 안새야 맞는데 통상적으로 방수기술이 현재까지는 5,6년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실정이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제가 잘 아는 어느 학교인데 지붕방수를 했어요. 그 이듬해 가서 또 예산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어떻게 지붕방수가 안되고 새고 또 새고 이렇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처음에 잘해야지 잘 안하면 이게 그렇게 새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시설과장 오형균

글쎄 그것은 방수할 때 방수지점을 잘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새로 짓는 학교에서는 지붕이 새서 방수공사를 한

다는 그런 말 자체가 안나오도록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27쪽에 테니스장 설치에 3,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창고등학교인데요 오창고등학교는 왜 테니스장 설치를 해주었느냐 하면 오창중학교하고 오창고등학교 가운데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옛날 구관 앞에, 오창중학교를 신축, 놓어준 개발하면서 가운데 있는 것을 전부 정리하고서 없어졌습니다. 그래 거기 두 코트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참 그것을 가지고 체육이고 오락이고 했었는데 없어진 학교에 한쪽에 밀어서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고 129쪽에 이 시설과 소관인데 책·결상 구입비가 2,400조에 7,440만원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설과에서 책·결상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게 되나요?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이번에 그 교실 증축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도 계속 있었고, 그 교실 새로 증축된 학교에 들어가는 책·결상입니다.

● 김광수 위원

시설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김광수 위원

그 다시 증축된 학교에다가 책·결상을 넣는 거예요?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예.

● 김광수 위원

2,400조면 이게 많은거란 말이죠.

● 시설기획계장 이학신

최솜합니다. 시설기획계장 이학신입니다.

그 7차 교육과정 대비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교실 증축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그 학생용 책·결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책·결상, 책상하고 결상하고 해서 3만1,000원이 되나요?

● 시설기획계장 이학신

예, 그 단가입니다.

● 김광수 위원

한 조가?

● 시설기획계장 이학신

예

● 김광수 위원

그러면 뭐로 된 거예요, 나무로 된 거예요, 이게 뭐로 돼 있는 거예요?

● 시설기획계장 이학신

그 합판 철판하고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교실에 있는 학생용 책·결상 있지 않습니까.....

● 김광수 위원

글썸말이에요.

● 시설기획계장 이학신

그 책상하고 의자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전부, 도 본청에서 전부 구입해서 줘니까, 학교에서 배분하면 학교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 시설기획계장 이학신

예산을 편성되면 결정될 문제지마는 고등학교 분은 대개 그 해당 학교에서 지금까지 조달물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나요, 이거?

● 시설기획계장 이학신

책·결상은 조달품이 주가 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왜 그러나 하면은 3만1,000원씩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시설기획계장 이학신

그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아까도 개별적으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서해수련원이 143억4,900만원이면 완전히 완공이 된다고 이렇게 했죠, 껍데기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시설은 완공됩니다. 143억이면.

● 김광수 위원

껍데기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나중에 끝에 가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내부시설, 침대나 뭐 그런 집기같은 것은 뭐 그때.....

● 김광수 위원

내부 집기는 여기 안들어 있죠, 그러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내부집기는 그런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사무용품비라든가 그 내부 집기같은 거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아까 청주교육청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정명환

예

● 김광수 위원

164쪽에 보면 거기도 1,000만원이라고 지정종목 장비구입비가 들어가 있던 말이지요, 어느 학교에 무엇인가요? 164쪽에 청주교육청에 학교교육비 맨 위에.....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정명환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정명환입니다.

지정종목 장비구입비 해가지고 초등에 100만원씩 10개교 중등에 100만원 10개교 사립에 100만원씩 3개교 이래서 2,300백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초등은 양궁·육상·테니스·정구·탁구·축구·야구·농구·수영 유도 이 종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중등은 펜싱·양

궁·사격·정구·검도·수영·야구·농구·럭비·테니스 종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립중학교는 로올러·수영·배구 종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청주시내 학교의 지정학교에 전부 지원하는 겁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어때요, 청주시는 이번에 교사용 컴퓨터를 몇%로나 지급이 됩니까, 교원 컴퓨터 지급 비율이?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정명환

100%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번에 지원해 주면 100%가 돼요, 선생님들 전체에?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정명환

선생님들 1인당 1대씩

● 김광수 위원

1인당 1대씩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정명환

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1회 추경에 83억을 넣어서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양호교사까지 다해서 100% 완료됩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전부가 다 들어갑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초등같은 경우는 이미 학급당 학급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중간에 다른데 물어보는 것은 생략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맨 뒤에 지방채조서 아까도 지방채조서를 한번 본 건데 금년도 이자를 갚아야 할 것이 64억2,000만원이 되나요, 금년도 이자 갚을 것이, 349쪽에?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연도별로 기재할 금액이 정해지고 그 기체에 따른 이자를 정한 것인데 최종 기체를 해보고 그것에 따른 이자가 그것이 다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지금 기체로 한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 이자를 내서 한다는 얘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네,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가 6.5%, 8.25%, 7.5%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그 이자가 더 내려갔다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내려갔다고 하는데 더 내려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여기 8.25%라 하는 것은 비싼 거란 말이지.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재특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적에는 변동금리 적용이 아니고 고정금리 적용을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6.5% 그런 이자율은 그 차입한 날로부터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 김광수 위원

글쎄 그런데 말하자면 농협에서 얻어 온 것인데 8.25% 이게 아마 이율이 지금 더 내려가고 있어요. 이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간 금액으로 다시 상환하고 얻는 방법으로 안되는지?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재특은 고정금리로 가지고 왔고 농협은 변동 금리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농협은 내려가면 내려간 금리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 김광수 위원

317억이나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금년도에 얻는 것은 이것은 재정용자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어디서 얻어진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것 재특이라는 게 기획예산처에서 관리하는 회계에 있는 돈입니다.

● 김광수 위원

내내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농어촌특별자금 주는게 3% 같은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해서 줄 것 같으면 한은에서 이렇게 줄 것 같으면 더 되는 건데 내내 정부에서 상환해 준다고 하면은 그런 자금을 얻어다가 할 수가 있을 법 한데 말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 중에서도 가장 저리라고 한 재특회계에서 지원해 주지 농협에서 그 자금 지원은 농민

들한테 우선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안옵니다.

● 김광수 위원

뭐 3%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런 자금이.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재한 것이, 1,120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문서로 약속한 것은 아니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들 그 당시에 승인을 해줬고 했으니까 문서로 약속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교육부를 다 경유해 가지고 재경분가 하고 재특회계 서로 차입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봐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다 그것.

● 김광수 위원

만약에 교육부에서 책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하죠? 상환 안 해주고 할 것 같으면 내내 우리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들은 책임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바로 재경부하고 차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교육부 거쳐 가지고 온 것입니다.

● 김광수 위원

예, 대략 부족하나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하고 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 경과했으므로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 위원장 송진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7억7,900여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 액수를 보시면 '99년도에 36억 2,714만2,000만원보다 약 10억 가까이 9억이 줄었습니다. 사실 지식강국을 만들고 21세기에 선진국 대열에 들려면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99년도 보다 대폭 삭감이 되었는지 하는 것 하고, 강사 수당을 보면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인 경우에 자체강사는 1만3,000원, 외국인이나 외부강사는 2만원 내지 3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것을 1만3,000원을 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액수가 이게 좀 적다고 하는 말씀들을 일선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액수가 그전에 보시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아

니 국고보조하고 또 부족분은 학생들이 일부 부담을 하죠, 특기·적성교육에 학생들이 일부 부담 안합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학교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학교에서 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작년엔가 올 봄에도 얼마 예산을 주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대폭 줄어들어 가지고 하다가 중지를 했거나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어서 학교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 '99년도 보다 이렇게 9억 가까이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관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도 그것보다도 금년도에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전국적으로 더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부에서 약속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산을 하고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올 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특기·적성교육쪽의 예산을 세웠다가 그 교육부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 컴퓨터 1인 교사 지원관계, 이런 쪽으로 대략 쓴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각중에 삭감이 된 거예요 4월달 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젠가 예산이 팍 줄었

단 얘기가 다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다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9억 정도 밖에 안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1차로 9억이 왔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9억3,900 이렇게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니 저희들은 이제 급하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인가 4월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쓴 것은, 쓴 것은 그 돈으로 일단 그것을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것은 안배를 했습니다, 그 학교의 실정을 따져서, 다시 안배하고서도 너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또 자체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대화를 하실 적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각중에 예산을 줄여서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돌아오셔서 이걸 우리가 일선에 찍 어려움이 많으니까 보태서라도 우리가 특기사업을 특기·적성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야 노력을 해야 하겠다 해서 그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서 국고지원쪽에서도 한 6억 3,100,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 가지고 국고지원 쪽이 15억7,800정도 이렇게 됐고, 나머지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원인은 교육부에서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하다가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이

어느 한쪽이 중요하고 어느 쪽이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게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예비비의 일부를 전용해서라도 아 타도에서까지야 뭐 교육부에서 잘렸으니까 못준다고....., 우리 도 자체만이라도 앞으로 특기·적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액수를 증액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전체의 균형,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이쪽에 지원을 할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업도 전부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고, 앞으로 도 그쪽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쪽으로.....

● 이상일 위원

그러시구요 저기 제가 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는데 타 시·도에는 선생님들의 자체 강사수당을 얼마나 주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본 예산에라도 이게 적다는 느낌이 안가도록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참고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스승의 날 행사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한말씀만 더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목적도 보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참 꼭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 스승의 날 행사를 몇 번 참석해 보면 이제 중심학교에 모여서 배구대회 뭐 이런 거 하는 쪽으로 하는데 거의 예산들이 없으니까 학교별로 자모님들이 뭐 음식을 준비해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차제에 우리도 이것을 대폭 증원해서 그런 것 없이라도 한번, 스승의 날이 1년에 한번인데 그냥 최대의 경축스러운 날인데 그날 경비만이라도 자체 경비로 멋있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2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보면 고교 입시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1,22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선발고사, 여기에 문항을 개발한다든지, 수학능력시험 그 출제 전형관리, 사실 이게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는 당초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을 뭐 저기 다른 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 있다고요 사실. 그러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당초의 예산에 그렇게 소홀하게 예산을 덜 세웠는가, 이래가지고서 그 문항개발이라든지, 그 출제위원회 수당,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본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대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웁니다. 이제 금년도에 여건변화가 생겨서 추경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는 당초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런 문제 출제 이런 데도 예산이 좀 충분해서 충분히 휴식도 좀 해 가면서 좋은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국장 이주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을 작년대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출제기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4일을 더 연장해서 해야 한다는 그 여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30쪽에 대학수학능력 시험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대학에서 자기네들 대학생 뽑는 것을 고등학교에서 이게 대행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일만 잔뜩 떠안고 있고 잘못 된 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떠 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엔 듣기평가에서 방송시설이 시원찮아가지고 잘 안 들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까? 그러면 그 5,600만원 속에 각 학교 시험장에 방송시설의 점검이 되는 건지, 또 1차로 도교육청에서는 시험장에 방송시설 개·보수를 확인을 했는지, 또 시원찮으면 예산 배시를 해 가지고 시험 전에 완전히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하는지 하는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방송시설을 그 시험장에 만들어 주기 위해서 증액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액수가 정해진 것은 각 시·도에서 시험장에 해당되는 학교에 시설 관계를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비용같은 것을 조사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그 시설을 갖춰서 우리도 점검을 했고 오늘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점검하러 온 날입니다. 실제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 이상일 위원

저희들도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도교육청이나 일선교육청에 음향기기 전

문가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절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겠지만 표준규격, 좋은 것을 안 써줍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지 좋은 제품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탄 전문가가 와보면 이거 못쓴다는거야 왜 못쓰느냐 앰프하고 이 스피커하고 출력 비율이 안 맞다는 거라, 쓰는 선도 가는 것을 썼다는 거라. 그러니까 분명히 견적서에는 정규 정품을 쓴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시설한지 2,3천만원을 들어서 시설한지 얼마 안되는데 운동장에서 초청인사의 강연을 하려면 마이크에 방송국의 전파가 들어와서 잡음이 나요.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정말 정품을 규격대로 시설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줘요. 왜냐하면 이게 막대한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금년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쓸 거 아닙니까? 내년에 가가지고 작년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니까 이번에 틀림없을 거다, 중간에 가서 뽁뽁거린단 말이야. 그런 것도 시설 계통 쪽에서 한번 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저희 교회에도,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충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업자한테 했는데 나중에 서울에서 어떤 인켈인가 전문업자가 와서 보더니, 이거 속았다 안맞는다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들여 가지고 보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32쪽에 교과교육 연구활동 연구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에 103팀의 연구회에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27개팀으로 대폭 줄어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과연구회가 더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수업에 관한 여러 가지 테크닉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연구회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각 교과연구회를 희망하는 데를 전부 받아줘가지고 전부 그것을 취합해서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 행사를 실제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 효과면도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국고지원금을 대폭 감소시킨 그런 예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이것도 한가지 건의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만이라도 이런 연구팀을 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권장을 하십시오. 권장을 해서....., 사실 이런 게 활성화가 되는 게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도 필요하겠지만 교과 연구하는 것, 애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을 활성화가 돼서....., 제 욕심같아서는 103개 팀

이 10개 팀이나 20개 팀이 늘어나서 120개, 130개 돼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들이 교과연구활동에 위축되고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예, 희망팀을 고려 해서 좀.....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그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목표인원과 사업내용이 있는데 '98년에는 14명이 다 됐는데, '99년하고 2000년에는 목표치에 50%도 안되는 것으로 원어민 교사가 줄어들었는데 여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원어민 자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 분들 급여는 대개 우리 나라 교사들의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우리 돈으로 180만원 수준.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숙소는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숙소는 본인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숙소를 마련해 주는, 임대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는 쪽으로.....

● **이상일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집을 전세을 얻어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죠?

● **교육국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교사의 자격중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 **교육국장 이주원**

그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합한 우리 교원대학교, 교원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거친 사람들을 자원으로 해서 하는데 그 인원수 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받아도 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교원일반연수에 대해서 이 문제는 아까 조금 나온 얘긴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지금 환경 쪽을 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환경교사에 대한 부전공이라고 할까, 뭐 이런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천상 환경과라는 것은 없으니까 과학 쪽으로 해가지고 부전

공을 통해서 환경교사를 양성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중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72명의 부전공 연수자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전공 연수 40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중학교에는 101개교가 환경교과를 선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38개교가 환경교과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 다음으로 저희 충청북도가 환경교과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선생님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중대

그것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규모가 적기 때문에 주당 시수가 1시간 내지 2시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교과를 선택한 학교가 많아도 1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전공교사를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는 전담교사가 세 학교밖에 없습니다. 바로 충북고등학교, 청주여고, 중앙여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주동중이 18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배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전공 교사는 많아도 전담하기는 어렵고 각 학교별로 시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기 전공 외에 복수로 이렇게 환경교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학교급식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목은 73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지원, 그런데 이제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에 각 학교별로 있는 그 학교 영양사를 줄였죠? 그래서 그 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학교의 급식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 이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그게 다 있어야 되는데 몇 개 학교를 한 개 교사가 순회하면서 하도록 하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급식비를 학생들이 다 내죠, 그렇지 않아요, 경비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

(관계관 석에서 “예” 하고 말함)

그러니까 1,300원을 받든지 1,800원을 받든지 자체내로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값을? 그러면 학부모들이 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조리사, 영양사가 다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건 납품들어 오는 것 신선도라든지 또는 뭐 유효기간이 넘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때는 그 업무를 양호교사나 다른 교사한테 맡기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그 급식재료가 몇시에 들어오느냐 하면은 6시 30분에서부터 7시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그거 가서 할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 전공도 아닌 사람이 받아 가지고 누가 책임질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각

학교에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어느 학교에는 영양사, 조리사, 뭘 써라 쓰지 말아라 하는 규제를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거기 보니까 조리보조원의 퇴직예정자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그게 방학 빼고 대개 220일 정도 근무하죠. 그래 하루에 2만1,000원입니까? 그래 그것 가지고는 생활이 안되니까, IMF 때는 그것마저 없을 때는 좀 몰려있다가 그게 빠지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있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던 사람이 계속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러는데 자꾸 수시로 바뀌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은 학교장에 의해서 두고서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참 있는데 그래서 충주고등학교같은 데는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침부터 거기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충주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학부형들이 내가지고 1,700원, 1,800원, 인건비를 거기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

는데 그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준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 이 조리보조원의 일비는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기준이 보통 인건비 해 가지고 2만1,000원 했던 것이 2,3년 전에 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정을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가지고 어느정도 저희들이 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이거 몇 개 학교에 지난 몇월달인가? 조의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급식학교 조사했을 때가 언제죠?

● 조일환 위원

글쎄요.

● 이상일 위원

한 두달 전.....

(“6월달에” 하는 위원 있음)

6월달에. 제가 눈여겨서 조리보조원들을 봤는데 전부 젊은 부인들이예요. 할머니들 없다고. 그러면 대개 30에서 한 40까지 된 한참 능력있고 일할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더라고. 그래 굉장히 좋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일비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한번 들어오면 적어도 1,2년 아이들 급식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번 일비 상향 조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학교체육활동지원, 이것은 제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는데 지금 각 학교에 이제 그 체육비를 보내죠, 그런데 이게 대개는 체육이 보통학교 학생들의 학교 체육하고 지정종목육성 두가지를 다 키워야 되죠? 그런데 대개 지정종목이 있는 학교는 그거 한팀, 두팀을 키우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체육선생님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부모도 또는 지역 유지들도 항간.....,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의 보통 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이 너무 소홀해진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주면 좋겠는데 예산을 더 안주는데 지정종목에 나가서 우승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거의 예산의 대부분을 거기다 활용하다 보니까 나쁜 말로 보통 학생들은 불이나 공이나 내주고 그저 하는 쪽으로 소홀해 진다 하는 얘기들을 몇몇 학부모들이 저한테 하드라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이 많으면 두가지를 다 병행해서 활성화 시키면 좋겠지만 앞으로 지정종목 학생, 엘리트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도 교과의 일종인데 소홀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라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지역 사람들의 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운동부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그 전체 예산을 체육부에다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저희들이 도 대표 선발된 팀은 약 훈련비를 중앙에서 3억을 받으면 6억3,000을 해갖고서 주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고, 고등학교도 학교 체육에 지정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과거였고, 지금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단, 체육선생님들이 지정종목을 육성하다 보니까 조금 지장이 있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학활동이라든지 교과활동을 통해서 체육수업을 충실히 하는 것을 하고, 단, 이미지가 그 체육수업을 체육을 선수로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학부모들한테 많이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임을 해서 총무를 뒤서 하는데 그 학교한테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 이상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급식학교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사학지원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려가 되고 있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이런 얘기를 드리면 사립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오해가 있을는지 모

르지만,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사학유지재단에서 돈을 내야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학교에 돈을 못냅니다.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운영경비를 다 대주는데, 또 학생들도 자기가 선택해서 어느 학교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학교는 뭐 선택권이 없이 배정된 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거기 현장방문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주북여중에 식당이 새로 건축이 됐는데 300석입니다. 그런데 북여중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요. 그래 같은 구내에 충주여상이 있는데 거기 학생 수도 밥 먹는 수도 한 500명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500명이 몇 교대로 먹어야 되느냐, 300석에 적어도 밥 먹는 시간이 3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식당 앞애가 그늘도 없고 뭐 이 차양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뜨거울 때 애들이 서 있어야지, 비가 오는 날에는 어디 피해 있어야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을 학교에서 호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몇분 위원님들과 갔다 와서 그런 것은 사학, 공립 구분하지 말고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저희들이 가 봐도 공립학교의 시설이 월등 사립학교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학에도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딸이 만약에 거기 가서 2시간, 1시간 그 뜨거

울 때 그 밥 한그릇 얻어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실내 온도도 그날 저희들이 재 봤는데 원체 더웠죠, 원체 더웠고 300명이 있고 조리실 안에서 열기도 있고 30도 가까운 데서 밥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시설쪽에서 그래서 예산을 좀 균등 배분되도록 하고, 작년에도 결산시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불용액을 조금 더 예산편성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데 배시가 됐으면 어땠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어떤 특정 학교를 지정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양해하시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이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조일환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집행청에 추경, 뭐 다른 안건도 같습니다마는 이런 의안을 제출하실 때 작성자 정말 그 업무를 직업으로 하시는 그러한 작성자의 입장에서 이 자료를 만들으시느냐, 심의, 뭐 그렇게 크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여하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료를 만드느냐, 이런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고 봅니다. 제가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속도 모르는 게 있지, 같은 청에서도 다소 양식이 다른 것도 나와. 또 가다보면 액수가 어디는 원이고, 어디는 천이고, 어디는 백만원이고 그런 것이 이 계수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뿐이 아니라 정말 심의하시는 사람, 제가 지금 저희 편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더 충분히 비고란이라도 또 난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무엇이 사업이 있으면 어느 학교라는 것, 아까 청원에 어디라면 어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의안을 보다가 필요하면 현장에도 갈 수 있고, 또 그 교육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의 전에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가장 긴급한 예산이 어느것입니까, 긴급한 게? 시기를 다루어야 된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가장 중요한 건 아마 9월 말까지 지급하는 명퇴수당 관계가 아닌가.....

● 조일환 위원

명퇴수당! 예, 알았습니다. 9월 말까지 지출하는 것. 또, 잠깐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리고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각종 국고로다 온 지원사업이 다 실시되어야 되고, 시설비도 지금쯤은 이게 확정되어야지 금

년에 공사착공도 되고, 또는 사고이월도 되니까 그런 쪽에서.....

● 조일환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해 주시죠. 결재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아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예산을 담당자가 결재를 해서 시작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할 때에 어떤 내부 결재를 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럼 어떻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를 들면 추경의 필요성이 저희들 1회 추경같은 경우는 통합학교 운영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이번 것도 시설관계에 특별교부금이 접수가 되니까 이것을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7월 중순경부터 자료를 각과에서 받아가지고 8월 중순 가서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럼 아까 긴급하다는 명퇴수당이나 특기·적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언제부터 필요한테 그때서부터 착수를 한 것입니까? 긴급하시다며. 어찌 7월 20일경에 가서 착수를 했어요. 그 예산이 확보된 것을 보면 상당

히 오래 전에 됐는데 왜 긴급한 것인데 그렇게 늦게 하십니까, 긴급하시다며, 내가 긴급하다니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명퇴의 인원이 확정이 되고 부족액이 나온 것이 그 무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시기가 그 무렵일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알기로 명퇴희망을 받고 여기서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이 상당한 그 이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일간지 신문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북 교육위원 뿐이 아니라 교육도 망신입니다, 교육도. 작년에 추경은 6월 22일날 심의했습니다. 아니 추경이라는 게 언제 하라는 꼭 그게 있습니까? 한가지라도 급하면 하는 것이고, 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난 해에는 6월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가만있어, 아직 제 얘기 질문 안끝났어요. 과장님! 그 질서를 지켜주세요.

이런 것이 얼마나 부끄러우냐,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잘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작년 2회나 3회보다도 뭐가 긴급한 게 없어요. 작년에는 명퇴수당이 없었습니다. 미리 했습니다. 또 지금 긴급을 요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미리

지출하신다고 그랬죠, 예산을? 그래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국고성립의 기점, 말하자면 이것이 성립되면은 그 전에도 성립이전에도 이것은 확실히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면 쓴다고 그랬죠, 예산을?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진념 예산처 장관을 데려다 놓고 국회의원들이 따진 겁니다. 우째 당신네들이 예산을 심의도 안받고 썼느냐, 이것은 관행상 국고성립기점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명퇴라는 것이 기체라는 것으로 확정된 게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7월 20일경에 이 추경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부득이할 때 긴급을 하는 거예요, 긴급명령이 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죄송합니다만 질문 요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조일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 요청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분히 이번에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안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제가 필요로 하는 답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는 예산,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여기에 적법하게 편성하셨겠죠,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적법하도록 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적법하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조일환 위원

적법하다면은 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 77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습니다, 제출안에.

그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도 나와요. 84조 그리고 법 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2항, 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시·군 다릅니다. 처분의 경우에는 2억5,000만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번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이상, 그 다음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요, 지방재정법이 34조, 지방재정법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송합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을 잘 아시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을. 그러면 지금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게 적법하게 지금 하는 겁니까? 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해서 적법하다고 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답변말씀 올릴까요?

● 조일환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조일환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고 그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게 당연한 옳은 말씀입니다. 뭐 지금 지방재정법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나라 예산제도의 현 시점이 기획예산제도라고 하면서도 기획을 해놓고 예산이 따라가고 해야 맞는데요 실제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예산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서 기획이 되지 뭐 저희 이론상 저희들 행정학에서 배웠고,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배웠습니다. 지금 옳은 말씀이십니다. 기획을 하고 그 뒤에 예산이 따라가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사후 뭐 저기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예산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는 그 기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것은 뭐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실정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과 같이 동시에 제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 잘못 났습니다. 잘못 났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렇게 죽 해왔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뿐이 아니라 도고 뭐 여기 하지만 다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의 입장을 감안해서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법 해석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산을 먼저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을 적에 승낙을 받았을 적에 이것이 적법하냐, 불법하냐 그랬더니 판례로 봐서 차후에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도 적법하다, 뭐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한 회기정도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의결받고 그 당시 이게 가서 참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범위나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만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러셔야지, 법대로 집행을 했다는데. 그럼 우리 위원은 불법으로 제출된 의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이 77조의 정신이 뭐냐 정신이, 돈

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업하지 말아라 이거죠. 돈에 사업을 맞추지 마라 이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물론, 뭐.....

● 조일환 위원

아, 잠깐 기다리세요.

이 법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의 정신을. 그러면 왜 이 법이 사문화 되는 법이 공공연하게 왜 실정법으로 남아 있습니까? 되도록 정말 불가능한 것은 얼마든지 추후에 이것은 부득이 한 것은 이것은 다 의결을 거치고 다 됩니다. 의결을 거치고 할 그만한 충분한 시간, 이것이 여건이 됐는데도 이러한 공유재산변경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이미 기이 편성하고, 기이 편성하고 이것을 적법하다고 하면은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의안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이 역할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례가 어떻든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의식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랬더라도 이제는 현실을 좀 뜯어 고쳐가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옷을 맞춰야지 옷에 사람을 맞추면 안됩니다. 바로 이 77조가 그겁니다. 저는 우선 이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러한 것을 아무도 말씀 안하셔서 맨날 제가 악연만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짚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언제까지 우리 관행을 하겠습니까? 또 2대 때도 이것을 수차 지적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이것이 안지켜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정이 어떻든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국고성립 이전에 사용을 많이 했잖아요, 하세요 하시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법이나 이 조례에 맞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 관행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백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몇시간입니까?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정기회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 전에 김정길 위원님이 참 이것을 열심히 하셨어요, 아시 다시피. 그분은 예산심의 한달 전에도 그 자료 달라고 그러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조일환 위원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목표는 됩니까? 충북교육 알차게 밀고 나가자, 왜 우리가 서로 미워합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음지에서 보는 양지에서 보는, 보는 소위 시각차입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기회의 정기 예산을 정말 위원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여기까지 일했습니다, 정본이 아니라도 절대로 왜 이렇게 이려고 나중에 이래, 그런 것은 얘기할 게, 상식이 하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의안으로 제출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충북교육을 같이 걱정한다는 정말 그러한 동지에 입장에서 이번 정기회에 예산 준비하는 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수시로 좀 자료를 달라고 그럴 겁니다. 뭐 가철을 하시든지 아직 정본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주시면 정말 오늘같은 이런 얼마나 추경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서로 공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지침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금 먼저번에 한번 국장님이 그러셨나, 과장님이 그랬나요? 주요설명자료 먼저 한번 해 주신 적 있죠. 심의하기 전에, 그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저희가 그때.....

● 조일환 위원

그래요.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자료로 의안으로 받기 이전에, 위원님들 언제 나오나 한번 이걸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해서 정말 흥분 터 놓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좋은 대의회가 될 겁니다. 갈등이 왜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위원활동을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물 건축,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여기 관재계장님 나오셨어요?

예, 관재계장님께 제가 부탁한게 뭐죠?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될 드렸습니까?

● 관재담당 김왕년

청사 합필관계를.....

● 조일환 위원

합필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 관재담당 김왕년

그 합필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 관재담당 김왕년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 조일환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필을 완전히 해가지고 어느 교육기관하면, 이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손으로 그릴거냐, 그것 전산화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 관재담당 김왕년

아 재산전산화 관계

● 조일환 위원

예, 예.

● 관재담당 김왕년

재산전산화 관계는 자체적으로는 명년도 부터 진행을 해 가지고 일부 완료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단위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준다면 더 좋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앓으십시오.

제가 우리 관재계장님께 늘 귀찮게 하면서 정말 재산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건축 교육시설이 이제는 어느게 우선이나 순위를 따지는 우리가 이것을 뭐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컴퓨터가 선생님들 1인당 1대씩 다 있는데 이제는 전산화 되면, 아, 교육청 '79년도에 건축이 돼서 아 고칠 때가 됐다 그려. 우선 모든 자료가 그렇게 됐으면, 또 어떻게 긴요하나 학생수에 비해서 여기는 뭐가 되어 있고 뭐가 안돼 있다, 적어도 이제는 그런 체계적인 우리 행정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정말 능률있게, 능률있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가능하다면 한번 부탁을 드리봅니다.

그 다음에 국립학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실까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도내에는 국립대학에 부속된 보통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교육부에서 대학을 통해서 내려와야 오는데 저희들을 통해서 가끔 돈이 그리 갑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오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에 의한 경상적 보조금 이 과목을 편성해서 국립학교로 돈을 줍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일부 저희들 지방 자치 돈에서도 나가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국고에서 전액지원이?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내려와서 가는 거다 여기 지출이 되어 있던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조일환 위원

그런데 국고수입이 그렇게 안돼 있던데, 여기?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국립 중·고등학교에 가는 돈은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예산으로 편성될 때 교육부에서 편성이 돼서 그리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가는 뭐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있는 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국립 초·중고를 지원해 줄 적에 이것을 막바로 자기네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시·도 교육청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그 각 시·도별로 아까 무슨 국회의원 얘기도 나오고 지난해도 이 참 대단히 그 교동초등학교 강당 같은 것은 정말 대단히 불행한 시설입니다. 힘의 논리 때문에 우리 교육시설이 상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현장에 가 봤을 때 도를 위해 학교를 짓겠다 강당을 그려가지고 도시심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지을 때가 없어요 그 아깝지요. 지금 가 보십시오. 교동초등학교 바로 정문옆에 운동장 그 좁은 데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함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 5억 가져왔으면 충청북도 5억이 들어 왔다고 줬다고 국회의원이 줬던 장관이 줬던 누가 주었던 간에 이걸 벌써 액수로 남지 않습니다. 그럼 그나마만큼 다른 우리가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우리가 신청할 수 없죠, 아까 증평얘기 아까 제천이나 단양 가면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강당 다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쪽 남쪽보다 사실상 많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런 지역의 불균형, 이런 것을 우리 교육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또 우리가 예산하다보면 이거 특별교부금 남으면 돌려줘, 이거 아깝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충주 수영장을 수영장을 삼원초등학교 있는 수영장을 충주 시장이 본 위원을

통해서 받을 시 지방비로 부담을 하겠다. 죄우는 걸 좀 해주시오.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순수한 특별부금이야 그런 것도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교육부에서는 이 특별교부금이 공짜 돈인 줄 알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 교부금에 대한 신청절차 이거에 대한 것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국고성립기점하고 전사용은 하실 수 있다니까 사업에 따라 하실 수 있다 이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조일환 위원

미리 지출할 수 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급한게 아닙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긴급한 것은 항상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고 일단 지출해놓고 의결하면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어 당신 그거 안돼는 거라고 우기겠습니까? 왜 그러냐 긴급이란 말 때문에 우리 충북 교육이 별로 교육위원회는 이런 책임은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져야됩니다마는 우리의 집행청에서도 도의적으로라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은 본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예산이 당장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22일날 확인했을 때에는 의안이 없고 24일날 의안이 있다고 그런 통보가 있겠습니까. 상식 어린애한테 물어 봅시다. 더 이상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이지요.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금 사실 이게 언제부터 7차 교육과정이 도입이 됐습니까? 내년부터입니까, 국장님, 금년이지요?

● 교육국장 이주원

금년 초에.....

● 조일환 위원

금년이죠. 여기에 시설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지요?

● 교육국장 이주원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가 시작되는 내후년 초부터

● 조일환 위원

내후년..그럼 내년에는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내년에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큰 시설에는 문제는 없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조일환 위원

예, 그렇다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르게 필요없어요.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이 제일입니다. 다목적교실 무슨 과학관이 중요하냐 이 말이야 과학관, 중학교 7차가 들어오는데 통합과정 운영하고 하다보면 이동수업 해야 되고 어디는 학생이 많아서 지원자가 어느 과목은

1시간에 100명도 되고 이게 중요하지 시설에 운운할 수 있습니까, 저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그 예산을 적어도 지금 안됐습니다마는 본 예산에는 정말로 가능한한 재원을 동원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내년도 부터는 투자해 나갈 방향입니다.

● 조일환 위원

좀 늦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 조일환 위원

그러세요. 예.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갖고 그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에 중학교에 관해서는 특별교실만 확보해도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한 것이다 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좀 들어갔고

● 조일환 위원

글쎄 일부가 들어갔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들 나름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2003년부터 35명 급당 인원을 대비해서 130여 실을 전부 요번에 예산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조일환 위원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눈감고 좀 이래 부덕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의안 내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돼, 의안을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이게 무슨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게 누락돼서 그게 다시 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이것은 정말로 이걸 본회의에 사실은 의제 안들어 온 것 다시 이것을 의결을 해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의제를 받아 줄 건가 안 받아 줄 건가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름대로 제가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요사업 설명자료에서 지금 다 저거 된 게 많은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9페이지 자칫 중평분들이 보시면 맞습니다마는 이 중학교 선생님께서 얼마나 정말로 8억 이 대강당에 전시할 만한 그러한 전시물이 있습니까, 몇점입니까?

● 과학실업교육과 박종대

정확한 점수는 모르는데 제가 3천여점 정도 된다고....., 아주 귀중한.....

● 조일환 위원

귀중하더라도 3천 여점이면 교실 한칸으로 전시해도 됩니다. 이런 구실을 달지 말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소위 힘의 논리 말이야 아까 어느 국회의원 힘 말이야 거기에 우리가 놀아난다 이거예요, 저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받아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선별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은 참 저희 집행청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규모나 어떤 위치나 이런 학생수나 이런걸로 봐 가지고 거기의 시설보다는 만 학교에 먼저 시설해 줘야되고 하는데도 뭐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그 학교에 이게 나올 적에 저희도 솔직히 받으면서도 애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 학생 300명에 그래 8억짜리 그래....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그건 아니구요.

● 조일환 위원

몇 명입니까, 이게. 몇 명이에요?

증평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증평은 그 학교 학생수가 많습니다.

● 조일환 위원

얼마나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건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적어도 700에서 800명.....

● 조일환 위원

800명, 여하튼 그 다음에 거기에 9페이지 밑에 아까 본청 청사 수선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전에 한번 상정이 되었다가 수정

의결 되었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전액 삭감을 했고요.

● 조일환 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라 수정의결 했지요. 일부 했지요. 그렇지?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한번 예산을 확보에 주셨는데 저희가 IMF 오고 '98년도 실행예산이 편성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스스로 수정예결 한번 한적이 있다 그거지요.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유럽을 가보거나 일본을 가보거나 관청이 제일 검소합니다.

저는 제가 이 안을 보고는 제 나름대로 외부로도 가보고 우리 청사를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아직 그러한 유럽이나 일본에 대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상당히 오랜기간을 그냥 써도 된다고 봅니다. 위험한 타일이 떨어진다 이건 것은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외부의 시급한 부분만 하시고 지금 일본에 가면 유가와라정 청사를 가면 도끼다시를 하고 논수립 심줄 된게 사람이 다녀서 주걱같이 달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됐느냐, 60년 된, 60년. 꼭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 갈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스스로 이 군살을 빼고 구조조정 해줘야지요, 15억을 하는데 학교나 선생님들한테 보여봐요 스승의 날 1,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우리 교육의 이러한 말이 예산에, 얼마나

이게 작달함니까, 선생님들한테. 지금 상이
군인협회, 경우회, 세우회 얼마나 현 일선
에서 지원하는지 아세요. 우리 삼락회 뭘
움직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안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그죠, 선생님들에 대한 우
리도 좀 있으면 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삼
락회 회원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러한 본청에 정말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학생들, 선생님들 이것을 생각하는 이런 쪽
으로 예산을 해달라. 예, 창도 그동안에
'79년에 수선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고천일
도 있고 봐서 그렇게 뭐 참 아직 그럴 때가
아닌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
수당 아직 지출이 안됐죠?

● 기획관리국장 김진성

9월말까지만 하면 됩니다.

● 조일환 위원

아, 9월말까지,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퇴직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
에 8월말일자 퇴직이니까.

● 조일환 위원

1개월 말이지, 사실 나가면서 주면 더 좋
겠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러면요, 빨리 달라고 하는 거죠.

● 조일환 위원

그럼요 그래서 요것은 교육부에서 틀림없
이 준다고 그랬죠, 교육부에서?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앞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

● 조일환 위원

앞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우리가 34개 지역에 보도에 보면
은 이자수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이자
수입이 어떻게 된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내용을 안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에
서 6%, 7%, 8%에 돈을 얻어쓰는 거와 이와 그
이자 수입을 본 거와 어떤게 더 이익입니
까, 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특경비로 가지고 온게 아까 6.5%론
가 연 이율 고정금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가지고 올 당시에 농협금리가 농협
에서 저희들이 갖다 예탁해 놓는 금리가 7%
내지 8% 한 2%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채를 해다가 농협에다 가서 정
기에탁을 하면 그 이율 하더라도 저희가
더 낫겠다 생각.....

● 조일환 위원

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평잔액이 한 5,6백
억 됩니까, 얼마쯤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연평 하면은 그 정도 됩니다.

● 조일환 위원

5,6백억은 되죠? 그런데 평잔액이 5,6백
억인데 연간 32억은 어떤 소득을 했다는 거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 평잔액을 두고서도 우리가 또 이렇

게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연구과제로 해서, 제가 이런 쪽으로 답변을 마칠게요, 그래서 정말 예산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내 돈처럼요.

그 다음에 특기적성교육 그러니까 18페이지인데요, 아까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지 소규모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의 실효성은 어떠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학생들 희망을 들어요. 3분의 1도 안합니다. 그 예산을 국가에서 절반 부담하죠, 50%로요?

● 교육국장 이주원

전액을.

● 조일환 위원

전액이죠, 반환을 해요, 반환을.

나는 큰 학교는 강사를 채용해도 돼요. 액수가, 근데 작은 학교는 안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환을 해서 희망해 그러지 말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어느 작은 시골학교라도 컴퓨터라든가, 무슨 미술이라든가 특기를 할만한 데가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법에 되어 있는 규정을 떠나서 좀더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한번 활용하는 예산편성방법은 없겠는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글쎄 그건 특기적성 교육에 관한 건.....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일부러 국장님, 국장님 어떠세요?

● 교육국장 이주원

좋은 말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대책이 없겠습니까? 소규모학교의 특기 적성교육은 도심지의 많은 다인수학교하고 뭔가 그 실정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더구나 100% 다 주는 것을 제가 볼 때 수안보 같은 데도 보면 30%로도 안 합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100%라는 것이 그 목표량이 뭐냐하면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의 100%입니다.

● 조일환 위원

금액 글쎄 예, 예. 그러니까 더 희망을 할 수가 있는데 안 한다 이거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건 사실 지금 시골에서는 소규모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 안되거든. 솔직히 10명, 20명 가지고 됩니까. 오히려 학습을 해 달라는 걸 희망을 하는데 우리 법적으로 어려우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안 되는 것을 저희도 뭐 학부모 찾아가서 강제로 집행하긴...

● 조일환 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20페이지 스승의 날 기념 행사 정말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적기에 하세요. 지금 올라올 추경도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건 내년 5월이니까. 사실 내년 당초에...

● 조일환 위원

이건 내년 거랍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건 올 금년인데요.

● 조일환 위원

글쎄 말이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내년도 부터는.....

● 조일환 위원

이게 다 지난 다음에 왜 올라와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 좀 합시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사기진작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 조일환 위원

한 번 해줍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 당시에 회의를 그때 제가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도 그 스승의 날 거의 아주 가까워 가지고 그 무렵에 임박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회의가 연기되어 가지고 조금 시기적으로 이게 늦었습니다.

● 조일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교육연구시범 학교 운영인데 맨 아래 보니까 양업고하고 예술고가 남았네요

800만원, 2,000만원 그런데 연구학교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왜 두 학교 차등이 심한가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 잘 몰라서 좀 설명 부탁 드릴까요?

● 교육국장 이주원

그 교육부에서 국고로 교육과정연구시범 학교하고 자율시범학교의 국고지원이 정해

져서 내려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까지 지정합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학교는 우리가 지정하지요.

● 조일환 위원

지정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부 지정입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조일환 위원

교육부 지정? 교육부 지정인데 한군데는 800만원 한군데는 2,000만원이다 이거요.

● 교육국장 이주원

그 성격에 따라서 더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 조일환 위원

그렇습니까, 성격이란 무슨 성격입니까, 두학교는?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부에서

● 조일환 위원

교육부에서? 예산이 오면 여기서 지정 한다면서.....

● 교육국장 이주원

아니 예산이 오면.....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교육부에서 직접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그 학교 책정대로 내려온다 이겁니다.

● 조일환 위원

교육부에서?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부 지정이니까

● 조일환 위원

아, 교육부 지정이니까 여기서 해 올리는 게 아니요?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아, 아니고.

● 조일환 위원

아, 이걸 교육부예산.

● 중등교육국장 김전원

그거 차이나는 것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업고등학교는 그 연구학교의 성격이 아니고 자율시범운영학교라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대한학교가 모두 자율운영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마다 연구학교의 성격이 아닌 형태를 자율시범학교라는 명칭을 붙여서 지원액을 다른 일반연구학교와는 별개로 별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교과연구활동연구비 늘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교육의 질을 올려야 된다. 이러면서도 사실은 우리선생님들 연구활동을 충분히 전 지원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예산을 이만큼 보니까 1억2천 해냈습니까,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중등교육과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1억2천은 아까 교육국장님이 설명 말씀 하셨 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교육부에서 직접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과교육연구 서클을 희망을 받아 가지고 직접 교육부로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연구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총복이 지난해에는 103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사업을 교육부에서 시·도로 이관을 시키면서 시·도별로 전체 교사수를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줬 습니다.

그 지원해 준 것이 총복이 1억2천인데 그 중에 학교당 연구회당 500만원 이내로 해서 지정을 하다보니 저희 총복에 배당된 것이 2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가 줄어들었고, 그 대신 우리 도내에서는 교육 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1억2천으로 되어있 습니다만 여기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 는 저희 도내에서도 44개의 교과교육연구회 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고에서 1억2천 나왔으면 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른 시설도 좋습니 다마는 선생님들이 소위 자율장학 아닙니 까? 여기서부터 선생님들의 참 정말 창의력 도 나오는 거고 사기도 복돋아 주고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강습을 시킵니까, 제 생 각에는 국고를 이 정도 왔으면은 우리 또 지방자치에서라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충분 히 하셔서 좀 더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을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 **조일환 위원**

예, 내년에 좀 가능하겠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내년에는 국고에서 오는 1억2천도 사업이 폐지가 됩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따라서 내년에는 지방비에서만

● **조일환 위원**

예, 전액 충분히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예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아까 저 우리 이상 일 위원님께서 학교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봐도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을 보면 거의가 지정 종목이나 엘리트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교과 체육교과에 지장이 없다 그것 맞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생활체육이라든가 또 지금 일선학교에 가 보시면 이제 철봉이나 무슨 미끄럼틀 같은 것은 거들떠도 안봅니다. 그런 정도의 식상해서 안쳐다 봐요. 그래서 뭔가 우리 충북교육은 나름대로 일반 학생체육에 대한 프로그램 꼭 돈만가지고 타령해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예산이 이런데 퍼부어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경쟁력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의 건강의 기둥을 세워줘야 됩니다. 건강의 기둥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도 내년도에 좀 가능하시면 일반 체육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지도자 양성하고 해서 생활체육 이런 쪽의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상 일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장학금인데요. 81페이지 장학금은 주기만 주고 회수는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당연히 회수하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회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회수 실적은.....

● **조일환 위원**

100%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한테 그것이 막바로 계산이 되어서 오는데 매년 연금관리공단 쪽에서까지 저희한테 실적이 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100% 다 저거없이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100% 되죠. 그것은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 **조일환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100%

된다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100%, 예속...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공부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교육시설의 의무
년한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25년 했다가 이
제는 건축도 괜찮고 해서 30년으로 올렸다
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예, 맞습니다.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지금 조적조는 25년입니다.

● 조일환 위원

지금도요?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조일환 위원

그 전에도 25년이었지요.

● 시설과장 오형균

예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라멘조가 45년.

● 조일환 위원

45년?

● 시설과장 오형균

철근콘크리트죠.

● 조일환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여쭙
보냐 하면은 먼저번에 IMF에는 모든 것을
좀 더 많이 쓰자 좀 내구연한을 길게, 자동
차도 건물도 그래서 우리가 변경해서 잠정
적으로 이렇게 연장한 건 없습니까?

● 시설과장 오형균

예, 그건 없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복됩니다마는 우
리 교육청에 참 저도 가보면 좋으면 더 좋
죠, 대리석으로 하면은 더 좋은데 이런 것
으로 비추어 봐서도 우리가 조금은 참아왔
으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예산을 보고 조금 말씀
드릴건데요. 임해수련원에 대한 얘기는 누
누이 나왔습니다. 임해수련원은 애초에 '98
년 4월에 제가 2대 때 했을 때 제 혼자서
거기를 하룻밤 가서 자기도 해보고 제가 거
기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아 이겁니다. 이게
보령군의 관광지조성사업추진현황 이게 토
지 그런 것이 그 당시는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98년 8월인가 10월부터 착공을 하겠
다 그랬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
예요, 첫 단추부터. 거 가보니까, 98년 말
까지 토지.....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반조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반조성.

● 조일환 위원

제가 4월달에 가보니까 가운데 있는 두사
람 서울사람 아직 토지수용도 안되었어 그
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토지조성이 안됩니
다.

그런데 제2대 때에 의결할 내용을 보면은
이미 2000년에 준공을 하고 이런식으로 올
라왔어요 그때에도 말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 저는 도를 떠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

랐을 때는 바다 구경하러 갔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바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한 두 번 안 가본 사람없습니다. 또 그것이 어느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천, 단양에서 거길 갈 때 몇 시간 걸리겠느냐 학생 400명이 왔다갔다하는 운송비만 해도 경비가 얼마겠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학생들이 단양에서 가려면 거의 거짓말 보태면 하루종일 가야죠, 어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하느냐,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때는 100억을 준다고 확답을 받았었다 이러한 우리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그럼 그 돈 아깝지 않느냐, 지금은 얼마가 확보되었습니까, 50억요?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에 연간 다 활용한 다 그렇니다마는 여름에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한 충주호수가에 가도 바다의 느낌 반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시간 허비, 학생들이 왕복 제천, 단양 같으면은 10시간이상 차에다 다 내버리고 체력 소모하며 그 운행비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학생수련원에 대한 것은 이미 승인은 났는데 이번에 추가변경을 냈잖아요. 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조금 올라왔어요

● 조일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십억 올라왔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청불).....

● 조일환 위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 토지하고 다해서 120 몇억인가 그렇고, 또 하나 지금 저, 아니 됐습니다. 이 시설이 제 판단으로는 얼마나 호화시설인가 건평에 비해서 평당 최소한도 600만원, 조금 기다리세요, 물론 교육시설 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 예산을 죽 제가 봐도 건축을 제가 조금은 해도보고 해봐서 압니다마는 물론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 계획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50억이 아깝다면 50억대로 연차적으로 하고 바로 7차 교육과정, 바로 학생 급식문제, 스승의 날 행사, 교육연구 지원비 이런 거에 내년에 차라리 좀 많이 이런 쪽으로 할애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것을 남기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딴 것은 답변은 안드리고 서해수련원 관계는 어차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호화건축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물론 여관식이나 호텔식으로다가 이렇게 학생수련원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그 학생수련원에도 교직원이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강원도나 타 시·도를 보더라도 이 콘도식으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평당 6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이쪽 상가 건축이나 기초파일공사, 흙막이 공사 이 모

든 걸 다해서 계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건축공사만을 저희가 계산하니까
4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평
당 가격들은 기술진들이 다했기 때문에 제
가 자세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릅니다마
는.....

● 조일환 위원

저기요 일반적으로.....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이왕에 짓는 거 어느 정도의 시설은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합니다.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
시니까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우리가 일반 건축이라 하면 무슨 뼈대나
올리고 그걸로 유리창이나 끼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6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건 제가 토지조성비 이런 거 다 빼고 다
저도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
면 상가를 약 100평을 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전면에다가요.

● 조일환 위원

전면에다가 그 상가가 정말로 거기에 몇
억이지, 3억인가 얼마가 더 되어 있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조일환 위원

그마만큼 실효가 있을까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근데 그건.....

● 조일환 위원

절대로 없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옹벽을 쳐도 거의 그 가격은.....

● 조일환 위원

옹벽은 기술적으로 높은 데를 낮은 데로
성토하면은 그 몇분의 1도 안 가지고도 되
고 그런 것 때문에 상가를 짓는다는 건 나
중에 보십시오. 만약에 짓는다면 지금 지방
자치에서 사업하는 것 중 성공한 게 하나
없습니다. 분명히 청원의 스파텔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개인이 사업을 해도 상가래
도 안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적자금이니까
뭐 무슨 관계냐 합니다마는 지금 상가하는
데 3억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땅값하
고 다 하려면 얼마입니까? 5억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나옵니다. 사업성 없어
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3억을, 상가를 안해도 그 옹벽 치려면 어
느 정도 들어갑니다. 기왕에 하니까 저희들
이 하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경사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옹벽을 대단
히 칠 그럴거 아니, 저도 그 경사 제가 봐
서는 몇도나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길이가 길어 가지고 3m 정도 된다고 그
럽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글썄,

경사가 몇도예요, 몇도예요?

● 시설과장 오형균

그것이 윗쪽 부분하고 3m50 차이가 나는 데요. 그래서 옹벽을 계산했을 때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가 조성했을 땐 2억이 들어가고 차액은 1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글썄 다 전문가들이 하셨겠는데 제 소견으로는 땅을 지을라면 제가 볼 때는 도가한 5도쯤 될까요, 경사가?

뭐 그런 자료도 없이 이런걸 다 산출하시고 그래요.

● 시설과장 오형균

메다수로 나와있었습니다.

● 조일환 위원

메다수는 그렇더라도 경사가 얼마니까 이 건 안되겠다 말이야 옹벽을 치는 건..... 그렇게 제가 봐서는 옹벽 높이가 얼마만은 몰라도 그렇게 현장으로 봐서는 높은데 조금만 까서 내리면 집이야 높이 얼마 돼 파일 더군다나 파일도 300개데 바닥면적 얼마니까, 바닥면적?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거기가 2,600평입니다.

● 조일환 위원

바닥면적이?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건축면적

● 조일환 위원

바닥면적이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바닥면적은 얼마계산 돼.....

● 조일환 위원

파일이 모르겠어요. 몇 평당 파일을 하나 박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로 알아보니까 일부 깎고 일부 조성했다는 거예요.

파일의 길이가 몇 메타입니까?

그거 제가 볼 때는 300개까지 그런 예상되네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일공사를 얼마나 하느냐, 경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은 기술직들이 대충 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설공모 과정에서 어떻게 짓는 것이 이상적이라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짓는 자리가 높은데서 파서 낮은데로 메워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더 높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숙소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시설공모 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아름답고 효율적이고 아이들한테 좋겠느냐 하는 것은 공모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거기애다 수련원을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논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부표를 보시면은 각 도가 다 있습니다. 각 도가 거의 수련원도 갖춘, 이런 임해수련원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임해수련원도 많은 도가 갖추고 있고 자

체 수련원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같은 경우 순수한 학생수련원으로 저희가 돈을 받아 온 것이 없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 듯이 교육이란 것이 꼭 교실에서 배우는 거 이것만 중요한게 아니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거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서울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서울, 대전, 충남.....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서울, 대전, 충남, 저희하고 네 군데입니다.

● 조일환 위원

네 군데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대전에만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일환 위원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지정적으로 달라요. 서해도서 타면은 거기는 우리하고 거리가 전혀 달라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저희는 매립도니까 바다가 없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조일환 위원님 제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 조일환 위원

앉아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기 얘기를 하니까 끝나시고 해요. 뭐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다 좋아요, 서울도. 서울은 서해고속도로로 1시간 거리고, 대전이나, 충남이나 이런데는 다 가까워요.

경북에서거 못 가 짓잡아 저기 있으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거리로야 여기서 동해안도 가는데 거리가지고 하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청주에서 2시간 반정도 걸리고 단양에서 간다고 그러면 2시간 더하면 4시간 내지 아마 5시간 정도 걸릴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5천명 6천명 가까이 야영장으로도 6천300백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일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갔다온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바다를 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구경하고 오는거 하고 자기들 동아리들끼리 가서 몇박 며칠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활동하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생때 가장 감수성이 강한 그때에 단 하루밤의 추억도 일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어찌 금액으로 따지고 시간으로 따지고 돈으로 차비로 계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주무과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충원 위원님께서 교육자료를 듣고 많이 이해를 하시고, 청소년연맹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애긴데 저희들이 꼭 학생들만

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 가신 선생님들도 갔다 오시고 타 도가 전부 있는 연수원에 우리도 이런 기회에 땅이 마련되었고, 또 국가에서 한 50억이 내려올 때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지 당장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도 아까 하시는 얘기를 즉 제가 듣고서는 청소년연맹이나 각종 연맹에서 활동을 하고 또 겨울에도 선생님들 연수를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간부학생들도 있고 또 더군다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저기를 갈 때 저희들이 갈 때가 없어 가지고 할 때 각시·도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면은 100% 활용하면서 좋다는데 저희만 없어서 안타깝던 기회에 마침 국가에서 50억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위원님들도 이런 기회에 해 주실 때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단순하게 예산이나 교통 가지고 하기보다는.....

● 이충원 위원

됐어요. 그만 좀 얘기합시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저희들도.....

● 이충원 위원

가만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도 답변이 있으니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답변을 하고요.

● 이충원 위원

아 글썄 지금 그렇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거론하니깐 그렇지요, 내가 어떻게 지금 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 그래서 제가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앉으세요.

● 이충원 위원

충청북도에 연수원이 몇 개 있어요, 학생수련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연수원이 소규모로다가 활용 못할 정도로 해서 한 각 시·군에 조금씩 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어떻게 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44개 있잖아요. 44개 있습니다, 지금. 44개중에서 상당히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안와 가지고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민간인에게 위촉을 했는데 주성대학도 안와 가지고 제천도 가지고 간 거구 말이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은 시설미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숫자로 갖고 얘기를 하면요.....

● 이충원 위원

그것에 대한 질문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무슨 교육위원으로 앉아 있는데 청소년연맹이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겸해서 좋은 기회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이충원 위원

제가 했을 때 과장님 저한테 했다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 조일환 위원

김과장님, 그만 앉으세요.

● 이충원 위원

지으면 좋지요, 100개라도 지으면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달래서 이게 온거지 거기서 청소년 수련원을 하라고 50억이 내려 온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달라고 그런거 아니요 계획서, 계획서 그래서 내가 계획서 보자는 거요, 내일 내가 추가 질문 좀 하려고, 김과장님 정말로 어찌 그러세요. 지금 여기서 질문 답변하는데 어찌 나를 갖고 거론을 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우리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획서 말씀드리고.....

● 이충원 위원

웬 청소년 연맹은 여기서 나오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각 연맹에서 적극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좋지 않느냐, 지어 놓으면.....

● 이충원 위원

좋지요, 100개라도 지으면.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글쎄 이런 기회에 좋지 않느냐 지어 놓으면.....

● 이충원 위원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든지 급한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급한시설이 있는데 거기다 짓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아까 그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지금에 와서 그걸.....

추가질문은, 오늘 다섯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조일환 위원

예,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장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됐는데 본 위원단 질의를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으로써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길 바라고 현재까지도 스승의 날 행사를 학교별로 또는 교원단체별로 수업이 끝나고난 다음에 숨어서 하다시피 행사를 해왔어요.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다면 하루를 수업을 쉬고 몇몇이 친목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도 고려되어야만 지원의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47페이지 거기 보면은 생산물 매각대가 물가가 상승했는데도

실적이 전체적으로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 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감이 되었느냐 하고 그 중에도 청주농고하고 진천농고가 당초예산보다도 감이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감이 되었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부족액이 있었습니다. 청주농고에는 그것이 5,600만원정도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것을 감을 하고 보니까 지금 많이 줄었고요 금년도의 목장 통합에 따라서 충주농고, 진천농고, 영동농고가 가축을 전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농고가 1억 2,900만원, 제천농고가 2천500만원, 진천농고가 1,700만원 이것이 수입 예상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청주농고가 통합목장이 되는데 따라서 수입액에 판매금액이 50%만 환원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났습니다.

● 송진하 위원장

다음에 73페이지 급식학교 운영에 대해서 조리종사원 퇴직금 지급인데 사실 조리종사원들은 학생들의 밥을 해 먹이느라고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퇴직금을 당연히 지불해 줘야지요. 그런데 많은 조리종사원 퇴직금을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수령자가 즉시 받지 못하는 바로 퇴직하고 바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꼭 그 퇴직금을 추경에 올려서 줘야하

나 아니면은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퇴직금을 적립했다가 퇴직 즉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1년이 끝나면 1년만큼 퇴직금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숫자가 저희들 예산은 440인데 10%가 더 증가되어 가지고 45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1년에 한번씩 주는데 미연에 주는 것은 없고, 그 즉시 주는데 1년에 한번씩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45명이 증액되는 바람에.

● 송진하 위원장

아주 대단한 일 하고 나가는 사람 퇴직금 바로 줘서 내 보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바로 일용잡급을 씁니다.

● 송진하 위원장

그 다음에 93페이지 사학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 논쟁사립학교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감독청에서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 따라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만 낭비하게 되면 결과도 가져오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사학정비위원회 구성은 지금 신덕중학교 제천에 있는 신덕중학교가 그 학교를 내년 말에 2001년 2월 28일자로다가 공립화하는 쪽으로 다가 법인해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해체 신청 절차를 밟을 적에는 법에 사립학교정비위원회인가 여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접수를 해 가지고 여기를 거치려고 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게 안 들어 갔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 송진하 위원장

이런 일은 그전에 없었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처음 있던거지요. 사립학교 공립학교 처음었고 이 법에 정비를 할 적에는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구성원, 일반인 해서 몇명이 구성이 돼서 이 청산위원회 비슷하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 송진하 위원장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 청원교육청의 시설비는 수영장 철거 및 부대시설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어떤 시설입니까?

● 중등교육국장 이주원

중등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청주여중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청주여중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것이 청원군교육청의 부지랍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지금 그것이 못쓰게 돼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 송진하 위원장

철거하는 거예요?

● 중등교육국장 이주원

예, 그거 없앤다고요.

● 송진하 위원장

여중에 있는 수영장요?

● 중등교육국장 이주원

예

● 송진하 위원장

그러니까 왜 청원교육청에서 해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교육청 앞에 청주여중 그전 부지에 있던 수영장이, 옛날부터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폐쇄가 되어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영장을 철거를 해서 청원교육청 앞에 부지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철거해 가지고 거기가 조금 낮습니다. 그걸 메꾸고 하는 비용입니다.

● 송진하 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조일환 위원

예, 뭐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과정에 똑 같은 돈인데 우리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그 효용성을 따지고 그러는거지 결코 무슨 집행청의 사업을 뭐 그런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다 하나 빠진 것은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예산지

원의 차가 사립학교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있다고. 예를 들으면 무슨 양호교사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모든 순위가 뒤로 밀린다, 또 이번에 심지어 그럴 목적은 아니겠습니까마는 사립학교 교원이 우리 공립으로 전입하는 과정에 7명이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선발심의에서 불합격 됐습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제도는 아무리 좋더라도 사학 입장에서 볼 때는 사학 학생들은 학생 아니냐 말이야 부실한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느냐 말이야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갈 때가 없단 말이야 학교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거 뭐 시험에 떨어졌다고 아주 난처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에 우리가 사학도 지원하고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선발권도 우리가 맡기는 입장이다 그거예요.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런 개념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이런 걸 다루실 때에는 특별히 쉽게 말하면 데려온 자식 눈치 된다고 조금씩 더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아까 질문하다가 미처 그런 얘기를 못한거 같은데, 청사보수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7억1,191만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외부 타일 붙은 것을 전부 벗겨 내고서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김광수 위원

그것을 설명 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시설과장 오형균

시설과장 오형균입니다.

지금 타일 자체를 벗겨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건물 자체가 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열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알미늄 판넬로 해서 단열이 되는 판넬을 별도로 씌우는 겁니다.

● 김광수 위원

지금 그러면 타일로 되어 있는 외벽에다가 판넬을 다시 거기다 붙인단 말이죠, 입힌단 말이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 김광수 위원

그럼 거기 타일 안 떨어 지겠어요, 속에 있는 타일 안 떨어 지겠어요?

● 시설과장 오형균

거기는 앞으로는 열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의 온도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잘 않지만은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떨어져도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앞으로 그 외벽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상 위험하고 그 밑에 지나가는데 언제 그게 떨어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 청사 외벽은 보수를 해

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조잡하게 해서는 아니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아 괜찮다 이렇게 보수를 해야지 조잡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17억이라고 해서 사실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전보다도 남이 보더라도 말이죠. 괜찮다하는 그런식의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시설과장 오형균

예산이 전부 외벽 단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부 천장하고 바닥하고 외부 창호까지 교체가 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화장실 보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터 해서 하는 얘가지 단열 외부만 해서 15억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 김광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조잡한 것은 아니죠?

● 시설과장 오형균

예, 예.

●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송진하 위원

예,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송진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류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대봉,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별책부록

- ▶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별책1
-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본회의 별책1
- ▶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본회의 별책2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9월 7일 (목요일) 10시 07분

議事日程 (제11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송진하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충원위원 “예, 저 있습니다.”하고 거수하여 발언 신청)

이충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보기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며칠간 헛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올라오지 못하는 안건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관리청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해수련원 건인데요 어저께 제가 사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개인적인 발언은 기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지

않고 개인적인 발언 한 1분만, 어제 해명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안됩니까?

(모두 침묵)

예, 그럼 기록하세요.

아시다시피 제가 청소년연맹이라는 단체를 맡았습니다. 그 말은 연유에 대해서 구구히 변명은 필요없고 이제까지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스폰서가 되셨는데 불행히도 그 두분들이 다 어렵게 됐어요. 부모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에게 넘어왔고 넘어 왔을 때 제가 여기서 공개할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사람일 수 없다. 월급을 타가지고서 세금이 얼마인가를 떼서 따지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다....., 내 다만 몸으로는 땀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능한 분이 오시면 대단히 중요한 청소년 단체기 때문에 위임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제가 들어 갔는데 그 무렵 이 본청에 기관별로 200만원인가 얼마를 보조를 했다는데 오비이락격으로 오비이락격입니다 오비이락격으로 IMF가 터진 뒤에 그것이 전부 끊겼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저에 대한 조금 얘기가 있죠, 그 당신이 그것을 말더니 타도에는 다 주는데 보조금이 끊어졌다, 뭐 모르겠어요 제가 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괴로워 하던 참입니다, 사실은. 언제 내가 그만두느냐, 평생 배운 것은 교육이요 청소년 문제인데, 학생 문제인데, 그리고 있던 차에 어제 제가 하고 난 뒤에 그 질의를 하셨으면은 제가 그것을 대답을 했을텐데 조일환 위원님이 질

의를 하신 뒤에 제 이름이 나오기에 제가 조금, 평상시에 참 좋은 사이인데 제가 조금 해서 아주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고 마치고 간 것은 그 문제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마는 5시부터 야간에 모임, 강의가 있기 때문에 잠깐 갔다가 얼굴을 내밀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나간 것인데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안이 제가 뭐 법률적인 것을 잘 몰라가지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 문서를 저에게 세번을 주셨는데 세 부를, 그 안하고 원래 것 세세한 안 하나하고, 설명서하고 또 요약한 것하고 주었는데 거기 보면 말이죠 어떤 때는 학생수련원, 어디에는 서해학생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부족한 견해로 봤을 때는 절대로 행정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용어를 각각 다르게 썼을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관심을 갖고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는데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해양수련원은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 안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을 안이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문제이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을 어설피 다룰 수가 없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제가 여러번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안을 교육부에 처음에 신청한 안, 거기서 내려온 안을 달라고 그랬는데 참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것이 십리, 이십리가 있는 데가 아니고 바로 여기인데 상당히 시간을 끌다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안을 적어도 서해수련원을 지어라라고 내려온 공문은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2일입니다, 변경을 해서 낸 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 회의 소집은 9월 1일 했습니다. 명백하죠? 이 안은 2일날 서해수련원을 거기에 지어라, 이러면 이번에 당연히 올라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인정합시다. 여기는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이상 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제 평생 신조입니다.

처음에 서해수련원 계획안이 들어왔을 때에 보고 있는데 파일이 안박혔어요. 그래 이상하다 파일이 없어, 어디 들어갔나 제가 까막눈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튿날 2일날 변경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잘못됐다. 그 왜 잘못됐느냐 그랬더니 계산을 잘못했다. 그래서 속으로 딱 아, 이것을 수십년 하고 관리책임 지시던 분이 숫자가 잘못돼서 이것을 변경을 하느냐 그래서 처음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진짜 숫자가 잘못됐다, 그래서 날 모시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나, 진짜 당신이 이게 계산을 잘못해서 숫자가 잘못된 것 바꾸라면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바꾸러 왔어요. 왜 바꾸느냐, 또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봤더니 이 안을 적어도 된고 하면은 나한테 수정안을 가져오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의장 통해서 결재나서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자체가 세 번이나 뭐 제가 얘기 안해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9월 2일날 교육부에서 이게 승인이 났어요. 9월 2일날 여기서 접수했어요. 가서 대기하고서 가져 온 것입니다. 상당히 몸이 달은 것으로. 그래 9월 2일날 여기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된고 하면은 그러면 이 안을 처음에 어떻게 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처음의 당초의 안을 수련원 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다섯매를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그것은 제가 어디에서 본 게 아니에요. 특별교부금 교부신청서 5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내가 어제부터 가져오래도 다른 것을 가져와서 자꾸 이거나 이거나 자꾸 그랬는데 좀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육부에다가 신청할 적에는 어디에 신청했는가 하면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529-1에다가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이거 왜 이랬나. 대천 해수욕장에는 할 수 없다 왜, 충청북도에 자금을 주었는데 타

시·도에다가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참 대단히 어렵다. 이런 논의가 됐습니다. 이미 그것은 벌써 '98년도에 리젝트(Reject:거절)당한 것입니다. 거절당해 가지고 왔던 것인데 그 뒤에도 이것이 어렵다 이러니까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에다 이것을 짓겠다. 그럼 언제냐, 6월 13일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당초 교부금인데 그것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 뒤에 이것을 언제 변경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8월 18일날 대천해수욕장으로 이것을 청천 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교육부, 여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 좀 하세요. 이것은 교육부 자체의 문제입니다.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재란을 보니까 최종 결재자가 차관이에요. 김상권이에요. 김상권 차관님, 여기 쓰세요 제가 그랬다고. 이런 행정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150억이나 투자할 자금을 얼른 계산해 보세요. 8월 18일날 거기다 취임하겠다고 괴산에다 짓겠다고 한 이 엄청난 돈을 불과 한달 몇 여만에 계산이 얼른 안나오는데 그것을 타 지역으로 대천으로 과거에 한번 거절당했던 안을 거기다 지어도 좋다라고 했다고 하는 장본인이 도대체 문제인 것입니다. 기록하세요 거기다. 어떻게 그렇게 며칠만에 이 엄청난 것을, 한국 교육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쇠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

가 아까 말씀을 드린 이 문제는 이미 벌써 회의가 뭉니까 공고되고 원안이 배부된 후에 세 번 바꾸는 예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제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실수로 보기에는, 정말 본인이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저는 묻지 않습니다. 또 묻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중대한 문제를 세 번씩이나 안을 바꿀 때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것을 바꿨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150억을 얻어 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했다고 좋게 우리가 보십시다 얼마나 돈을 얻어 오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육위원 의원인 아닙니다 위원입니다 정말. 제 아무리 힘이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이 내용을 저희에게 얘기를 해 줘야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련원을 짓는다는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대단히 실례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에 학생수련원이 지금 44개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학생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위촉하고 있고 지금 또 민간에 위촉하려고 그러합니다. 사족을 붙입니다마는 150억이라는 돈을 1년의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10억은 되는 것입니다. 잘못 됐나, 10억? 8%만 치더라도 10억

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감가상각을 생각하라면 150억 건물은 적어도 1년에 10억 정도 감가상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억 몇 수억을 이자를 따져 보십시오. 학생 1인당 얼마나 돌아가나, 과연 이것이 대천까지 끌고가서 교육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어떤 분의 말씀이 12달 한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겨울에 그 추운데 대천까지 끌고가지고서 바닷가에 가지고서 저 뭇니까 호연지기를 기릅니까. 저는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부터 이 사실을 저희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설득이 안돼도 좋습니다. 이 사실을 같은 식구입니다. 충북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추호도 본청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교육적 입장에서 거부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혹여 그 속에 비교육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뿐입니다. 우리 집행청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하루에 서너통씩 비판의 전화가 오고 팩스가 옵니다. 뭘 하고 앉아 있는 거냐, 본청에서 박수만 치면 되느냐, 대학교수라고 그래서 바른 말 할 줄 알았더니 너도 똑같다라는 말을 제가 왜 안 듣습니까. 저는 작년 31일날 공직을 퇴임한 사람입니다. 지금 충북교육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하찮은 직업인지 하찮은 일거리인지 모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안 자체가 허위적인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심의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제가 뭐 꼭 이것을 하실려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얻어온 돈입니다. 우리 충북 학생을 위해서 정말로 수련을 해야 할 이러한 돈이라고 하면 애초에 처음대로 괴산에다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답변.....

● 조일환 위원

잠깐요, 송위원장님.

● 위원장 송진하

예

● 조일환 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정말 저는 이 공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정말 이 중대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심의 여하든가, 이 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저희들 위원들께서 정회를 해서 앞으로 이 심의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견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일단은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들 입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지금 이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후

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애초에 서해수련원 그 부지는 '98년도에 이미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을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서울교육청 감사할 적에 여러 기관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같이 활용해서 쓰면 좋겠다 하는 교육부에다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충북학생수련원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신청할 적에는 교육부에서 그때 권고안이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해수련원에다가 막바로 신청을 저희들이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교가 된 학교에 그것을 위치를 잡아 가지고 교부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부신청을 내서 그 교부금이 온 후에 그래도 저희들이 져야 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기히 부지로 확보해 놓은 대천에다 져야 되겠다 하는 쪽의 생각이 돼서 그것을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또 감사원에다 저희들이 그 권고안 나왔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서해수련원에다가 지어야 되는 그런 타당성, 그런 것을 전부 감사원에다가 7월 중순경에 내부 그 승인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어느정도 이것이 합당하다 하는 의견이 교육부까지 전달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위치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학생수련원을 짓겠다 하는 것은 특별교부금 주면서 학생수련원 지어라 하는 것은 이미 받아 온 것이고 위치만 저기 삼송리인가 하는 삼송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에다가 애초에 특별교부금 신청

할 때 냈던 것을 위치를 대천으로다가 변경 승인을 8월 18일날 저희들이 냈는데 그것이 결재가 며칠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9월 2일 날 저희들이 접수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지 이것이 자체가 무슨 애초부터 저쪽에다 하고 뭘 변칙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충원 위원

저 질의 주십시오.

“저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대답을 제가 하고 이것을 저거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는 것은 처음에 괴산에다가 설립을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해에다가 짓는 것은 권고사항이다,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 이충원 위원

거짓말 한 것이죠. 이 돈을 교육부에 그것 받기 위해서,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 것은 아닙니다.

● 이충원 위원

의도적으로 안했다고 하면 150억을 투자 하는 것을, 10억도 아닙니다. 150억을 투자

하는 것을 적어도 괴산에다가 지울려고 하는 엄청난 그 뭍니까 여론 수렴을 해야 하고,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과연 여기가 합당하냐 하는 것이 해 가지고서 적어도 몇 달 걸려 가지고 이것을 제출했을 텐데 불과 두달 후에 어떠한 중대한 사유가 생겼기에 위치를, 내가 괴산에서 예를 들어서 증평이라든지 증평에서 북이로 옮긴다든지 하면은 아, 그것은 또 그럴 수 있다, 이것은 전혀 판단인 대천이예요. 나는 솔직히 우리가 알고 정말 솔직히 알고 충청북도에 들어온 돈입니다. 왜 이것을 반환을 하고 싶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요.....

●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이 질서를 잡아주세요.

● 위원장 송진하

아닙니다 질서가 왜,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니까요?

● 기획관리국장 김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 위원장 송진하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아야죠.

● 조일환 위원

아니 글썄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하시고 자꾸만 이렇게 하시면 어려워져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권 주셔서.

저희들 충북에는 학생수련원이 없습니다.

타 도에는 다 있는데. 지금 1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150억이고 교육부에서 준 것은 아시다시피 50억에 가까운 48억입니다. 만약에 저것이 위치변경이 안됐다면 저희들도 학생수련원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괴산에다 지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허위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학생수련원이 없기 때문에 학생수련원을 짓고자 했던 의도대로 돼서 괴산에다 짓느냐, 서해에다 짓느냐 하는 그것뿐이지 그것이 어떤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충북만이 학생수련원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 이충원 위원

또 한번만 주세요.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예, 말씀하세요.

● 이충원 위원

제가 말씀을 한 것을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답이 되는 게 아니예요. 적어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때 괴산 가서....., 압니다 학생수련원 세워야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고 돈을 얻어 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충북에 세워야 한다고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중대한 문제를 취입을 할 때야 소위 타당도, 객관성, 정말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이 세가지를 가지고 거기다 정했던 것은 분명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 아무데

나 학교 비었으니....., 아니 왜 50억만 투자가 됩니까, 반드시 국고에서 내려보낼 때에는 자체자금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계획서도 냈어요. 그 계획서 가져오라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내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도 그래요. 아, 교육청에서 돈을 얻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그런 방법도 그렇잖아요 뭐 그게 내가 보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서 알려줘야 했었다는 얘기고 처음부터 실상을 얘기했어야지 적어도 이 서해수련원 변경안을 세 번씩 회기 중에 다섯 시간에 세 번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아마 지금 저,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혀 이것하고는 정말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실무자들이 몇 번씩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 조일환 위원

국장님, 이거 여기서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그것을 아니라고 국장님은 그래도 이의안이 정당하게 의사국에 접수가 돼서 의사국에서 배포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해당 직원이 우리 직원의 "실수입니다", "누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월 2일날 온 것을 율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의결 하루 전에,

개회 하루 전에 밤중에 말이여 응, 이렇게 해 놓고, 자기들 답변 지금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송위원장님, 우리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좀 앞으로 회의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답변을 들어서야 될 겁니다.

● 김광수 위원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의 황당한 생각도 듭니다. 서로서로 이것을 진실되게 아주 진솔하게 서로 얘기를 해주어야 할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꼬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도 서로 사실 유무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들어갈 것 같으면 해결 안되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괴산 삼송에다가 그런 안을 말하자면 그런 안을 신청했다는 것을 처음 듣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한 말씀 드릴까 싶은데, 그렇다면 서해수련원의 예산이 잘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수련원을 학생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괴산 삼송리 어디다가 폐교 어디다가 그 학생수련원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신청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국고보조 48억인가 얼마를 신청하셨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58억인가 얼마를 신청을 했

습니다.

● 김광수 위원

58억을 신청을 했는데.....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48억인가.....

● 김광수 위원

떨어지기는 48억이 됐다 이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김광수 위원

그 예산이 서해수련원에 그게 변경이 안 된다면 거기다가 지셨을 거 아니겠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생수련원이 충북이 없으니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서해수련원이 끝까지 거기 못 짓는다고 승인이 안되면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아 마.....

●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 저게 말이지 8월 15일날 변경 신청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언제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8월 18일자

● 김광수 위원

8월 18일자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김광수 위원

8월 18일자에 변경신청을 낸 것 아니겠어

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김광수 위원

그것이 안된다고 할 적에는 내내 괴산에다가 지었을 것 아니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만약에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송진하

내가 한가지 묻겠는데.....

● 김광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괴산에다가 신청했을 적에는 서해수련원에다가 그 수련원을 짓는 것을 포기를 해가지고 저것을 신청을 하신 것인지.....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좀더 끝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당당하게 서해수련원을 짓는다고 신청하는 게 낫지, 그것 하나의 변칙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만약에 괴산삼송에다가 신청했을 적에는 저게 잘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신청한 것 아니냐 이거지.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들 입장은 안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낸 문서를 달래서 드렸더니 그 문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왜 그렇게 됐느냐.....

● 김광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그 얘기는요 문서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생각을.....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죠. 근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첫머리부터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허심탄회하게 전부 얘기를 해주고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지금 계수조정 할려고 하는 이 자리에 와서 괴산 삼송에다가 일단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변경을 신청을 8월 17일에서야 냈다, 내서 그것이 여기 공문접수가 된 것이 9월 2일에서야 확실한 공문접수가 됐다. 이렇게 되니까 앞뒤가 안맞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 문제는 이미 어제도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설립 승인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바로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충청북도만이 학생수련원이 없으니까 학생수련원 건립비를 주겠다. 그래 그 돈을 받아 와야 되는 우리들로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 와야 되겠죠 그것을 안받아 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감사원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

에 감사원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은 7월 중순입니다, 8월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그것을 7월 중에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충청북도는 특별하다. 타 도하고 틀려서 내륙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서해수련원을 짓는 것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미 7월에 구두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가 받아들여서 해주겠다 했는데 마침 저희들 을지훈련이 있고 해서 결재가 늦어졌을 뿐이고 9월 2일날 왔다는 것이 법적 하자가 된다고 지금 하실런지 모르나 저희들이 이 9월 회기 이전에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안 이루어졌다면 수정계획을 내야 되겠죠 수정으로 예산안을 내서 이것을 취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전에 이미 교육부에서도 감사원 권고사항이 감사원에서 스스로 해제를 했기 때문에 풀어주겠다, 충청북도에 한해서 풀어주겠다는 내락을 받고 결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작업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거짓말이나 기만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더 소상히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지금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크게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진하

가만있어 봐요.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이 서해수련원을 1대 때문가, 2대

때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그때가 몇 년도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98년입니다.

● 위원장 송진하

'98년.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4월

● 위원장 송진하

4월. 그럼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얼마죠,
이 서해수련원에 대한 국고보조가?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48억3,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송진하

48억. 그것은 서해수련원에 지원이 된 국
고보조금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학생수련원을 짓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서해수련원도 학생수련원이고
저희들이.....

● 위원장 송진하

충북?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생수련원으로 얘기했죠.

● 위원장 송진하

학생수련원으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송진하

학생수련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질의할”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수련원이나,
서해수련원이나, 충북수련원이나 하는 것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련원으로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송진하

수련원으로?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송진하

그게 언제 나온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것이 6월 중순에 왔습니다.

● 조일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신청을 하는데요, 이것 참 황당
무계한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가로 교육청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배포한 것은 사신에 불과합니다. 그 공
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위원
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이렇게 교육위
원회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접수도
안하고 임의로 배포를 한 지금 우리가 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약을 받아서 그것을 넣었다. 아니 우리가 공문을 내약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문시행을 약속으로 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이고 이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들이 원활한 우리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선 이 의안이 불법으로 상정된 것을 불법으로 제출된 것을 여하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모아야 되고, 오늘 아마 한빛일보 사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얼굴이 뜨겁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다면은 상당히 밖에 나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설에 충북교육위원회를 논했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정말 위원답게 의결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그럼 개인이 제출한 서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국에서 얘기해 주세요.

● 간사 이기수

아니, 제가 잠깐.....

● 위원장 송진하

예

● 간사 이기수

지금 조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일단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께서는 상세히 아는데 지금 구체적인 상황 진행은 여기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 집행청에서 하는 답변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만 양쪽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해야

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이쪽 서로 승복을 못하는 입장이면 어떤 쪽을 100%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집행청에서 답변도 좀 더 하시고 이쪽에서도 질의를 할 게 있으면 조금 더 하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 조일환 위원

이위원님! 이 의안이라는 것이 의사국을 통해서 의장의 결재를 득하고 그리고 위원들에게 배포되는 게 원칙이죠?

● 간사 이기수

글쎄 그 부분만.....

● 조일환 위원

아, 잠깐만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드려야죠.

● 조일환 위원

가만계세요. 원칙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간사 이기수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 조일환 위원

원칙이죠?

● 간사 이기수

예,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직원이 집으로, 그것도 한 두차례, 내일이 개의일인데 오늘 가져와서 이 의안을 좀 가져왔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개인적 의안이 상정돼서 논란다는 것이.....

● **간사 이기수**

지금말입니다 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형편이 아닙니다. 일단은.....

● **위원장 송진하**

아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개인의 서류를 가지고 지금 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개인의 서류인가 그거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안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중간에 어떤 업무착오에 의한 것을 이제 안을 바꿨다 하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애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을 적에 143억원을 다 넣지 않고 거기서 이 실무진에서 판단이 재산의 취득처분이니까 재산 형성 가치가 있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만 금액을 넣고, 면적을 넣고 했는데 나중에 설계비라든지 토목공사비같은 것은 뺐습니다, 솔직히. 토목비를 뺐 것을 나중에 그것이 토목공사 하는 자체도 재산에 형성이 되니까 이것도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못 판단해서 뺐으니까 그것을 넣어가지고 수치를 아마 예산액이 100 한 20억 정도였던 것을 133억에다 맞춰가지고 변경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저게 9월 2일날 왔기 때문에 바꾸고 했던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송진하**

그러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개인이 낸 서

류가 아닙니까, 개인이 낸 서류가 아닌데 수정을 위한.....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예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원칙적으로 하면 조일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수정을 하려고 하면 집행청에서 수정요구가 정식으로 가서 의회에서도 아마 의장님을 거쳐서 수정안이 제출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마 실무진에서의 수치 착오이고 하니까 기왕에 나갔던 의안을 그 착오적인 것을 교환해 주는 양해 하에서,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서 바꾸는 이런.....

● **조일환 위원**

가만 있어요. 국장님!

이 의안이 정식유무.....

(장내 소란)

● **위원장 송진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 **위원장 송진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과정에서 있었던 적절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유선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학생지도 차원에서 정서교육이나 또 생활지도교육이나 학생선도교육, 특히, 타도에서 학생수련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 학생수련원이 많은 데는 한 서너군데, 작은 데는 한군데, 그런데 유독히 제가 금년에 여기 부임을 해 보니까 충북에만 학생수련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이 제대로 안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문제학생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육에 대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금년에는 청원군청에서 만들어 놓은 학생수련원에 아이들을 위탁을 해서 돈을 쥐 가지고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 개개인 부류별로 그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위한 교육이 여태까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수련원이 우리 도에도 다른 시·도마냥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돼 왔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학생수련원이 없는 도가 충청북도하고 대전직할시 두군데가 이제 없고 그 외에는 두서너 군데가 거의 보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당초에는 저희가 도내에 폐교학교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선 예산도 없고 하니까 특별교부금을

따다가 도내에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안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교육부에서 충청북도는 도세도 열악하고 참 예산도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해서 금년에 50억 가까운 돈을 교부금으로 받게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진천 학생야영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니까 그렇게 호응도가 좋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거의가 계곡이나 산만 바라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왕에 건립을 하려면 바닷가에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수렴이 되고,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대천에 땅까지 사 놓았는데 그것을 사장하기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당초의 계획대로 임해수련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교육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그 장소를 임해수련원으로 짓는 것이 변경을 받았습시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뜻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참 충북 학생을 위한다는 뜻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정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동한 것을 위원님께 양해를 받아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그것이 미흡하게 처리된 점은 대

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학생수련원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시설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청북도 학생교육을 위한다는 뜻에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논의도 심도있게 해주시고,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진하

뭐 말씀 안게시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 위원장 송진하

오전 회의에 이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일환 위원

예,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만나오세요?

● 총무과장 신춘우

화장실 가셨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기다렸다가 하시죠.

●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예.

● 김광수 위원

청사보수에 관해서 1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점심 먹었을 적에 개별적으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제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좀 보수를 할 적에 외벽이 저게 문제가 돼서 보수를 하려고 하시는데 좀 품위있게 조잡하지 않도록 누가 봐도 교육기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품위 인상이 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인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관계관에게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알루미늄으로 다가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러 봅니다, 그런 건물을. 이렇게 볼 적에 그 품위가 문제가 있고, 또 외부로 볼 적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잘 구상을 해서 교육기관의 즉 충청북도 도교육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모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또 보수를 하면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좀 참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조일환 위원님.

● 조일환 위원

이거 매년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행하게 우리 부감께서 오셔서 사과를

하는 선으로 모든 것이 매듭이 지어졌다는 것이 과연 그 소위원회 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저께 답변하시기를 특별히 결재를 하거나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교육청의 모든 사무가 그리고 계획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그러니까 추경을 했는데 시작서부터 의회 제출할 때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예산안을 의회 제출하기까지는 우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각 과에 예산요구서를 받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또는 기왕에 계획돼 있던 사업을 총망라해 가지고 그 사업을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 내부적인 중요사항은 뭐 교육감님께서 지침을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각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부서로 모아집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전체 취합을 하고 자체 조정, 과별 조정, 뭐 또 단계별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교육감님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확정되면 교육위원회에 의안으로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뭐 어제 제가 말씀은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계획이 먼저 되고 예산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어느정도 정해진 뒤에 전체 사업규모나 양이 결정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이나 이것이 확정이 돼야지 같이 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예산 먼저 확정해 놓고 계획을 뒤따라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되는 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 조일환 위원

어저께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일정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어느 행정기관 이더라도 우선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요구서를 받겠다 하면은 당연히 주무는 계장, 계장은 과장, 과장은 국장 또는 부감, 이 결재나 이것이 어떤 과정이라도 승인을 받는다 고 봤는데 뜻밖에 어제 답변이 그런 것이 없이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면 예산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예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직속기관이나 없는 기관에는 요구를 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요구를 안했다 안해서 못 줬다. 이 말은 바뀌서 말하면 세상에 돈을 줄테니까 사업을 돈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안하는 것은 바뀌서 말하면 이것은 무능이고 이것은 완전히 공무유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가정이든 간에, 나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예산이 미리 사전에 확정이 돼가지고 특별교부금처럼 이래가지고 내 봤자 내봤자 들러리만 서는 거야, 혹시나 그런 생각이 아니면 제가 어느 사업소의 소장 이든 기관장이든간에, 교육장이든간에, 뭐 어디든간에 요구서를 안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요구서를 안낸 기관 이것을 저에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중평중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과학관이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필요로 하는 과학관은 그런 류의 과학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는 지금 학생 수가 16학급서부터 3년 연속 13학급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또 그 주변은 중평중학교하고 몇 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중평과 청주가 얼마 거리입니까, 그럼 이 과학관 시설이 좋아요, 그게 더 좋겠습니까? 또 시에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김동석 박사를 비롯해서 수만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자료는 상대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학관이 적어도 옥천, 영동이나 청주 오기 불편한 데, 제천, 단양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는 강당도 있습니다, 강당. 도서관도

있습니다. 학교 역사가 깊어서 아주 수목이 많고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국회의원 날라다 줘다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판에 놀아날 거예요, 우리 교육예산이. 그럼 이렇게 정치판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유치할 거냐 무작위로.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앞으로는 이 특별교부금의 신청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든지 긴급,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우리가 해줘야지, 아, 우리가 무슨 정치인이 갖다주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까? 이런 유치한 말이야, 이런 심의가 되지 않도록 좀 타당성 있게,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일선에서 학습을 하면서 평소에 15,6년간 수집한 자료를 전시해서 우리 교육기관에 기증을 하겠다는 것, 얼마나 고마우면서 그 선생님의 교육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선생님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그 선생님의 동기를 주어야지 무슨 강당이나 8억을 지어가지고 말입니다, 남이 볼 적에 욕하죠.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제가 축구를 하면서 앞으로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러한 행정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것을 질의하면서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원만히 진

행되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한 책임을 집니다. 집행청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은 없도록.....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알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우리 집행청에서 부교육감께서 여기까지 와서 사과를 하도록 말이요, 얼마나 누를 많이 끼쳤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답변 안드려도 됩니까?

● 조일환 위원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광수 위원

예, 중평과학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그전에 우리 시·군별로 과학관을 지을 적에는 1개 시·군당 4억씩을.....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5억입니다.

● 김광수 위원

5억인가 4억을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은 이게 8억2,700만원인데 그 과학관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게 예산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무슨 과학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이 8억2,7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부터 한 4년 전, 5년 전에 지은 지역 시·군에 있는 그 과학관 규모나 크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간에 단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가격이 올랐고, 또 이 과학관의 실시 설계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관 겸 다목적 어떤 교실,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짓도록 될 것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 김광수 위원

거기 강당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강당은, 아, 이 학교에 강당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강당이 있어요. 있는데 뭘 그렇게 과학관을 시·군 단위로 지을 적에도 5억을 주어서 썼는데 중평중학교에다가 과학관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을 것인가.....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글쎄 여기는 물론 외곽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요새 여러 가지 멀티라든지 종합적인 것 하면 멀티시설 하나만 하더라도 1억5,000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첨단 시설을 하다보면 외곽시설, 내부시설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돈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큰 학교에 전부 이렇게

해 주실랍니까. 멀티미디어고 뭐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13학급 학교에 해 주면 20학급이라든가 15학급 이상에 전부 해 줄 작정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것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 김광수 위원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아까 남부쪽이 지금 미약한데 그런 쪽에 안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 김광수 위원

아니, 남부쪽에 해주고 안 해주고 간에.....

●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보은, 옥천, 영동에도 지역별로 과학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이 읍지역이고 또 몇몇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진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 위원장 송진하

회의에 앞서서 오늘 정회 중에 있었던 김진성 기획관리과장의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정회 중에 본의 아니게 교육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입장을 충실히 알려야 되는 그런 본인의 입장과 그런 충심에서 그런 일이 빚어졌음을 이해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 위원장 송진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조정하기로 한 부분은 본청 총무과 사업중 청사 보수공사비 15억6,812만1,000원중 7억1,812만2,000원을 감액하여 8억5,00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시설과 사업중 서해수련원 건립예산 143억4,900만원중 23억4,900만원을 감액하여 120억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 내용과 같이 본 추경 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의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

[제119회-제3차 예·결산소위원회]

린 바와 같이 조정된 사업비를 예비비에 편입하여 세입·세출 예산 각각 8,347억819만원으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애쓰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제3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송진하,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2명

부교육감 류선규,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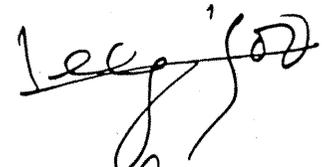
위원장

송진하



간사

이기수



위원

김광수



위원

이상일



위원

이충원



위원

조일환



(별첨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1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00. 9. 5. (화) 16:15~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00. 9. 6. (수) 10: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2000. 9. 7. (목) 10:00~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및 의결) ※폐회	

